2014년도 종합편성PP
재승인백서(MBN)

2015. 4.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목 차

Ⅰ. 2014년도 종합편성 PP 재승인 주요경과 ····· 1

Ⅱ. 2014년도 종합편성 PP 재승인 기본계획 수립 ····· 5

1.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안건) - 방통위 의결보류('13.9.4) ····· 7
2.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속기록) - 방통위 의결보류('13.9.4) ··· 35
3.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안건) - 방통위 수정의결('13.9.5) ····· 51
4.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속기록) - 방통위 수정의결('13.9.5) ··· 77

Ⅲ. 재승인 신청 안내 ····· 91

1. 2014년도 종합편성PP 재승인 신청 안내 ····· 93

Ⅳ. 시청자 의견 청취 ····· 233

1.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문 ····· 235
2. 시청자 의견청취용 사업계획서 요약문 ····· 239

Ⅴ. 재승인 심사 ····· 243

1.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 ····· 245
2. 세부 심사기준 ····· 249
3. 심사평가 결과 ····· 271
4. 심사의견서 ····· 277
5. 심사위원회 회의 및 사업자 의견청취 속기록 ····· 287
   1) 제1차 회의 ····· 289
   2) 제2차 회의 ····· 309
   3) 제3차 회의 ····· 317
   4) 제4차 회의 ····· 325
   5) 사업자 의견청취 ····· 359

Ⅵ. 재승인 의결 ····· 387

1. 종합편성PP 재승인 의결(안건) - 위원회 의결('14.11.18) ····· 389
2. 종합편성PP 재승인 의결(속기록) - 위원회 의결('14.11.18) ····· 405

Ⅶ.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청취 반영여부 공표 ····· 429

1. 종합편성PP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공고문) ····· 431

Ⅰ. 2014년도 종합편성 PP
재승인 주요경과

주요 경과사항

o ’13.9.5 ’14년도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 의결

- ’14.11.30, ㈜매일방송(MBN) 승인유효기간 만료

o ’14.5.30 종편PP 재승인 신청서 접수(MBN)

o ’14.8.25 종편PP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9.1~9.30)

o ’14.11.10~13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o ’14.11.18 종편PP 재승인 관련 위원회 의결

o ’14.11.24 종편PP 승인장 교부(MBN)

<참고> 2014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재승인 주요경과 사항

o 재승인 사업자 : 종편PP(T V조선, JTBC, 채널A), 보도PP(연합뉴스TV(舊뉴스Y))

o '10.12.31	종편 및 보도PP 승인 대상법인 선정(종편 4개사, 보도 1개사)
o '11.3.31	종편 및 보도PP 승인장 교부(TV조선, JTBC, 뉴스Y)
o '11.4.21	종편PP 승인장 교부(채널A)
o '11.12.1	종편PP 승인장 교부(MBN)
o '13.7.9	'12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위원회 보고
o '13.7～8월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 연구반 운영
o '13.8.5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 1차 토론회 개최
o '13.8.23	종편 및 보도PP 5개사에 시정명령* 부과 * 사업계획서 상 콘텐츠 투자계획, 재방비율 준수 등
o '13.9.2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 2차 토론회 개최
o '13.9.5	'14년도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 의결
o '13.9.9	재승인 신청법인 대상 설명회 개최
o '13.9~10월	재승인 신청서 접수(TV조선, JTBC, 채널A, 뉴스Y)
o '13.11.29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12.30까지)
o '14.1.29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종편PP 4사에 과징금* 처분 * 사업자별 각 3,750만원 부과
o '14.2.28	'13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위원회 보고
o '14.3.10～14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o '14.3.19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의결
o '14.3.24	종편 및 보도PP 승인장 교부(TV조선, JTBC, 채널A, 뉴스Y)

※ 2014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재승인 백서('14.7.30. 발간) 참조

Ⅱ. 2014년도 종합편성 PP
재승인 기본계획 수립

1.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안건)
- 방통위 의결보류(2013. 9. 4.)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의안번호	제2013 - 32 - 129호	심의의결사항
의결일자	2013. 9. 4.	
공개여부	공 개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

- (주)조선방송 등 5개사 -

제 출 자	위원장
제출일자	2013. 9. .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

- (주)조선방송 등 5개사 -

<2013. 9. 4.(수),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1. 의결주문

○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2014년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조선방송 등 5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3.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 1개사

방송분야	방송사업자명	방송채널명	대표자	승인 유효기간
종편	(주)조선방송	TV조선	오지철	'14. 3. 31
	(주)제이티비씨	JTBC	김수길	'14. 3. 31
	(주)채널에이	채널A	유재홍	'14. 4. 21
	(주)매일방송	MBN	장용성	'14. 11. 30
보도	(주)연합뉴스티브이	뉴스Y	송현승	'14. 3. 31

※ 승인 유효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TV조선·JTBC·채널A·뉴스Y와 MBN의 심사를 분리하여 진행

4. 재승인 심사의 기본방향

가. 종편·보도PP 도입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심사

○ 여론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 등을 중점 심사

* '10년 종편·보도PP 도입 목표 : ①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②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③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④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나. 심사기준의 구체화로 공정성 제고

○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에 상세한 심사기준을 제시

- 기본계획에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그 배점까지 포함시키고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

※ 기존 지상파 재허가 또는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에는 심사사항과 그 배점까지만 포함시키고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과 그 배점·평가방법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

※ '10년 종편·보도PP 최초 선정시에는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심사기준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시함

다. 지상파방송 재허가 등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유지

○ 방송법상 지위 또는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을 준용하고 종편·보도PP의 채널 특성을 반영함

5.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0인으로 구성(심사위원장 포함 총 11인)

구분	전문분야	비고
심사위원 (11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분야(2)	법학교수 또는 변호사
	경영·회계 분야(3)	회계사,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분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 단체(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 제시

- 재승인 여부 및 조건 부과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6. 심사기준

가. 주요 고려사항

○ 법정 심사사항과 재허가·재승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 마련

○ 외부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된 연구반 제시안을 반영

나.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구성

○ 방송법 제10조제1항(심사기준·절차) 및 제17조제3항(재허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9개 심사사항으로 구성

- 심사기준은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세부심사항목(소분류)으로 구성

< 재승인 심사사항 >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9.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1호에 규정된 ‘방송법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를 재승인 심사사항으로 구성

- 제31조에 따라 방송평가위원회가 매년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편성,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평가점수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

②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1호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3호에 규정된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등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시청자 권익 보호 ▲신청법인의 적정성 ▲관련 법령 위반사례를 둠

○ ‘관련 법령 위반 사례’ 심사항목은 연구반에서 ‘방송법 및 관련 법령 미준수 사례’를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심사항목에서 감점하고 별도 심사사항에서 중복 감점하는 의견을 제시

- 관련 법령 위반을 중복 감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심사사항의 심사항목인 ’관련 법령 위반 사례‘에서만 감점 처리

○ ’신청법인의 적정성‘ 심사항목은 연구반에서 신청법인과 주요주주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제안

- 신청법인이 이미 초기 구성주주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방송사업자인 점, 방송법 제15조의2에서도 최다액출자자만 규제하고 있는 점 및 신청법인의 적정성을 평가한 과거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법인의 적정성 항목을 두되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

③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2호에 규정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기획·편성의 적절성 ▲수급의 적절성 ▲제작·협력의 적절성을 둠

④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5호에 규정된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을 둠

⑤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4호에 규정된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전략 ▲조직·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을 둠

○ 연구반에서는 별도 심사항목으로 ‘자금 조달 및 운영’과 ‘사업성 분석’을 제안하였지만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재정적 능력’ 심사항목에 포함된다고 보아 별도 심사항목으로 구성하지 않음

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6호에 규정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5호에 규정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⑦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4호에 규정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⑧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7호에 규정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6호에 규정된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⑨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2호에 규정된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다. 배점

<1안>

○ 재승인 총점 1000점 중 350점을 방송 1년치만('12년)만 평가점수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방송평가(심사사항 1)'의 배점으로 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점수로 배점

○ 사업계획서 관련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배점은 연구반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하되

- 종편의 공적책임 강화 차원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배점을 강화함

<2안>

○ 재승인 총점 1000점 중 400점을 계량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방송평가(심사사항 1)'의 배점으로 하고 나머지 60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점수로 배점

○ 사업계획서 관련 심사사항과 심사항목의 배점은 지상파방송 재허가·보도PP 재승인시 배점, 연구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배분

< '14년 종편·보도PP 심사사항 배점 비교 >

심사사항	'14년 종편 PP 재승인		연구반 종편	'13년 지상파 재허가	'14년 보도 PP 재승인		연구반 보도	'12년 보도 PP 재승인
	(1안)	(2안)			(1안)	(2안)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	400	300	400	350	400	3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20	200	180	235	280	250	200	28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	140	180	75	130	120	160	120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	80	80	65	50	50	80	50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	60	80	50	60	60	80	60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	30	70	50	20	20	70	30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30	30	50	75	40	40	50	60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	60	60	50	70	60	60	-
9.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감점처리	감점처리	감점처리	감점처리	감점처리	감점처리	감점처리	감점처리
총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 재승인 여부 결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심사결과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사업계획서, 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 부과

○ 시청자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가능(방송법 제16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16조제2항)

8. 향후 추진계획

○ '13.9월초 재승인 신청 공고(TV조선, JTBC, 채널A, 뉴스Y)

○ ~ 13.10월 재승인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승인 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

○ '13.10월~12월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접수 등

○ '14.1월~2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4.2월중 재승인 의결

○ '14.5월~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절차 진행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붙임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기본계획(안). 끝.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안)

1.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

o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 1개사

방송분야	방송사업자명	방송채널명	대표자	승인 유효기간
종편	(주)조선방송	TV조선	오지철	'14. 3. 31
	(주)제이티비씨	JTBC	김수길	'14. 3. 31
	(주)채널에이	채널A	유재홍	'14. 4. 21
	(주)매일방송	MBN	장용성	'14. 11. 30
보도	(주)연합뉴스티브이	뉴스Y	송현승	'14. 3. 31

※ 승인 유효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TV조선·JTBC·채널A·뉴스Y와 MBN의 심사를 분리하여 진행

2. 경과 사항

o '11.3월~5월 「종편·보도PP 승인」 위원회 의결

o '13.7.17. 재승인 심사기준 연구반 구성

o '13.8.5. 심사기준 초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연구반)

o '13.8.9. 종편·보도PP의 의견 수렴(연구반)

o '13.8.23. 최종 심사기준안을 위원회에 제출(연구반)

o '13.9.2. 연구반의 최종 심사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방통위)

3. 재승인 심사의 기본방향

가. 종편·보도PP 도입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심사

o 여론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 등을 중점 심사

* '10년 종편·보도PP 도입 목표 : ①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②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③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④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나. 심사기준의 구체화로 공정성 제고

o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에 상세한 심사기준을 제시

- 기본계획에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그 배점까지 포함시키고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

※ 기존 지상파 재허가 또는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에는 심사사항과 그 배점까지만 포함시키고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과 그 배점·평가방법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

※ '10년 종편·보도PP 최초 선정시에는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심사기준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시함

다. 지상파방송 재허가 등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유지

o 방송법상 지위 또는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을 준용하고 종편·보도PP의 채널 특성을 반영함

4.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① 구성 원칙

o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재승인 심사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

o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로 구성

② 구성방안

o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0인으로 구성(심사위원장 포함 총 11인)

구분	전문분야	비고
심사위원 (11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분야(2)	법학교수 또는 변호사
	경영·회계 분야(3)	회계사,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분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 단체(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③ 위촉기준

o 대학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o 박사학위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o 해당 분야 직종에 5년 이상 종사하면서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④ 결격 사유

o 2011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에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

o 2011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의 100분의 1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

o 2011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의 독자권익위원, 시청자위원·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하거나 자문 또는 용역을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o 2011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인 일간신문사·뉴스통신사·방송사업자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기고 또는 방송 출연한 사실이 있는자

o 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자

o 2011년 1월 1일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현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⑤ 심사위원 구성 절차

o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

o 전문분야별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5.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기본 방향

o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 제시

- 재승인 여부 및 조건 부과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② 심사위원회의 업무

o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등 논의·결정

o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평가

o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o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제시 등

③ 의견청취

o 청취내용 :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중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

o 청취대상자 : 신청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및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

※ 참석대상자는 불가피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의 사전 양해를 얻어 대리인 참석 가능

o 청취일시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o 결과처리 : 의견청취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④ 심사평가 방법

1) 평가 원칙

o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10인) 각각이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항목별로 평가

2) 평가 방법

o 계　량 : 방송평가, 재정적 능력 및 시정명령 횟수 등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객관적 · 정량적인 기준에 의해 평점 부여

o 비계량 : 다른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뒤 각 등급별로 평점을 환산하여 부여

구 분	등 급	내　　용	평점 환산비율(%)
1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80% 이상 100% 이하
2	우	우　　수	해당 배점의 60% 이상 80% 미만
3	미	보　　통	해당 배점의 40% 이상 60% 미만
4	양	미　　흡	해당 배점의 20% 이상 40% 미만
5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0% 이상 20% 미만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10인)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6. 심사기준

가. 주요 고려사항

o 법정 심사사항과 재허가·재승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 마련

o 외부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된 연구반 제시안을 반영

나.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구성

o 방송법 제10조제1항(심사기준·절차) 및 제17조제3항(재허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9개 심사사항으로 구성

- 심사기준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및 세부심사항목(소분류)으로 구성

< 재승인 심사사항 >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9.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o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1호에 규정된 '방송법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를 재승인 심사사항으로 구성

- 제31조에 따라 방송평가위원회가 매년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편성,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평가점수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

②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o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1호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3호에 규정된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등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시청자 권익 보호 ▲신청법인의 적정성 ▲관련 법령 위반 사례를 둠

o ‘관련 법령 위반 사례’ 심사항목은 연구반에서 ‘방송법 및 관련 법령 미준수 사례’를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심사항목에서 감점하고 별도 심사사항으로 구성하여 중복 감점하는 의견을 제시

- 관련 법령 위반을 중복 감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심사사항의 심사항목인 ’관련 법령 위반 사례‘에서만 감점 처리

o ’신청법인의 적정성‘ 심사항목은 연구반에서 신청법인과 주요주주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제안

- 신청법인이 이미 초기 구성주주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방송사업자인 점, 방송법 제15조의2에서도 최다액출자자만 규제하고 있는 점 및 신청법인의 적정성을 평가한 과거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법인의 적정성 항목을 두되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

③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o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2호에 규정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기획·편성의 적절성 ▲수급의 적절성 ▲제작·협력의 적절성을 둠

④ 재정 및 기술적 능력

o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5호에 규정된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을 둠

⑤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o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4호에 규정된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전략 ▲조직 · 인력운영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을 둠

o 연구반에서는 별도 심사항목으로 ‘자금 조달 및 운영’과 ‘사업성 분석’을 제안하였지만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재정적 능력’ 심사항목에 포함된다고 보아 별도 심사항목으로 구성하지 않음

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o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6호에 규정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5호에 규정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⑦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o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4호에 규정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⑧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o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7호에 규정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6호에 규정된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⑨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o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2호에 규정된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다. 배점

<1안>

o 재승인 총점 1000점 중 350점을 방송 1년치만('12년)만 평가점수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방송평가(심사사항 1)’의 배점으로 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점수로 배점

o 사업계획서 관련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배점은 연구반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하되

- 종편의 공적책임 강화 차원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배점을 강화함

<2안>

o 재승인 총점 1000점 중 400점을 계량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방송평가(심사사항 1)’의 배점으로 하고 나머지 60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점수로 배점

o 사업계획서 관련 심사사항과 심사항목의 배점은 지상파방송 재허가·보도PP 재승인시 배점, 연구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배분

< '14년 종편·보도PP 심사사항 배점 비교 >

심사사항	'14년 종편 PP 재승인		연구반 종편	'13년 지상파 재허가	'14년 보도 PP 재승인		연구반 보도	'12년 보도 PP 재승인
	(1안)	(2안)			(1안)	(2안)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	400	300	400	350	400	3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20	200	180	235	280	250	200	28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	140	180	75	130	120	160	120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	80	80	65	50	50	80	50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	60	80	50	60	60	80	60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	30	70	50	20	20	70	30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30	30	50	75	40	40	50	60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	60	60	50	70	60	60	-
9.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감점처리	감점처리	감점처리	감점처리	감점처리	감점처리	감점처리	감점처리
총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별 배점(1안) >

심사사항(종편/보도)	심사항목	배 점		평 가 지 표
		종편	보도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350)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	350	계 량
2.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20/280)	· 공적책임 · 공정성 ·공익성 실현 (실적 및 계획)	130	180	비계량
	·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	70	80	비계량
	· 신청법인의 적정성	20	20	비계량
	· 관련 법령 위반 사례	감점	감점	계 량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130)	· 기획·편성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70	60	비계량
	· 수급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50	35	비계량
	· 제작·협력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40	35	비계량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50)	· 재정적 능력	65	40	계량
	· 기술적 능력	15	10	비계량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60)	·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전략	30	30	비계량
	· 조직 ·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15	비계량
	·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15	비계량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20)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30	20	비계량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30/40)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 (실적 및 계획)	30	40	비계량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70)	· 승인시 부여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70	70	비계량
9.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감점	계 량
합 계		1000	1000	

<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별 배점(2안) >

심사사항(종편/보도)	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종편	보도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400)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계 량
2.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00/250)	· 공적책임 · 공정성 ·공익성 실현 (실적 및 계획)	120	160	비계량
	·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	70	80	비계량
	· 신청법인의 적정성	10	10	비계량
	· 관련 법령 위반 사례	감점	감점	계 량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40/120)	· 기획·편성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60	50	비계량
	· 수급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40	35	비계량
	· 제작·협력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40	35	비계량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50)	· 재정적 능력	65	40	계량
	· 기술적 능력	15	10	비계량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60)	·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전략	30	30	비계량
	· 조직 ·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15	비계량
	·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15	비계량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20)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30	20	비계량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30/40)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 (실적 및 계획)	30	40	비계량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60/60)	· 승인시 부여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60	60	비계량
9.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감점	계 량
합 계		1000	1000	

7. 재승인 여부 결정

o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o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심사결과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o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 부과

o 시청자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가능(방송법 제16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16조제2항)

8. 향후 추진계획

재승인 대상	일정	추 진 계 획	비 고
TV조선 · JTBC · 채널A · 뉴스Y	'13. 9월 ~ '13.12월	ㅇ 재승인 신청 공지 ㅇ 재승인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승인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 ㅇ 신청서류 검토 및 미비서류 보완 ㅇ 시청자 의견수렴 ㅇ 관계부처 의견조회	- 위원회 홈페이지 - 시청자 의견수렴 공고 · 관보 및 위원회 홈페이지
	'14. 1월 ~ '14. 2월	ㅇ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4일) ㅇ 재승인 의결	- 서류 심사 및 의견청취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MBN	'14. 5월 ~ '14. 8월	ㅇ 재승인 신청 공지 ㅇ 재승인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승인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 ㅇ 신청서류 검토 및 미비서류 보완 ㅇ 시청자 의견수렴 ㅇ 관계부처 의견조회	- 위원회 홈페이지 - 시청자 의견수렴 공고 · 관보 및 위원회 홈페이지
	'14. 9월 ~ '14.10월	ㅇ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2일) ㅇ 재승인 의결	- 서류 심사 및 의견청취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속기록) - 방통위 의결보류(2013. 9. 4.)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3. 9. 4(수) 10: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경재 위 원 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다.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 - ㈜조선방송 등 5개사 (2013-32-129)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다>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년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조선방송 등 5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개사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재승인 기본심사의 방향입니다. 종편·보도PP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해 여론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심사기준을 구체화해서 심사위원회 심사에 관한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그 배점까지 상세하게 포함시키고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코자 합니다. 세 번째는 지상파방송 재허가 등 다른 사례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법상 지위 또는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종편·보도PP의 채널 특성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0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를 평가하고,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심사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승인 여부 및 조건 부과 등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되겠습니다. 심사기준입니다. 주요 고려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정 심사사항과 재허가·재승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하면서 외부전문가와 토론회 등을 거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구성입니다.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9개 심사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9개 심사사항과 17개 심사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방송평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방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를 재승인 심사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방송평가위원회가 매년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편성,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입니다. 두 번째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입니다. 이는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호와 제17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으로 하위 심사항목으로는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시

청자 권익보호, 신청법인의 적정성, 관련 법령 위반사례를 두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반에서는 '방송법 및 관련 법령 미준수 사례'를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심사항목에서 감점하고 또한 별도 심사사항으로 구성하여 중복 감점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 위반을 중복 감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방송의 공적책임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심사사항의 심사항목인 '관련 법령 위반 사례'에서만 감점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신청법인의 적정성' 심사항목에 대해 연구반에서는 신청법인과 주요주주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청법인이 이미 초기 구성주주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방송사업자인 점, 방송법 제15조의2에서도 최다액출자자만 규제하고 있는 점 및 신청법인의 적정성을 평가한 과거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법인의 적정성 항목을 두되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입니다. 이 하위 심사항목으로 기획·편성의 적정성, 수급의 적절성, 제작·협력의 적절성을 두고자 합니다. 네 번째,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으로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을 심사항목으로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입니다. 방송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으로 하위 심사항목으로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전략, 조직·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을 두고자 합니다. 연구반에서는 별도 심사항목으로 '자금 조달 및 운영'과 '사업성 분석'을 제안해 왔습니다만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재정적 능력' 심사항목에 포함된다고 보아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는 방송법 제10조제1항제6호와 제17조제3항제5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이며, 일곱 번째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3호와 제17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7호와 제17조제3항제6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이며,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배점입니다. 각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별 배점에 대해서는 2개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제1안>은 재승인 총점 1000점 중에서 350점을 '방송평가'의 배점으로 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점수로 배점하는 방안입니다. 사업계획서 관련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배점은 연구반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하되 종편의 공적책임 강화 차원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배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제2안>은 재승인 총점 1000점 중에서 400점을 계량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방송평가'의 배점으로 하고 나머지 60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점수로 배점하는 방안입니다. 사업계획서 관련 심사사항과 심사항목의 배점은 지상파방송 재허가·보도PP 재승인시 배점, 연구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페이지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편PP 재승인 <제1안>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2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점,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

사회적·문화적 기여 30점,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점,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는 감점처리하는 방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제2안>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를 50점을 더하여서 400점으로 하고, 반면에 제2항에서 20점을 감하고 제3항에서 20점을 감하고 제8항에서 10점을 감하는 내용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보도PP 재승인에 대해서는 제1항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를 350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8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3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20점,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40점,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점,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는 감점처리하는 방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제2안>은 이에 비하여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를 50점 더하여 400점으로 하고 반면에 제2항에서 30점, 제3항에서 10점, 제8항에서 10점을 감하는 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17개 심사항목별 세부적인 배점 부여방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승인 여부 결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는 안입니다.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심사결과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신청 공고토록 하고, 일부 사업자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10월까지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신청서 검토 및 시청자 의견을 접수하고, 내년 1월~2월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재승인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MBN에 대해서는 재승인 심사 절차를 내년 5월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4페이지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보면 심사위원 10명에 위원장 포함해서 11명으로 되어 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사위원단을 15명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편 허가 당시에도 수많은 심사위원들이 참가해서 허가했다고 하지만 이번에 자료가 공개되어서 비난을 받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결국 방통위다, 그런 측면에서 심사위원단의 숫자를 늘려서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비계량 평가항목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럴수록 심사위원들이 적으면 적은 만큼 형평성이나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 종편 허가 시에 내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때 심사항목별로 최고점과 최하점은 배제하고 중간치로만 평가했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11명으로 했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 당시에는 14명이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런 측면까지 포함해서 지상파 재허가가 10명, 11명의 심사위원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도준호 교수를 비롯한 종편 연구반에서 제기했던 '항목별 과락 60%를 넘지 못하면 과락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정리된 것으로 보면 지상파와 똑같이 40%에 국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도 보도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던 종편채널의 공적책임에 관한 문제, 예컨대 종편에서 거르지 못한 공해적인 시사 토크의 배설적인 유포, 이런 문제들에 대해 여과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과목별 과락 수준을 60%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적책임 부분이 비계량항목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계량 항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우리가 의결해서 확정된 행정조처에 대한 감점이 대략 한 항목에 1, 2점밖에 안 되지요? 지상파의 경우에 2점으로 되어 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과징금은 5,000만원 이하 10점, 5,000만원 이상 1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래서 그러한 점은 2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상파 심사에 적용했던 감점이 금과옥조냐,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종편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종편이 저질러온 공적책임의 문제들은 객관적으로도 지상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비계량화된 공적책임 부분에 있어서 감점 1, 2점에 국한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위원회에서 정해서 심사위원단에게 부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심사위원의 수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지상파도 13인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셨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종편의 경우 심사대상 사업자가 4개 사업자이고, 최초 선정 심사는 아니고 재승인 심사이기 때문에 11인으로 해도 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11인으로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편 연구반에서 제시한 과락점수 60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모로 검토해 봤습니다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점 650점 미만이면 결국은 '재승인 거부'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총점 650점이 과락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650점을 월등히 초과한 신청자가 일부 과목에서 60점을 못 받아서 만약에 '재승인 거부'나 '조건부 승인'이 된다면 전체적인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약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 평가의 전반적인 합리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제공했던 것처럼 심사항목별 점수를 40점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비계량평가 관련해서 감점 부분을 좀 더 강화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습니다만 현재 방송평가 부분에서 방송평가 심사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제재조치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을 봤더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의'는 1점, '과징금'은 10점~15점까지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준의 틀과 달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적책임 부분에서 그 부분을 보다 더 많이 부과한다면 '12년도의 방송평가 내용에 대한 감점 부분과 사업계획서 부분에서 나온 평가의 내용에 감점이 달리 적용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 방송평가 결과 부분에서 반영하는 감점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제가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단을 15명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1명, 원안에 보면 방송분야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명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 분야도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명으로 늘리고, 경영·회계 분야는 3명으로 두고, 그리고 기술분야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명으로 늘리고, 시청자와 소비자단체를 1명 늘려서 4명을 늘리면 정확히 15명이 된다는 것이 제 복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항목별 과락에 대해서는 지금 종편사업자들 가운데 재정능력이 과도하게 높고 또 여러 가지 시청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시청률 중에 이른바 공적책임을 방기한 시청률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의 여론을 들끓게 하고 분노케 하는 것은 바로 공적책임의 외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내버려둔다면 과거의 지상파 민방 때부터 흘러오는 시청률 지상주의를 위해 여과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것을 방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하간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공적책임에서 공익성·공정성에 어긋난다면 그 점에 과락을 통해 조건부를 붙이든지 아니면 재승인을 거부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일단 1:1로 토론하는 것보다 위원들의 문제제기를 다 듣고 나서 답변했으면 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덧붙여서 국장과 상임위원 간의 논쟁이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내놓은 안이 연구반이 월요일에 발표한 안보다 대거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에 있어서 내용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저는 왜 갑자기 이런 안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심사위원 수 늘리자는 것이 무슨 큰 문제라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11인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사회적 쟁점이 됐고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이 종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을 몇몇 여론조사에서 표현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건들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공정하고 보다 더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11명보다 15명이 낫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어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지상파를 근거로 드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상파는 그동안 수많은 재생의 과정들을 겪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 80년사의 기본적인 자기 검열들이 철저하게 행해져 있었기 때문에 5.18 북한 책동 같은 자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초대형 사고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방송기술적으로 실수하거나 전체적인 흐름 속에 있어서 관점에 따라 상당히 편차는 있지만 공정성의 문제가 불거질 뿐이지, 일방적인 편파성들이나 왜곡보도, 그다음에 거짓보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지상파와 모든 준거의 틀을 지상파에서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7번 재승인 여부 결정에 있어서 '조건부 재승인'과 '재승인 거부'가 or로 갔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이제까지 모든 재승인에 점수와 상관없이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김용일 과장, 그렇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제가 모든 것을 다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조건부 재승인이 들어간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사례가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재승인은 조건부가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650점 미만 사업자에게는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이고 무슨 근거냐는 것입니다. 월요일 토론회에서도 '재승인 거부'가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때 고려대 김성철 교수의 경우 교수 재임용 과정을 심사하는데 59점이라도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고, 60점은 살려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엄격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반에서도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 고민 고민을 해서 결국에는 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올려놓았는데 여기에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떨어뜨리라는 것입니까, 떨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59점이면 조건부 재승인하고 58점이면 재승인 거부합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던져 놓았는데 2개를 동시에 올려놓습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종합편성채널 선정 허가할 때 전체 과락 1,000점 만점에 800점이 과락이었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총점 기준으로 800점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대항목별로 70점 과락이 있었고 60점 과락이 있었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대항목이 70점이었고, 그다음에 중항목이 전체가 아니고 19개 중에 5개 항목이 60점이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된 내용들이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기본적으로 통신 영역에서도 제4이통이 총점 70% 미만일 때 과락, 그다음에 항목별로 60점 미만일 때 과락, 통신도 그 정도로 엄격하게 합니다. 이것은 방송영역입니다. 지상파가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킨 종합편성채널입니다. 그리고 연구반에서 올렸던 60%는 어디로 가고 왜 사무처에서 자의적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도대체 사무처가 연구반을 왜 운영했습니까? 공청회를 왜 했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자의성을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휘두릅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비상식적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공청회에서 나왔고 연구반에서 그렇게 올렸는데 왜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이 수치들을 마음대로 낮춥니까? 그러면 <제1안>, <제2안>으로 올리든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것은 앞에 기본방향에서 밝혔듯이 지상파 재허가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 **양문석 상임위원**
- 지상파 재허가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같은 재허가 조건을 유지한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종편은 수많은 특혜를 지상파보다 받고 규제는 수평적 규제를 하자는 것입니까? 그런 엉터리 논리가 어딨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지상파와 종편이 심사가 같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무슨 고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런 고민 없이 지상파와 규제의 틀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본적인 보고서의 틀이 애초 전제가 잘못됐지요. 지상파와 심사조건과 기준의 틀을 같이 한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엉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흐름이 다 엉터리이고 그렇게 했으면 연구반에서 그 전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연구반에서도 그런 일관성을 갖고 심사기준표를 만드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반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흐름들을 읽어내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맞춰 왔는데, 지상파와 종편이 다르다는 전제 속에서 준비해 왔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지상파와 종편이 같다는 전제로 놓고 이렇게 왕창 바꾼다면 연구반을 왜 운영했습니까?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지상파와 종편이 같습니까? 퀄리티가 같고 제작비율이 같고 편성비율이 같고 유사합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런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방송법 규제 체계상 지상파 규제보다는 종편에 대한 규제가 중간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 도무지 종편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와 국회의 관심사에 대해 아무런 고민 없이 이 심사기준표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심사기준표를 기본적으로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양 위원님께서 발언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저도 발언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연구반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통일된 의견을 만들지를 못해서 저희에게 건의할 때도 복수안으로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무국에서 만든 안이 가장 최선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고민의 소산이라고 봅니다. 특히 저는 양 위원님이나 김충식 부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주로 지상파 자료를 봤습니다. 그동안 재허가를 어떻게 해 왔고 재허가를 할 때 심사사항에 대한 배점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받아서 쭉 봤는데, 이것이 재허가를 할 때마다 불변의 기준은 아니고 조금씩조금씩 그때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의적절하게 그 당시의 시류를 반영했던 고민의 흔적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방송평가를 여기에 반영한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07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만, 더 오래 전에는 600점까지 올라갔던 것이 점차 500점을 거쳐 400점까지 줄어서 방송평가의 관한 항목이 400점, 나머지가 600점 이렇게 운영이 됐고 그 600점 안에서도 배점 포션을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매번 달라져 왔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이번 사무국에서 제시한 안에는 400점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연구반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줄여서 350점으로 하느냐, 2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평가가 포션이 자꾸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규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위법행위를 잡아내고 또는 허가나 인허가를 통해 규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점점 더 세련되어 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런 평가 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평가의 비중을 자꾸 낮추게 되면 이것이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거쳐 고심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 벌써 오랫동안 쌓여온 노하우가 반영된 제도인데, 이 제도를 자꾸 비중을 스스로 낮춰가는 것은 방통위, 정부 당국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적책임을 지금 중하게 물어야 한다, 야당 의원님께서도 많이 주장하셔서 그것을 반영한 것이 공공성 부

분을 묻는 배점을 상당히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금도 말씀이 있었지만 공공성의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한없이 강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있는 법체계나 제도 안에서 보면 아무래도 지상파가 가장 공공성 면에서는 앞서야 하고, 그다음에 PP가 더 뒤쯤에 있다면 그 중간쯤에 있는 것이 종편의 위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상식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 지상파를 기준으로 해서 적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무국의 고민을 이해합니다. 지상파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져갈 것이냐, 공정성 부분도 저는 지상파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단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무국에서 바로 답변하기보다는 상임위원들 간에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평가위원회는 제가 책임을 맡고 있어서 방평위를 김대희 위원님께서 높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연구반에서 지상파에 적용하던 방송평가부분 400점 룰을 300점으로 낮추자는 논리가 무엇이었지요?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것이 종편은 '11년도 12월에 개국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12년도 1년치만 방송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300점이나 350점으로 낮추자는 의미였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거기에다가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송평가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천편일률적이고 도식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들이 연구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 비중을 1,000점 중에서 400점까지 넓혀 놓으면 나머지 종편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최초로 출연한 미디어, 그리고 여러 가지 지탄을 받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재승인에서 무사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체크포인트를 높이자는 측면에서 300점이냐, 350점이냐 하는 논의가 연구반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무국에서 절충적으로 300점이 아닌 350점까지 정리한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지금 큰 이야기 중의 하나가 왜 지상파가 기준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방송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지상파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륜을 쌓아오다 보니까 지상파의 공익성·공공성이 쌓였지요. 물론 중간 어느 부분에서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런 역사를 거치면서 지상파가 적어도 이 정도는 되야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송이 PP도 있고, 보도채널, 종편채널 쭉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점을 지상파를 놓고 보면 지상파보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느냐, 아니면 지상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공익성과 공공성이 부합해 들어오느냐를 보는 기준점이 지상파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배점이나 평가를 하면서 지

상파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는 것이 있고 쭉 해 온 관례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존중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떤 기준점 없이 그때그때마다 적용한다면 오히려 그 자체가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조금 유감스럽게 보는 것은 왜 사무국에서 <제1안>, <제2안>으로 냈느냐, 이 부분에 대해 사무국을 질책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1안>, <제2안>으로 해서 심사배점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우선 사무국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을 놓고 보면 고민은 되겠지요. 그러나 <제1안>, <제2안>을 가지고 한 자체에 대해 저는 마땅치 않다는 말씀드리면서 <7>번에 보면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부분은 그동안 지상파는 75점을 했지요? 그런데 종편은 지역방송이 없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에 관해 배려가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지역 부분은 10점으로 확 줄이고, 오히려 더 종편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공적책임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책임을 더 강화하는 부분에 사무국에서 중점을 뒀으면 어떨까, 그래서 사무국 스스로가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도 말씀하시고 바깥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치 자체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사위원과 관련해서 김충식 부위원장님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과락 부분을 40%로 할 것이냐, 60%로 할 것이냐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동안 쭉 해 왔던 지상파의 기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보도채널을 60%로 올렸다면 나중에 지상파의 기준도 60%로 올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제1안>으로 가자, <제2안>으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사무국의 고민이나 철학이 완전히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홍성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는데 바라보는 상황은 비슷한데 방법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상파 기준점이다, 지상파 콘텐츠가 기준점이고 국민의 눈높이는 지상파에 의해서 종편의 수준을 봐 왔습니다. 그런데 종편은 터무니없이 수준이 저질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왜 이 재승인 심사를 하느냐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장에서 지우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보다 나은 방송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시청하기 위해서... 후자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상파의 기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상파 수준으로 규제를 해야 합니까, 지상파보다 더 높게 규제를 해서 지상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현재 엉망인 부분들의 질서를 잡고, 콘텐츠의 질을 고르게 하고, 그리고 어떤 시청자들도 좋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어야 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심사를 하는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보도의 공정성·공적책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수준을 끌어 올리라는 의미에서 저는 연구반에서 60%를 이야기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그 부분들이 확보가 되면 다음 심사 때는 55%, 50% 하면서

지상파와 종편을 놓고 시청자들이 채널 이름을 지우고, 번호를 지우고 똑같이 봤을 때 지상파와 종편채널들의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지상파 준거점의 40%라는 것입니다. 왜 재승인 심사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을 하자는 것입니다. 봐주자, 말자, 때려잡자 말자가 아니라, 기본적인 심사라는 절차가 왜 필요했고, 이런 심사를 만들었고, 이 심사에서 무엇을 얻어낼 것이고 하는 고민을 한다면 당연히 60%지요. 그 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홍성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한 방송의 역사성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 정말 적절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성에 있어서 짧은 역사를 가진 종합편성 채널이 얼마만큼 빠르게 정상화 또 국민의 눈높이까지 끌어올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이 심사기준표에 녹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들을 저는 월요일에 토론회 사회를 보면서 연구반이 엄청나게 고민했다는 흔적들을 제가 그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느껴집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노력을 사무처가 아주 잘못된 기준 속에 일방적으로 낮춰버리는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반의 과정에도 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했을 것입니다.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것은 아닙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이 드러나느냐, 첫 공청회 때 상당히 많은 비판들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이번 토론회 때 많은 언론들이 심사기준표에 대해 비판적인 어프로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상당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기준표에 상당히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올린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토론을 충분히 하셨는데 옛날보다 종편 심사에 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엄격히 해야 하는데 우리가 계량화한다는 것은 냉정하게 숫자적으로 하자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감정을 개입하지 말고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심사위원을 더 늘리자는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연구반에서 만든 것보다도, 정치권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정성 문제를 상당히 더... 방송프로그램, 기획... 일반적으로 토론회가 50% 이상 차지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올리자고 해서 연구반보다 더 올리는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과락 문제도 양쪽에 논리적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과락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산수, 국어, 영어 이런 것들의 배점인데 과락의 문제를 제기한 것과 여기 보니까 배점이 다 다릅니다. 국어는 400점, 영어는 200점, 체육은 30점 줬는데 배점이 굉장히 적은 것이 과락이라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어야 하느냐, 이런 통계학적 영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 부분이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하루 더 토론을 거쳐 시간상으로 9월 말 안으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하기는 어려우니까 금주 내로 확정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더 오늘 밤을 새서라도 협의를 해서 내일 오후 2시

에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 결정을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안은 하루 더 논의를 거쳐 내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3.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안건)
- 방통위 수정의결(2013. 9. 5.)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의안번호	제2013 - 33 - 129호	심의의결사항
의결일자	2013. 9. 5.	
공개여부	공 개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

- (주)조선방송 등 5개사 -

제 출 자	위원장
제출일자	2013. 9. .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수정의결)

- (주)조선방송 등 5개사 -

<2013. 9. 5.(목),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1. 의결주문

○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2014년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조선방송 등 5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3.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 1개사

방송분야	방송사업자명	방송채널명	대표자	승인 유효기간
종편	(주)조선방송	TV조선	오지철	'14. 3. 31
	(주)제이티비씨	JTBC	김수길	'14. 3. 31
	(주)채널에이	채널A	유재홍	'14. 4. 21
	(주)매일방송	MBN	장용성	'14. 11. 30
보도	(주)연합뉴스티브이	뉴스Y	송현승	'14. 3. 31

※ 승인 유효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TV조선·JTBC·채널A·뉴스Y와 MBN의 심사를 분리하여 진행

4. 재승인 심사의 기본방향

가. 종편·보도PP 도입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심사

○ 여론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 등을 중점 심사

* '10년 종편·보도PP 도입 목표 : ①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②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③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④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나. 심사기준의 구체화로 공정성 제고

○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에 상세한 심사기준을 제시

- 기본계획에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그 배점까지 포함시키고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

※ 기존 지상파 재허가 또는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에는 심사사항과 그 배점까지만 포함시키고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과 그 배점·평가방법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

※ '10년 종편·보도PP 최초 선정시에는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심사기준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시함

다. 지상파방송 재허가 등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고려

○ 방송법상 지위 또는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을 준용하고 종편·보도PP의 채널 특성을 반영함

5.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인으로 구성(심사위원장 포함 총 15인)

구분	전문분야	비고
심사위원(15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분야(3)	법학교수 또는 변호사
	경영·회계 분야(3)	회계사,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 단체(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 제시

- 재승인 여부 및 조건 부과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6. 심사기준

가. 주요 고려사항

○ 법정 심사사항과 재허가·재승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 마련

○ 외부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된 연구반 제시안을 반영

나.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구성

○ 방송법 제10조제1항(심사기준·절차) 및 제17조제3항(재허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9개 심사사항으로 구성

- 심사기준은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세부심사항목(소분류)으로 구성

< 재승인 심사사항 >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9.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1호에 규정된 '방송법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를 재승인 심사사항으로 구성

- 제31조에 따라 방송평가위원회가 매년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편성,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평가점수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

②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1호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3호에 규정된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등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시청자 권익 보호 ▲신청법인의 적정성 ▲관련 법령 위반사례를 둠

○ ‘관련 법령 위반 사례’ 심사항목은 연구반에서 ‘방송법 및 관련 법령 미준수 사례’를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심사항목에서 감점하고 별도 심사사항에서 중복 감점하는 의견을 제시

- 관련 법령 위반을 중복 감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심사사항의 심사항목인 ’관련 법령 위반 사례‘에서만 감점 처리

○ ’신청법인의 적정성‘ 심사항목은 연구반에서 신청법인과 주요주주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제안

- 신청법인이 이미 초기 구성주주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방송사업자인 점, 방송법 제15조의2에서도 최다액출자자만 규제하고 있는 점 및 신청법인의 적정성을 평가한 과거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법인의 적정성 항목을 두되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

③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2호에 규정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기획·편성의 적절성 ▲수급의 적절성 ▲제작·협력의 적절성을 둠

④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5호에 규정된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을 둠

⑤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4호에 규정된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전략 ▲조직·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을 둠

○ 연구반에서는 별도 심사항목으로 '자금 조달 및 운영'과 '사업성 분석'을 제안하였지만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재정적 능력' 심사항목에 포함된다고 보아 별도 심사항목으로 구성하지 않음

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6호에 규정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5호에 규정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⑦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4호에 규정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⑧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7호에 규정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6호에 규정된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⑨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2호에 규정된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다. 배점

○ 재승인 총점 1000점 중 350점을 '방송평가(심사사항 1)'의 배점으로 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점수로 배점

○ 사업계획서 관련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배점은 연구반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하되

- 종편의 공적책임 강화 차원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배점을 강화함

< '14년 종편·보도PP 심사사항 배점 비교 >

심사사항	'14년 종편 PP 재승인	연구반 종편	'13년 지상파 재허가	'14년 보도 PP 재승인	연구반 보도	'12년 보도PP 재승인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	300	400	**350**	3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30**	180	235	**280**	200	28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	180	75	**130**	160	120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	80	65	**50**	80	50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	80	50	**60**	80	60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	70	50	**20**	70	30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20**	50	75	**40**	50	60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	60	50	**70**	60	-
9.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감점 처리**	감점 처리	감점 처리	**감점 처리**	감점 처리	감점 처리
총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별 배점 >

심사사항(종편/보도)	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종편	보도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350)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	350	계 량
2.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30/280)	· 공적책임 · 공정성 ·공익성 실현 (실적 및 계획)	140	180	비계량
	·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및계획)	70	80	비계량
	· 신청법인의 적정성	20	20	비계량
	· 관련 법령 위반 사례	감점	감점	계 량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130)	· 기획·편성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70	60	비계량
	· 수급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50	35	비계량
	· 제작·협력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40	35	비계량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50)	· 재정적 능력	65	40	계량
	· 기술적 능력	15	10	비계량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60)	·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전략	30	30	비계량
	· 조직 ·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15	비계량
	·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15	비계량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20)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30	20	비계량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0/40)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 (실적 및 계획)	20	40	비계량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70)	· 승인시 부여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70	70	비계량
9.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감점	계 량
합 계		1000	1000	

7. 재승인 여부 결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심사결과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사업계획서, 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 부과

○ 시청자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가능(방송법 제16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16조제2항)

8. 향후 추진계획

○ '13.9월초 재승인 신청 공고(TV조선, JTBC, 채널A, 뉴스Y)

○ ~ 13.10월 재승인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승인 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

○ '13.10월~12월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접수 등

○ '14.1월~2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4.2월중 재승인 의결

○ '14.5월~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절차 진행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붙임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기본계획(안). 끝.

20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수정의결)

1.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

o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 1개사

방송분야	방송사업자명	방송채널명	대표자	승인 유효기간
종편	(주)조선방송	TV조선	오지철	'14. 3. 31
	(주)제이티비씨	JTBC	김수길	'14. 3. 31
	(주)채널에이	채널A	유재홍	'14. 4. 21
	(주)매일방송	MBN	장용성	'14. 11. 30
보도	(주)연합뉴스티브이	뉴스Y	송현승	'14. 3. 31

※ 승인 유효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TV조선·JTBC·채널A·뉴스Y와 MBN의 심사를 분리하여 진행

2. 경과 사항

o '11.3월~5월 「종편·보도PP 승인」 위원회 의결

o '13.7.17. 재승인 심사기준 연구반 구성

o '13.8.5. 심사기준 초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연구반)

o '13.8.9. 종편·보도PP의 의견 수렴(연구반)

o '13.8.23. 최종 심사기준안을 위원회에 제출(연구반)

o '13.9.2. 연구반의 최종 심사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방통위)

3. 재승인 심사의 기본방향

가. 종편·보도PP 도입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심사

o 여론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 등을 중점 심사

* '10년 종편·보도PP 도입 목표 : ①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②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③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④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나. 심사기준의 구체화로 공정성 제고

o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에 상세한 심사기준을 제시

- 기본계획에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그 배점까지 포함시키고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

※ 기존 지상파 재허가 또는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에는 심사사항과 그 배점까지만 포함시키고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과 그 배점·평가방법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

※ '10년 종편·보도PP 최초 선정시에는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심사기준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시함

다. 지상파방송 재허가 등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고려

o 방송법상 지위 또는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을 준용하고 종편·보도PP의 채널 특성을 반영함

4.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① 구성 원칙

o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재승인 심사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

o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로 구성

② 구성방안

o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인으로 구성(심사위원장 포함 총 15인)

구분	전문분야	비고
심사위원 (15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분야(3)	법학교수 또는 변호사
	경영·회계 분야(3)	회계사,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 단체(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③ 위촉기준

o 대학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o 박사학위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o 해당 분야 직종에 5년 이상 종사하면서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④ 결격 사유

o 2011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에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

o 2011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의 100분의 1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

o 2011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의 독자권익위원, 시청자위원·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하거나 자문 또는 용역을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o 2011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인 일간신문사·뉴스통신사·방송사업자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기고 또는 방송 출연한 사실이 있는자

o 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자

o 2011년 1월 1일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현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⑤ 심사위원 구성 절차

o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

o 전문분야별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5.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기본 방향

o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 제시

- 재승인 여부 및 조건 부과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② 심사위원회의 업무

o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등 논의·결정

o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평가

o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o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제시 등

③ 의견청취

o 청취내용 :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중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

o 청취대상자 : 신청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및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

※ 참석대상자는 불가피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의 사전 양해를 얻어 대리인 참석 가능

o 청취일시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o 결과처리 : 의견청취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④ 심사평가 방법

1) 평가 원칙

o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14인) 각각이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항목별로 평가

2) 평가 방법

o 계　량 : 방송평가, 재정적 능력 및 시정명령 횟수 등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객관적 · 정량적인 기준에 의해 평점 부여

o 비계량 : 다른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뒤 각 등급별로 평점을 환산하여 부여

구 분	등 급	내　　용	평점 환산비율(%)
1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80% 이상 100% 이하
2	우	우　　수	해당 배점의 60% 이상 80% 미만
3	미	보　　통	해당 배점의 40% 이상 60% 미만
4	양	미　　흡	해당 배점의 20% 이상 40% 미만
5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0% 이상 20% 미만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14인)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6. 심사기준

가. 주요 고려사항

o 법정 심사사항과 재허가·재승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 마련

o 외부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된 연구반 제시안을 반영

나.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구성

o 방송법 제10조제1항(심사기준·절차) 및 제17조제3항(재허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9개 심사사항으로 구성

- 심사기준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및 세부심사항목(소분류)으로 구성

< 재승인 심사사항 >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9.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o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1호에 규정된 '방송법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를 재승인 심사사항으로 구성

- 제31조에 따라 방송평가위원회가 매년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편성,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평가점수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

②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o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1호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3호에 규정된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등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시청자 권익 보호 ▲신청법인의 적정성 ▲관련 법령 위반 사례를 둠

o ‘관련 법령 위반 사례’ 심사항목은 연구반에서 ‘방송법 및 관련 법령 미준수 사례’를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심사항목에서 감점하고 별도 심사사항으로 구성하여 중복 감점하는 의견을 제시

- 관련 법령 위반을 중복 감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심사사항의 심사항목인 ’관련 법령 위반 사례‘에서만 감점 처리

o ’신청법인의 적정성‘ 심사항목은 연구반에서 신청법인과 주요주주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제안

- 신청법인이 이미 초기 구성주주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방송사업자인 점, 방송법 제15조의2에서도 최다액출자자만 규제하고 있는 점 및 신청법인의 적정성을 평가한 과거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법인의 적정성 항목을 두되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

③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o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2호에 규정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기획·편성의 적절성 ▲수급의 적절성 ▲제작·협력의 적절성을 둠

④ 재정 및 기술적 능력

o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5호에 규정된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을 둠

⑤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o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4호에 규정된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을 심사사항으로 구성

- 하위 심사항목으로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전략 ▲조직 · 인력운영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을 둠

o 연구반에서는 별도 심사항목으로 '자금 조달 및 운영'과 '사업성 분석'을 제안하였지만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재정적 능력' 심사항목에 포함된다고 보아 별도 심사항목으로 구성하지 않음

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o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6호에 규정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5호에 규정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⑦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o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4호에 규정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⑧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o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제7호에 규정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6호에 규정된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⑨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o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제2호에 규정된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를 심사사항으로 구성

다. 배점

o 재승인 총점 1000점 중 350점을 ‘방송평가(심사사항 1)’의 배점으로 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점수로 배점

o 사업계획서 관련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배점은 연구반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하되

- 종편의 공적책임 강화 차원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배점을 강화함

< '14년 종편·보도PP 심사사항 배점 비교 >

심사사항	'14년 종편 PP 재승인	연구반 종편	'13년 지상파 재허가	'14년 보도 PP 재승인	연구반 보도	'12년 보도PP 재승인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	300	400	350	3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30	180	235	280	200	28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	180	75	130	160	120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	80	65	50	80	50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	80	50	60	80	60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	70	50	20	70	30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20	50	75	40	50	60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	60	50	70	60	-
9.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감점 처리	감점 처리	감점 처리	감점 처리	감점 처리	감점 처리
총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별 배점 >

심사사항(종편/보도)	심사항목	배 점		평 가 지 표
		종편	보도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350)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	350	계 량
2.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30/280)	· 공적책임 · 공정성 ·공익성 실현 (실적 및 계획)	140	180	비계량
	·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	70	80	비계량
	· 신청법인의 적정성	20	20	비계량
	· 관련 법령 위반 사례	감점	감점	계 량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130)	· 기획·편성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70	60	비계량
	· 수급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50	35	비계량
	· 제작·협력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40	35	비계량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50)	· 재정적 능력	65	40	계량
	· 기술적 능력	15	10	비계량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60)	·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전략	30	30	비계량
	· 조직 ·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15	비계량
	·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15	비계량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20)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30	20	비계량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0/40)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 (실적 및 계획)	20	40	비계량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70)	· 승인시 부여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70	70	비계량
9.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감점	계 량
합 계		1000	1000	

7. 재승인 여부 결정

o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o 심사결과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o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 부과

o 시청자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가능(방송법 제16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16조제2항)

8. 향후 추진계획

재승인 대상	일정	추 진 계 획	비 고
TV조선 · JTBC · 채널A · 뉴스Y	'13. 9월 ~ '13.12월	ㅇ 재승인 신청 공지 ㅇ 재승인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승인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 ㅇ 신청서류 검토 및 미비서류 보완 ㅇ 시청자 의견수렴 ㅇ 관계부처 의견조회	- 위원회 홈페이지 - 시청자 의견수렴 공고 · 관보 및 위원회 홈페이지
	'14. 1월 ~ '14. 2월	ㅇ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4일) ㅇ 재승인 의결	- 서류 심사 및 의견청취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MBN	'14. 5월 ~ '14. 8월	ㅇ 재승인 신청 공지 ㅇ 재승인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승인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 ㅇ 신청서류 검토 및 미비서류 보완 ㅇ 시청자 의견수렴 ㅇ 관계부처 의견조회	- 위원회 홈페이지 - 시청자 의견수렴 공고 · 관보 및 위원회 홈페이지
	'14. 9월 ~ '14.10월	ㅇ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2일) ㅇ 재승인 의결	- 서류 심사 및 의견청취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속기록) - 방통위 수정의결(2013. 9. 5.)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3. 9. 5(목) 14: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경재 위 원 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가. 2014년도 종합편성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 (2013-33-129)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4년도 종합편성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4년도 종합편성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4년도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조선방송 등 5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재승인 대상 사업자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승인 심사의 기본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종편 · 보도PP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해 여론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사기준의 구체화로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그 배점까지 포함시키고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상파방송 재허가 등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방송법상 지위 또는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을 준용하고 종편 · 보도PP의 채널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방송분야는 3명, 법률분야 3명, 경영 · 회계분야 3명, 기술분야 2명, 시청자 · 소비자단체 3명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를 평가하고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심사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인 여부 및 조건 부과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기준입니다. 심사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주요 고려사항은 법정 심사사항과 재허가 · 재승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하면서 외부전문가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구성입니다. 방송법 제10조제1항과 제17조제3항에서 명시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9개 심사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심사사항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방송평가 내용입니다.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를 재승인 심사사항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는 방송평가위원회가 매년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편성,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입니다. 두 번째는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입니다. 이는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으로 하위 심사항목으로는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실현, 시청자 권익 보호, 신청법인의 적정성, 관련 법령 위반사례를 두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 위반 사례’와 관련해서 연구반에서는 ‘방송법 및 관련 법령 미준수 사례’를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심사항목에서 감점하고 별도 심사사항으로 구성해서 중복 감점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 위반을 중복 감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심사사항의 심사항목인 ‘관련 법령 위반 사례’에서만 감점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신청법인의 적정성’ 심사항목은 연구반에서 신청법인과 주요주주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제안해 왔습니다만 신청법인이 이미 초기 구성주주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방송사업자인 점, 방송법 제15조의2에서도 최다액출자자만 규제하고 있는 점 및 신청법인의 적정성을 평가한 과거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법인의 적정성 항목을 두되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인데 이는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으로 기획·편성의 적절성, 수급의 적절성, 제작·협력의 적절성을 심사항목으로 두고자 합니다.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으로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을 심사항목으로 두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으로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조직·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을 두고자 합니다. 연구반에서는 별도 심사항목으로 ‘자금 조달 및 운영’과 ‘사업성 분석’을 제안하였지만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재정적 능력’ 심사항목에 포함시켜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별도 심사항목으로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는 방송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7조제3항제5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이며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이며,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심사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심사사항별 배점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승인 총점 1000점 중 350점을 ‘방송평가’의 배점으로 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점수로 배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관련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배점은 연구반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하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그리고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배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표>를 보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편 PP의 경우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를 350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3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점,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20점,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점,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감점처리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보도PP 재승인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8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3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점, 방

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20점,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40점,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점, 그리고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감점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심사항목별 배점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재승인 여부 결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신청 공고하고, 10월까지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겠습니다. 10월~12월까지 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청자 의견을 접수하는 한편 내년 1~2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월 중에 재승인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만,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절차는 내년 5월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먼저 전차 회의에서 의견이 상충했던 부분이 정리된 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첫째,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1명이 14명으로 늘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포함하면 15명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방송분야, 법률분야, 기술분야, 시청자·소비자단체 1명씩을 포함해서 위원장까지 총 15명으로 늘린 것, 두 번째는 종편의 방송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는 350점으로 확정하고, 세 번째로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해 230점으로 10점을 늘리고 지역사회 발전기여가 종편은 전국방송이기 때문에 10점을 낮춰서 확정한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네 번째로 일단 과락에 대해 심한 논란이 있었는데 원안에는 40% 과락으로 일괄해서 정했던 것을 2가지 분야, 즉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부문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이 2가지에 한해서 과락을 50%로 높이고, 미달하는 경우에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합의가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부위원장이 제안을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한 부분입니다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한 내용을 주의, 경고 등의 감점으로 나가더라도 1점~4점밖에 감점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가 특별히 심사위원회에 대해 총 230점의 공적책임 부문이 전체가 비계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산술적으로 1점이나 4점을 감점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춰서 공적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심사위원단에게 주문할 것을 제안드렸고,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제도 논의가 있었지만 과락을 60%로 할 것이냐, 40%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 끝에 50%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재승인'으로 그칠 것이냐, 혹은 '재승인 거부'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 아직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재승인 거부가 붙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종편 심사 전체에 대해 650점 총점 과락을 놓고서도 '재승인 거부' 혹은 '조건부 재승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탈락시킬 수 없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공적책임과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분야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문에 있어서 특별한 과락 퍼센티지를 높이면서도 그 점에 대해 관대하게 '조건부 재승인'만을 허가하는 것은 우리가 합의한 정신에도 원천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 거부'로 명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쭉 정리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만 어제 회의가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다시 하자고 해서 오늘 회의에서는 아까 정리한 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모든 것이 지상파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8페이지 <'14년 종편·보도PP 심사사항 배점 비교>를 보면 <1>번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금년도 지상파 재허가의 기준이 400점인데 350점으로 강화하였습니다. <2>번 지상파는 235점인데 230점으로 했으면 이것도 강화한 것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지상파는 75점인데 160점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4>번도 지상파는 65점인데 80점으로 강화하고, <5>번도 마찬가지로 50점에서 60점으로 강화하고, <8>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점 자체가 굉장히 강화된 것입니다. 강화되어서 공정성이 나아지고 방송이 계속 나아지면 좋은데 강하게 하는 것만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2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지상파나 기존 사업자의 형평성은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있는 것이고, 앞으로 재허가나 재승인 시에는 전부 다 강화된 기준으로 가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됐을 때 오는 문제가 없을까 하는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강화되었을 때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의 입장도 보면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을 때에는 평가결과에 대한 왜곡도 우려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주 강화하는 것만이 문제일까, 이런 데 대한 생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화된 안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 사실 나중에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심사위원들이 따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위원장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감점의 배점 1점, 2점, 4점 하는 부분은 부위원장님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규정을 고쳐서 가야 할 것이다, 이 시점부터 가야 할 부분은 아니고 규정을 고쳐서 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50% 미달됐을 경우 '조건부 재승인'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넣자고 다시 제안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7>번 재승인 여부 결정 부분이 있습니다.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재승인 거부를 해야 할 만큼 종편 중 어느 하나가 심사결과가 나빴다면 여기에 반드시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재승인 거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탈락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탈락할 수 있습니다.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40%에 달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50%가 될 경우에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해 놓았을 경우 위의 40%와 잘 안 맞아떨어지는 것 아니냐, 일관성을 가지게 하면서 위에 650점의 경우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로 가고, 그다음에 과락의 경우 40%, 50%가 있는데 그것은 다 '조건부 재승인'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 일관성 있게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어제도 정리한 것인데, 제 생각에는 오늘 사무국에서 정리해 온 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지상파 수준이라는 것, 지상파가 기준점이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러면 1페이지 처음에 보면 왜 재승인 심사를 하느냐, 콘텐츠 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재승인에 대한 문제를 심사하기 때문에 지상파가 기준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상파가 기준점이면 국민들이 익숙한 지상파 콘텐츠라는 눈높이에 국민들이 맞춰져 있으면 종편이나 보도PP도 지상파 수준의 콘텐츠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재승인 심사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그러면 지상파 콘텐츠 수준에 맞춰 주기 위해 심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상파에게 적용했던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것들을 맞춰 주기 위해 지상파보다 훨씬 떨어지는 콘텐츠 질을 보유하고 있는 종편이나 보도PP에게 그 지상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상파 수준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높은 심사기준을 주어야 그 부분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맞춰질 것 아니냐는 부분에 있어서 지상파 기준점이라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심사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연구반에서 1회의 공청회와 1회의 토론회를 했습니다. 두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상당히 고양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종편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연구반이 조금 더 높은 심사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사무국에서 보고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달면서 연구반에서 이야

기했던 부분보다 다 낮췄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는 누구든지 어떤 관점에서 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들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배점을 말씀하셨는데 <3>번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에서 '13년 지상파 재허가 때는 75점이었는데 종편PP 재승인 때는 160점이다, 엄청나게 강화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 봅시다. 지상파가 기본적으로 장르 부분을 뛰어넘거나 그다음에 장르 부분에 있어서 규정을 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작계획에 있어서 지상파 3사가 평균 4,500~5,000억원의 제작비를 투여하고, EBS가 600~700억원의 제작비를 투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계획의 적절성에 있어서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편의 장르 준수율이나, 종편이 도대체 종편인지 토론 전문채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도대체 장르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그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상파보다 2배 정도 높은, 2배가 아니라 3배 정도 높은 그러한 배점이 가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종편을 심사하는, 2013년 9월에 준비해서 2014년에 종편을 심사하려면 2013년 9월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는 것들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강화했다고 자꾸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재승인 이야기입니다. 조건부 재승인이 얼마나 허무한지 한 번 봅시다. TV조선, JTBC, 채널A 승인조건입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서 이후에 선정 당시의 승인조건인데 승인조건으로 9개가 있습니다. 다 의무였고, <6>번을 보면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 방송 언어 순화 계획, 공익성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 이것이 승인조건 <6>번의 <가> 내용입니다. <나>는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역 밀착형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방안, <다>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라> 콘텐츠 제작자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배분 방법 등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마> 국내 방송장비, <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등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사> PP 및 유료방송과의 협력 등 유료 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 이런 내용이 승인조건이었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종편에서 지역방송 밀착 프로그램 만들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담당 과장,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와 관련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지난번에 이행실적 점검했지 않습니까?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점검했는데 구체적으로 밀착 프로그램을 제작했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담당 과장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승인조건 이행의 여부에 대해서도 희미하고 보이지 않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조건부 승인이냐, 재승인 거부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주 격론을 벌이고 있는데, 조건부 재승

인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 없는 것들을 하기 위해 한 나라가 발칵 뒤집힐 만큼 언론이 보도하고 국회가 문제제기하고 그리고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을 또 하루를 늘려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 우리 회의 끝나고 나서 언론들 하나 같이 '종편 심사 대폭 기준 완화', '후퇴' 이러한 여론들이 빗발치고 있는데 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라는 그것도 '또는'인데 재승인 거부만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들을 굳이 배제시켜야 하느냐고 했었을 때, 저는 합의제 위원회 구조에서 이 문제가 정파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공히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5명의 상임위원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건부 재승인'과 '재승인 거부'라는 부분들을 단일안으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또는'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안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건부 재승인'이 될 수 있고, 잘했다 하더라도 59점 또는 649점이면 '재승인 거부'가 의결될 수 있는 부분이면 이러한 부분들을 열어놓고 종합편성채널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이번 심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이후에 계획들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긴장감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한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제가 추가로 홍 위원님 말씀하신 2가지 지적에 대해 반론하겠습니다. 첫째, 방통심의위원회의 제재점수가 1점, 2점, 4점 하는 것이 지상파와 연계되어 있고, 우리의 방송규칙과 통일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그대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되, 그렇다면 지금 230점의 공적책임과 공정성·공익성에서 그것을 세분해 보면 140점이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이고, 70점 시청자 권익보호, 20점 신청법인의 적정성 그리고 관련 법령 위반사례 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0점 중에 1점, 2점, 4점을 감점해도 본 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종편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점을 바로 잡는 데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공적책임을 묻는 140점 중에서 1점, 2점, 4점을 들어내더라도 또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심사위원단에게 실질적으로 방통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민간 자율이 결정하고 또 방통위라고 하는 행정기관이 제재를 결정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실효성 있게 재승인 때 반영하라는 것을 위원회가 하부기관인 심사위원회에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50% 미달 시 과락을 부여하는 문제도, 지상파의 기준이 금과옥조가 될 수 없는 것이 지금 지상파와 종편 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차이를 보면 지상파의 기준만 가지고 종편을 이야기하기에는 정말 일반화의 오류가 아주 심각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입법 시에도 특가법도 있고 또 특정 범죄는 가중처벌하는 것에서 보듯이 지금 종편이 그동안 저질러 온 특수한 범법들을 보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당연히 50%라고 하는 평균적인 일반 과락 40점을을 벗어난 2항목 공적책임과 3항목 프로그램에 대한 엄격성을 우리가 부여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실효성이 있으려면 '조건부 재승인'이라고 하는 그런 솜방망이에 머물지 아니하고 '재승인 거부'까지 명기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 됩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상당히 숙달된 선수가 나와서 달리는 것과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달리기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방송내용의 품질을 높이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하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마를 하는 사람에게 너 100m 13초에 뛰어라, 14초에 뛰어라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해서 걸음마하는 수준이 급격하게 신장이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고 또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야 하지만 그런 취지에서 저도 어저께 '계량평가 점수 배점도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논의 끝에 그것도 조정하는데 동의했고 공공성 부분도 배점이 강화되는 것까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과락 점수를 40%에서 50%까지 올린 것도 그것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달리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편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재승인 거부'까지 붙이자는 것은 어저께 서로 논의한 정신에 위배가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이 다시 나온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점이 굉장히 작아서 이것이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수차례 방송정책을 접하면서 이것이 형식적으로 미미한 처벌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저도 제시했었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점수를 강화하는 것은 별도의 장에서 별도로 논의해서 전체적으로 가져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종편 사안을 심사하면서 바로 올려서 그것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일관성이나 전체적으로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본다면 당초 안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말씀을, 달리는 능력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는 빨리 태어나고 늦게 태어나고, 성인이나 유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장 쟁점이 붙고 있는 부분들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라는 문제가 핵심 쟁점의 대표적인 배점 사례인데 이 부분은 달리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달리는 사람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똑바로 뛸 것이냐, 옆으로 빠질 것이냐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는 아니라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오늘의 현안을 정확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어제까지 전체적으로 40%에서 50%까지 동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상징적인 양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처리하지 못하고 끝난 부분이 거부의 문제를 '또는'이라고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심사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에게 기본적인 긴장감들을 주어야 한다, 일반 언론에서 봐도 이것이 그냥 종편 봐주기 아니냐는 비난성 기사가 쇄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종편의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한 하나의 교두보의 역할로 '거부'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통 크게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의견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결론은 현재 배점을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가 없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만, 과락과 관련해서 50% 미만을 받았을 경우에 조건부 승인할 것이냐, 아예 거부까지 새로운 용어를 넣을 것이냐 그 문제지요?

○ **김충식 부위원장**

- or, 혹은….

○ **이경재 위원장**

- 우선 일반론적으로 제가 케이블TV를 시작할 때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때의 지상파방송은 정말 국민의 전파를 활용하는, 거기에 '국민의 방송'이라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다음에 케이블TV 시작할 때는 유료방송으로 특별히 이것은 산업적 측면에서 규제를 지상파보다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구도를 잡았고 그런 면에서 지상파보다는 여러 가지 기준을 굉장히 약화시켜서 광고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기준도 케이블TV는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종편이 출발하고 난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지탄을 받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 방통위원장으로서도 여러 차례 경고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적인 바람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구반에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연구반에서 실어놓은 것을 보고 저 개인적으로도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 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이 부분은 높여서 더 엄격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렸고, 또 정치권의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처음의 안보다는 <2>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도 180점으로 올렸는데 230점으로 올렸고,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은 20점이 줄어든 것 같지만 지상파보다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락도 지상파가 40%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의 점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2>번, <3>번 항목에 관해서는 50%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강화한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거부할 수 있다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논의 같은데 이 부분은 거부해야 한다는 표현보다는 거부도 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두 표현을 넣더라도 심리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런 것은 있을지라도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과 또는 '재승인 거부'도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위원장으로서 넣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 **홍성규 상임위원**

- 위원장님 뜻을 짐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워딩이 중요합니다. 워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 **이경재 위원장**

- 미달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도 할 수 있도록 함, 그러면 되지요?

○ **홍성규 상임위원**

-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하시지요.

○ **이경재 위원장**

- 알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 정도로 하신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렇게 결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없으시면 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끝.

Ⅲ. 재승인 신청 안내

2014년도 종합편성PP
재승인 신청 안내

2014. 4.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Ⅰ. 재승인 개요 ····· 97

1. 재승인 대상 사업자 ····· 97
2. 재승인 신청서류 제출 ····· 97
3. 재승인 여부 결정 ····· 98
4. 추진일정 ····· 98
5. 유의사항 ····· 99

Ⅱ. 재승인 심사 ····· 100

1. 심사 기본 방향 ····· 100
2. 심사절차 ····· 101
3. 심사위원회 구성 ····· 102
4. 심사사항(항목) 및 배점 ····· 103

Ⅲ. 재승인 신청서류 및 작성·제출요령 ····· 104

1. 제출서류 및 제출 부수 ····· 104
2. 작성 및 제출 요령 ····· 106
3.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 107

Ⅳ. 재승인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 108

Ⅰ. 재승인 개요

1 재승인 대상 사업자

o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승인 유효기간이 '14.11.30에 만료되어 동법 제17조에 따라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2 재승인 신청서류 제출

o 제출기한 : '14.5.30(금)까지

o 제출서류 : 신청공문, 재승인 신청서(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등), 부속서류, 별도제출자료, 요약문

o 제 출 처 : (우)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재승인 담당자 앞

o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o 문의 : 방송지원정책과 재승인 담당(02-2110-1436, ********@kcc.go.kr)

3 재승인 여부 결정

o 심사결과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할 수 있음

-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으며,

- 특히,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해당 심사사항 배점의 50%를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사업계획서, 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o 시청자 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방송법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

4 추진 일정

o '14.5.30 재승인 신청서 접수 마감

o '14.6월~10월 신청서 검토, 서류보정, 시청자 의견청취* 등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견 청취 관련 사항을 자사 방송을 통해 공지 (자세한 사항은 추후 통보)

o '14.10월~11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재승인 여부 의결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고지 예정

5 유의사항

o 재승인과 관련된 각종 신청(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과의 공적인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하여야 함

o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과 그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됨

o 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o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백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Ⅱ. 재승인 심사

1 심사 기본 방향

가. 종편·보도PP 도입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심사

o 여론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 등을 중점 심사

* '10년 종편·보도PP 도입 목표 : ①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②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③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④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나. 심사기준의 구체화로 공정성 제고

o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에 상세한 심사기준을 제시

- 기본계획에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그 배점까지 포함시키고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

※ 기존 지상파 재허가 또는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에는 심사사항과 그 배점까지만 포함시키고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과 그 배점·평가방법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

다. 지상파방송 재허가 등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고려

o 방송법상 지위 또는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을 준용하고 종편·보도PP의 채널 특성을 반영함

2 심사절차

o 신청서류 접수 및 보정

- 제출서류 구비 여부 확인 및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
- 제출서류 세부 검토 후 미제출서류 징구 및 보정사항 통보

o 시청자 의견 청취

-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
- 재승인 대상 방송사는 시청자 의견 관련 사항을 자사 방송을 통해 공지

o 현장조사 : 신청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 시행

o 의견청취 :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중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청취 실시

- 참석대상 :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
- 청취일시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 평가방법 : 의견청취에 대한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o 심사평가 :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o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승인 여부 결정

o 심사결과 통보 및 공표

- 사업자에게 공문을 통해 재승인 여부 및 조건 등 심사결과 통보
-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등 심사결과를 향후 백서 등을 통해 공표

3 심사위원회 구성

o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인으로 구성(심사위원장 포함 총 15인)

구분	전문분야	비고
심사위원 (15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분야(3)	법학교수 또는 변호사
	경영·회계 분야(3)	회계사,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 단체(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4 심사사항(항목) 및 배점

o 방송법 제10조제1항(심사기준·절차) 및 제17조제3항(재승인 등)에 명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9개 심사사항으로 구성

심사사항(종편/보도)	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종편	보도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350)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	350	계 량
2.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30/280)	· 공적책임 · 공정성 ·공익성 실현 (실적 및 계획)	140	180	비계량
	·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	70	80	비계량
	· 신청법인의 적정성	20	20	비계량
	· 관련 법령 위반 사례	감점	감점	계 량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130)	· 기획·편성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70	60	비계량
	· 수급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50	35	비계량
	· 제작·협력의 적절성 (실적 및 계획)	40	35	비계량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50)	· 재정적 능력	65	40	계량
	· 기술적 능력	15	10	비계량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60)	·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전략	30	30	비계량
	· 조직 ·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15	비계량
	·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15	비계량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20)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30	20	비계량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0/40)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 (실적 및 계획)	20	40	비계량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70)	· 승인시 부여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70	70	비계량
9.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감점	계 량
합 계		1000	1000	

※ 감점기준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Ⅲ. 재승인 신청서류 및 작성 · 제출 요령

1 제출서류 및 제출부수

□ 제출서류

o 신청공문, 재승인 신청서, 부속서류, 별도제출자료, 요약문 등으로 구성

<재승인 신청 서류 현황>

1. 신청공문
2.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① 재승인 신청서
② 서약서
③ 신청법인 명세
④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⑤ 승인장 사본
⑥ 주간기본편성표
3. 부속서류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5.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 5.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은 원본 보정 후 제출

□ 제출부수

< 제출 부수 현황 >

구분	서류	원본	사본	CD	비고
최초 접수시	1. 신청공문	1	-	-	-
	2.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1	2	1	
	3. 부속서류	1	1	1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2	-	-	파일 제출 (재무제표 등)
보정후 재접수시	1. 신청공문	1	-	-	-
	2.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1	18	2	
	3. 부속서류	1	18	2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	-	-	필요시 재제출
추후 통보시	5.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1	18	2	

※ 보정 후 접수일은 추후 조정하여 통지

o 부속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재승인 신청서 제출일 현재 대표자와 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기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작성 관련 세부 제출 자료

o 별도제출자료
- 2011년, 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신청법인, 최대주주) 각 2부
- 재무제표 및 추정재무제표 엑셀파일
-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내역

o 승인장은 스캔하여 그림파일(JPEG)로 변환, 수록

2 작성 및 제출 요령

o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

o 신청서류는 신청법인이 직접 작성

o 제출서류는 한글문서(hwp)로 작성하고, 기본글꼴 및 크기는 “휴먼명조, 13”, 표는 “중고딕, 12”로 작성, A4용지(210×297mm)를 사용하며, 쪽수를 일련번호로 작성하여 표기

※ 재무제표는 한글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하고,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파일로 제출

o 지도·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

o 제출하는 원본 및 사본은 표지에 각각 “원본”, “사본”임을 표시하고, 표지 안쪽 면에는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또는 “원본과 같음”, 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사본의 경우 겉표지 오른쪽 상단에 ☑ 표시를 하고 아래쪽에는 전체 사본 부수(18), 위쪽에는 사본의 번호를 기재

o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은 별도로 20쪽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항목을 적시 ※ 원본보정 후 별도 제출

o 첨부 재승인신청서 양식은 표준양식이며, 각 사업자별 특성에 맞게 편집·수정하여 제출

o 기간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적은 2011년 12월 1일 ~ 2014년 4월 30일, 계획은 2014년 12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o 주요 실적이 3페이지 이상인 경우, 최신일자 순으로 3페이지까지 본문에 작성하고, 전체 내용은 부속서류로 제출

o 신청서 접수 이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3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o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담당자 현황

- ○○○ 사무관(02-2110-1433), ○○○ 주무관(02-2110-1436)

※ 재승인 신청서 작성 관련 사항은 상기 담당자에 문의

Ⅳ. 재승인 신청서류 작성 세부 지침

2.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① 재승인 신청서

② 서약서

③ 신청법인 명세

④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⑤ 승인장 사본

⑥ 주간기본편성표

3. 부속서류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5.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재승인신청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원 본

2014. 5.

로고 ㈜○○방송

원본임이 틀림없음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Ⅰ. 재승인 신청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3.15.> (앞 쪽)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최다액출자자		생년월일	

승인내용	승인번호		승인일자	
	소재지 (주된 사무소)	주소 : 전화 :	공급분야	

법 또는 승인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위반사항	위반횟수	시정조치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사업수지견적	역무제공내용	수신자 불만처리

「방송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재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제출서류		수수료
	1.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서 1부. 2.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방송채널사용사업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100,000원

210㎜×297㎜[백상지(80g/㎡)]

□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 재승인신청서는「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작성

1. 신청인

※ 소재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2. 법 또는 승인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별첨”으로 기재한 후 사업계획 해당부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

3.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 각각의 항목에 “별첨”으로 기재한 후 사업계획 해당부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

Ⅱ. 서약서

서 약 서

본 법인은 재승인 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특히 아래 사항에 관하여 재확인하고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며, 소유제한 규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 본 법인은 재승인 신청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본 법인은 재승인 신청서류에 기술한 사업계획 등이 국민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공적 약속임을 서약하며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본 법인은 재승인을 받을 경우, 재승인 유효기간 동안 방송법을 준수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5월 일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Ⅲ. 신청법인 명세

1 개요

※ 방송사의 설립목적, 운영방향, 방송현황 등을 기술

2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

※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3 연혁

※ 승인장 교부일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연혁을 기술

4 법인 현황

<table>
<tr><td colspan="2">구분</td><td colspan="5">세부 내역</td></tr>
<tr><td colspan="2" rowspan="2">방송법인 명칭</td><td>국문</td><td colspan="2"></td><td>(약칭)</td></tr>
<tr><td>영문</td><td colspan="2"></td><td>(약칭)</td></tr>
<tr><td colspan="2">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홈페이지 주소</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법인설립일자</td><td></td><td>자본금(단위:억원)</td><td colspan="2"></td></tr>
<tr><td>구분</td><td>회사직책</td><td>성명</td><td>주민등록번호</td><td>주요약력</td><td>임기</td></tr>
<tr><td>법인대표자</td><td></td><td></td><td></td><td></td><td>. . . ~ . . .</td></tr>
<tr><td>편성책임자</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5">임원</td><td></td><td></td><td></td><td></td><td>. . . ~ . . .</td></tr>
<tr><td></td><td></td><td></td><td></td><td>. . . ~ . . .</td></tr>
<tr><td></td><td></td><td></td><td></td><td>. . . ~ . . .</td></tr>
<tr><td></td><td></td><td></td><td></td><td>. . . ~ . . .</td></tr>
<tr><td></td><td></td><td></td><td></td><td>. . . ~ . . .</td></tr>
<tr><td colspan="2" rowspan="6">5%이상 주요주주 현황</td><td>주주명</td><td>대표이사</td><td>참여지분(%)</td><td>회사자본금</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5 주주 관련 사항

1. 주주 현황

① 구성 주주의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 번호 (주민 등록 번호)	② 구성 주주간 특수 관계자 명	출자비중		구성주주의 최대주주				③ 대기업 해당 여부 (O, ×)	④ 외국인 지분 총합 비율 (%)	⑤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 여부 (O, ×)
				주식수	지분율	법인명 (성명)	대표자	국적	사업자 등록 번호 (주민 등록 번호)			
총계												

※ 2013년 8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구성주주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세부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음

①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 법인은 법인명을, 개인은 성명을 기재하며, 개인 주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만 기재

②구성주주 간 특수관계자 명 : 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당해 방송사업자의 구성주주 간 관계를 표시하되, 특수관계자가 복수로 있을 경우에는 복수의 특수관계자 명을 기재

- 각 방송사업자는 5%이상 주주에게 <10. 기타 제출사항>의 '특수관계자 확인서(인감도장 날인 必)'를 작성토록 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받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5%이상 주주사가 특수관계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사에 '특수관계자 확인서'의 첨부1(주주현황)을 제공해야 함.

※ 5% 미만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자 확인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기재사실의 진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 정확한 사실을 기재

③대기업 해당여부 : 구성주주가 방송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란에 "o"을 표기

④외국인지분비율(%) : 해당주주의 방송법제14조에 따른 외국인 지분 비율(%)을 기재

⑤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 여부 : 구성주주가 방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 해당 란에 "o"을 표기

2. 주주 변동내역(승인장 교부시점~'13.8.31)

(단위 : 백만원)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비고
	주주명	출자금액	지분율	주주명	출자금액	지분율		

※ 엑셀 파일로도 별도 제출

3. 주주 및 자본금 변동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변동 계획
주 주	
자본금	

※ 해당 사업자만 기재하며, 기업공개 계획 등을 포함

Ⅳ.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1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실현

1. 공적책임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o 방송의 공적책임 수행실적 및 방송 서비스의 보편성 구현 수행실적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향후 5년간 계획

o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방송의 공적책임 구현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2. 공정성 구현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o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 관련 이행실적
o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이행실적
o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관련 이행실적

나. 향후 5년간 계획

o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방송의 공정성 구현방안을 구제적으로 기술

3. 공익성 구현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재난방송 및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o 재난방송 편성실적
o 방송언어 순화실적
o 공익적 프로그램(비상업적 공익광고·캠페인 포함) 편성 실적

□ 재난방송 편성 실적(양식)

< 재난방송 편성 현황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비고
	방송시간(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재난방송	(%)	(%)	%	(%)	(%)	%	(%)	(%)	%	(%)	(%)	
전체방송시간	(%)	(%)	%	(%)	(%)	%	(%)	(%)	%	(%)	(%)	

※ 괄호(%)는 전체 방송시간 대비 재난방송 편성시간 비율

< 재난방송 세부 편성 실적 >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양식)

<연도별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실적>

(단위 : 분,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비고
	방송시간(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공익적 프로그램	(%)	(%)	%	(%)	(%)	%	(%)	(%)	%	(%)	(%)	
전체방송 시간	(%)	(%)	%	(%)	(%)	%	(%)	(%)	%	(%)	(%)	

※ 괄호(%)는 전체 방송시간 대비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시간 비율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세부 내역 >

일시	프로그램 명	방송내용	방송시간(분)	비고
'11.11.11	*더불어 삽시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 이야기*	*60*	*재방 2회*

※ 본방 기준으로 작성하되, 재방시 비고란에 횟수 기재

나. 향후 5년간 계획

o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성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계획(양식)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편성시간(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편성시간(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편성시간(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편성시간(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편성시간(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편성시간(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공익적 프로그램	(%)	%	(%)	%	(%)	%	(%)	%	(%)	%	(%)	%
전체 방송시간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괄호(%)는 전체 방송시간 대비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시간 비율

2 시청자 권익 보호

1.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소수시청자 그룹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편성실적', '장애인 방송 편성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o 시청자 권익실현 관련 이행실적
- o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관련 이행실적
- o 장애인 지원방안 관련 이행실적
- o 노약자·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관련 이행실적

□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편성실적(양식)

<연도별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실적>

(단위 : 분,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비고
	방송시간(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어린이·청소년	(%)	(%)	%	(%)	(%)	%	(%)	(%)	%	(%)	(%)	
장애인	(%)	(%)	%	(%)	(%)	%	(%)	(%)	%	(%)	(%)	
다문화가정·노약자·외국인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계	(%)	(%)	%	(%)	(%)	%	(%)	(%)	%	(%)	(%)	
전체 방송시간	(100%)	(100%)	%	(100%)	(100%)	%	(100%)	(100%)	%	(100%)	(100%)	

※ 괄호(%)는 전체 방송시간 대비 개별 소수 시청자 프로그램 편성시간 비율

< 소수 시청자 그룹 프로그램 세부 편성 내역 >

일시	구분	프로그램 명	방송내용	방송시간(분)	비고
	장애인				*재방 2회*

※ 소수시청자 그룹별(어린이·청소년, 장애인 등) 세부 편성내역을 기재
※ 본방 기준으로 작성하되, 재방시 비고란에 횟수 기재

□ 장애인 방송 편성실적(양식)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비고
	방송시간(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수화방송	(%)	(%)	%	(%)	(%)	%	(%)	(%)	%	(%)	(%)	
자막방송	(%)	(%)	%	(%)	(%)	%	(%)	(%)	%	(%)	(%)	
화면해설방송	(%)	(%)	%	(%)	(%)	%	(%)	(%)	%	(%)	(%)	
계	(%)	(%)	%	(%)	(%)	%	(%)	(%)	%	(%)	(%)	
전체방송시간	(100%)	(100%)	%	(100%)	(100%)	%	(100%)	(100%)	%	(100%)	(100%)	

※ 괄호(%)는 전체 방송시간 대비 수화·자막·화면해설 방송 편성시간 비율

나. 향후 5년간 계획

o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장애인 방송 편성 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어린이·청소년	시간(분)						
	비율(%)						
장애인	시간(분)						
	비율(%)						
다문화가정·노약자·외국인	시간(분)						
	비율(%)						
기타	시간(분)						
	비율(%)						
계	시간(분)						
	비율(%)						
전체 방송시간	시간(분)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 장애인 방송 편성계획

분야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자막방송	시간(분)						
	비율(%)						
화면해설 방송	시간(분)						
	비율(%)						
수화방송	시간(분)						
	비율(%)						
계	시간(분)						
	비율(%)						
전체 방송시간	시간(분)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2. 시청자 참여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o 시청자 의견 반영 등 시청자 참여 보장방안의 이행실적
o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운영계획 관련 이행실적

□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양식)

o 운영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시청자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건수					
제시의견 활용실적 건수					

o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시정 요구) 반영 내역

순번	제안내용	시청자위원회 제시의견 반영 내역	제안시기	비고

o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시정요구) 중 미반영 내역

순번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내역	미반영 사유	비고

o 시청자 위원 명단(연도별 작성)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요이력	추천부문	추천단체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실적(양식)

(단위 : 분,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비고
	방송시간(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	(%)	%	(%)	(%)	%	(%)	(%)	%	(%)	(%)	
전체방송시간	(100%)	(100%)	%	(100%)	(100%)	%	(100%)	(100%)	%	(100%)	(100%)	

<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편성 세부 내역 >

방송기간	프로그램 명	방송시간(분)	비고
'11.11.11 ~ '12. 9.30	*시청자 세상*	*60*	
'11.11.11 ~ '12. 10.7	*시청자 평가*	*60*	

나. 향후 5년간 계획

o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시청자 참여 관련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시청자 불만처리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시청자 불만처리 실적', '연도별 자체심의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o 시청자 불만처리 관련 이행실적
o 자체심의 기구 설치 및 운영 관련 이행실적

□ **시청자 불만처리 실적(양식)**

(단위 : 건)

구분	불만접수건수	불만처리건수	미처리건수	불만처리비율(%)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 **시청자 불만 상세 내역(상위 5대 사유)**

(단위 : 건)

구분		사유 1	사유 2	사유 3	사유 4	사유 5	합계
2011년	건수						
	비율(%)						100%
2012년	건수						
	비율(%)						100%
2013년	건수						
	비율(%)						100%
2014년	건수						
	비율(%)						100%
합계	건수						
	비율(%)						100%

□ **시청자 불만 미처리건수 상세 내역(상위 5대 사유)**

(단위 : 건)

구분		사유 1	사유 2	사유 3	사유 4	사유 5	합계
2011년	건수						
	비율(%)						100%
2012년	건수						
	비율(%)						100%
2013년	건수						
	비율(%)						100%
2014년	건수						
	비율(%)						100%
합계	건수						
	비율(%)						100%

□ 연도별 자체심의 현황(양식)

<20xx년>

전체방송 프로그램 편수	심의현황			심의 미필 건수	심의시기			심의결과	
	대본심의 건수 (비율)	제작물 심의건수 (비율)	전체심의 건수		사전심의 건수 (비율)	당일심의 건수 (비율)	사후심의건수 (비율)	지적 건수	이행 건수

※ 자체 심의규정과 연도별 자체심의 세부 실적(심의실적, 지적사항 및 시정내용 등)은 부속서류로 제출

나. 향후 5년간 계획

o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시청자 불만처리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실적 및 계획

방송시간, 편성비율, 방송실적 등은 월간방송실시결과 작성기준과 동일하게 작성

1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

1. 기획·편성의 우수성 및 독창성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o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의 당초 기본방향 및 목표와의 부합 여부
- o 방송분야별, 장르별 편성 관련 이행실적

□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양식)

분야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시간[1]	비율[2]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보도																
교양																
오락																
총계																

1) 분야별 방송시간의 합은 연간 방송시간(총계)이 되도록 작성
2) 재방송 비율의 합은 연간 총 방송시간 중 재방송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도록 작성

< 승인 신청시 제출한 주요 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이행실적 >

승인 신청시 제출한 프로그램 주요 제작계획 (프로그램명)	이행실적		비고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나. 향후 5년간 계획

o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향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양식은 아래 참조

□ 방송프로그램 편성 계획(양식)

분야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시간[1]	비율[2]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보도												
교양												
오락												
총계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 분야별 방송시간의 합은 연간 방송시간(총계)이 되도록 작성

2) 재방송 비율의 합은 연간 총 방송시간 중 재방송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도록 작성

□ 주요 방송 프로그램 편성계획

편성일자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기획의도 및 개요	비고

2. 편성의 자율성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o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관련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향후 5년간 계획

o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관련 계획을 중심으로 구제적으로 기술

2 수급 실적 및 계획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o 방송프로그램 수급(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관련 실적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양식은 아래 참조

□ 연도별 방송 프로그램 수급 실적(양식)

<20XX년>

구분		승인 시 사업계획			실적		
		시간[1]	비율	비용[2]	시간	비율	비용
자체	순수자체제작[3]						
	공동제작[4]						
	소계						
외주제작[5]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국내물 구매[6]						
	국외물 구매[7]						
	소계						
총계			100%			100%	

1) 제작원별 프로그램 시간 및 비용 합은 연간 시간 및 비용(총계)이 되도록 작성
2) 비용은 제작비(전속료, 출연료, 취재비, 진행비 등 직접제작비만 해당되며,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는 제외), 외주제작사 지급비용, 구매비용 등임
3) 순수자체제작 : 방송사 단독으로 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 가지는 경우
4) 공동제작 : 방송사업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기획, 투자, 제작하는 경우(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
5) 외주제작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하는 경우(방송법 제72조제1항). 단, 공동제작의 3요건 중 당해 방송사업자가 한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외주제작에 포함하며, 구매로 분류되는 경우
6) 국내물 구매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자를 위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7) 국외물 구매 :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 유통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시간[1]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자체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외주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구매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총계																	

1) 제작원별 방송시간의 합은 연간 방송시간(총계)이 되도록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o 방송프로그램 수급(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관련 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양식은 아래 참조

<2014년 ~ 2019년까지 연도별 제작 계획>

구분		2014년			2015년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자체	순수자체제작						
	공동제작						
	소계						
외주제작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국내물 구매						
	국외물 구매						
	소계						
총계			100%			100%	

구분		2016년			2017년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자체	순수자체제작						
	공동제작						
	소계						
외주제작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국내물 구매						
	국외물 구매						
	소계						
총계			100%			100%	

구분		2018년			2019년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자체	순수자체제작						
	공동제작						
	소계						
외주제작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국내물 구매						
	국외물 구매						
	소계						
총계			100%			100%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자체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외주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구매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총계													

3 제작·협력 실적 및 계획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o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관련 이행실적
o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노력 관련 이행실적
o 신규 플랫폼 진출 실적
o 국내·외 콘텐츠 유통 실적
o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 협력 관련 이행실적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o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계획
o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노력 관련 계획
o 신규 플랫폼 진출 계획
o 국내·외 콘텐츠 유통 계획
o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 협력 계획

3.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 재정적 능력('11~'14.1/4분기)

1. 재무구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2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3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4년1Q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요약 재무상태표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요약 손익계산서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재무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o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11~13년) : 별첨으로 제출, 엑셀화일 별도 제출
o 감사보고서('11~'13년) 각 2부 : 별도 제출(신청법인 및 최대주주)
o 전년대비 증감비율은 실적칸에 두 번째 줄로 ( )에 작성
o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자료 작성기준을 근거로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재무비율 작성

2. 수입현황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1Q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			%			%		
광고 매출액			%			%			%		
협찬 매출액			%			%			%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			%			%			%		
방송시설 임대 매출액			%			%			%		
행사 매출액			%			%			%		
기타방송 사업매출액			%			%			%		
기타사업매출액			%			%			%		
총 계			%			%			%		

※ 수입금액의 총합은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금액과 동일해야 함.
※ 수입현황 구분 기준은 방송사업자 회계처리지침을 기준으로 함

나. 방송 프로그램 제공, 광고, 협찬, 방송 프로그램 판매, 방송시설 임대, 행사, 기타 방송사업, 기타 사업 매출액

o 상기 항목별 세부 매출액 내역을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단위 : 백만원)

연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1Q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			%		
			%			%			%		
			%			%			%		
			%			%			%		
합 계			%			%			%		

※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예)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은 플랫폼 사업자별로 구분하고, 방송프로그램 판매는 국내·외 등으로 구분

3. 추정수입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		%		%
광고 매출액		%		%		%
협찬 매출액		%		%		%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		%		%		%
방송시설 임대 매출액		%		%		%
행사 매출액		%		%		%
기타방송 사업매출액		%		%		%
기타사업매출액		%		%		%
총 계		%		%		

구분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		%		%
광고 매출액		%		%		%
협찬 매출액		%		%		%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		%		%		%
방송시설 임대 매출액		%		%		%
행사 매출액		%		%		%
기타방송 사업매출액		%		%		%
기타사업매출액		%		%		%
총 계		%		%		%

나. 방송프로그램 제공, 광고, 협찬, 방송 프로그램 판매, 방송시설 임대, 행사, 기타 방송사업, 기타 사업 매출액

o 상기 항목별 세부 예상수입 내역을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		%		%
		%		%		%
		%		%		%
		%		%		%
		%		%		%
		%		%		%
총 계		%		%		

구분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2 기술적 능력

1. 방송시설설치 운영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o 방송제작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실적', '국산장비 도입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 실적(양식)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제작 시설								
송출 시설								
기타 시설								
계								

□ 국산 방송장비 도입실적(양식)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제작 시설								
송출 시설								
기타 시설								
계								

※ 방송장비 및 솔루션 도입 비용 외 시설설비 투자비용은 제외

나. 향후 5년간 계획

o 방송제작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계획', '국산장비 도입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 계획(아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제작 시설							
송출 시설							
기타 시설							
계							

□ 국산장비 도입 계획(양식)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제작 시설							
송출 시설							
기타 시설							
계							

※ 방송장비 및 솔루션 도입 비용 외 시설설비 투자비용은 제외

2.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o 콘텐츠 제작, 후반작업 등 편집기술 확보 계획 관련 이행실적
o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실현 관련 이행실적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o 콘텐츠 제작, 후반작업 등 편집기술 확보 계획
o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계획 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1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1. 향후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o 기존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o 채널확보 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 관련 이행실적
o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또는 전략적 관계 구축 관련 이행실적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o 사업추진 계획 기본 전략 및 방향 관련
o 향후 5년간 시장전망
o 기업 내·외부 환경 분석
o 채널확보 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 전략
o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또는 전략적 관계 구축 계획

2.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 발전을 위한 투자실적 및 향후전략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o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투자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향후 5년간 계획

o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투자 및 사업운영 전략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3. 자금조달 및 운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o 프로그램 제작, 방송시설 설치 등 연도별 자금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산출 근거를 제시
- o 자금 조달계획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자기자본, 타인자본)으로 구분하여 자금운영 계획에 따른 추정 소요자금에 대한 조달계획 및 조달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4. 사업성 분석

o 향후('14~'19년)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등에 근거하여 추정 재무제표(아래 양식 참조)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추정근거 제시) 사업성을 분석

- 추정 현금흐름 등을 기초로 DCF 방법에 의한 순현재 가치(NPV), 내부 수익률(IRR), 손익분기점을 산출하고, 할인율 등 그 구체적인 산정 근거 명시

□ 추정재무제표(양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5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6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7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8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19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요약 재무상태표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요약 손익계산서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매출원가						
	방송프로그램비용						
	기타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기타 판관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재무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 엑셀 파일 별도 제출

2 조직 및 인력 운영실적 및 계획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o 조직 및 인력 운영실적, 교육훈련 실적 등을 중심으로 적성하며, '고용현황', '직원 교육투자 현황', '직원 교육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고용 현황(양식)

< 개요 >

구분	방송개시 시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정규직										
계약직										
계										

※ 자회사가 있는 경우 필요시 별도 작성

< 직급별 인력 고용 현황 >

구분		임원	정규직						계약직						합계
								소계						소계	
인원	정원														
	현원														
인건비총액															
인건비평균															

※ 각 사업자별 내부 직급체계에 맞게 구분하여 작성하되, 인건비는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상의 연간급여총액(재무제표와 다를 수 있음) 기준

※ 정원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말 것

< 부문별 인력구성 현황 >

(단위 : 명)

구분	임원	방송직						관리 행정	연구직	광고 영업 홍보	기타	소계
		기자	PD	아나 운서	방송 기술	기타 방송	소계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소계												

※ 내부 조직도(2014.4.30. 기준)

조직도

※ 사업자별 내부 조직도를 작성

□ 직원 교육 투자 현황(양식)

(단위 : 백만원)

연도 / 유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국내전문교육			%			%			%				
국내교양교육													
해외교육													
기 타													
합 계													

□ 직원 교육실적 세부내역(양식)

(단위 : 백만원)

기간	교육유형	교육내용	방법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
				(%)
				(%)
				(%)

※ 교육유형은「국내전문교육, 국내교양교육, 해외교육, 기타」, 방법은「위탁, 강사초빙, 견학, 연수」등으로 구분

2.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o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교육훈련 계획 등을 중심으로 적성하며, '향후 인력 수급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향후 인력 수급계획(양식)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정규직	신규							
	경력	자체						
		외부						
계약직								
계								

※ 자회사가 있는 경우 필요시 별도 작성

3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o 경영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관련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향후 5년간 계획

o 경영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

1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계획

1. 방송산업 발전 기여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현황'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o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 o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계획의 이행실적
- o 방송인력 양성계획의 이행실적

□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연구개발 총투자			%			%			%				

□ 연구개발 투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기간	연구분야	연구내용	방법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
				(%)
				(%)
				(%)
합 계				(%)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o 방송발전 기여 계획
- o 방송장비 산업기여 및 연구개발(R&D) 계획
- o 방송인력 양성계획

2.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o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향후 5년간 계획

o 향후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3. 콘텐츠 산업 육성·기여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o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 이행실적
o 콘텐츠 산업 관련 사회환원 이행실적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o 콘텐츠 산업 육성 관련 향후 계획
o 콘텐츠 산업 관련 사회환원 관련 향후 계획

6. 지역사회 발전기여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

1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기여도

가. 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기여실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o 신청법인의 사회적 기여 관련 이행실적
- o 신청법인의 문화보존 및 발전 등에 대한 이행실적
- o 신청법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이행실적
- o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발전 관련 기여실적

□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기여실적(양식)

연도	일자[1]	지역[2]	유형[3]	주관 또는 주최 단체	참여 내용	금액(백만원)[4]	비고
2011년							
소계							
2012년							
소계							
2013년							
소계							
2014년							
소계							
합계							

※ ①지역적 ②사회적 ③문화적 기여실적은 아래 양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

1) 동일 사업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00.00.00 외 0건(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 등)
2) 시 · 도(서울특별시는 제외) 단위로 구분하여 기재
3) 기부, 후원, 협찬,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4) 관련 입증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공란 처리

□ 지역사회 발전 관련 프로그램 제작 실적(양식)

< 개요 >

(단위 : 분,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		%		%		

< 세부내역 >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 <세부내역>의 방송시간 합과 <개요>의 방송시간은 동일해야 함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o 신청법인의 사회적 기여 관련 계획
o 신청법인의 문화보존 및 발전 관련 계획
o 신청법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계획
o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발전 관련 계획

7.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1 승인시 부여한 준수사항 이행

o 아래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에 대한 증빙 자료를 부속서류로 제출

가. 방송법 준수(위반사례 기술)

o

나. 주요주주 지분 승인장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 금지(상속·판결 등 방통위가 예외로 인정하여 주요주주 지분 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내역도 기재)

o

다. 보도PP 폐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연금 납부(납부했을 경우 납부 일자 명기)

o

라. 승인 의결일(2011년 5월 6일) 이후 1년 이내 방송 개시(방송 일시 명기)

o

마. 사업계획서 성실이행 및 주요 내용 변경시 방통위 승인 취득

o

바. 사업계획 주요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매년 1월말까지)

o

사. 사업계획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영감시기구, 경영진 구성, 조직 및 인력 구성하며,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o

아. 방송프로그램을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편성해야 하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 10% 이상 편성
(매년 1월말까지 이행실적 제출)

o

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청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특히, 채널명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 계획에 대해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전 방통위 승인 취득

o

차. 방통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 시,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

o

8. 행정처분 현황

※ ‘14.4.30일 기준으로 작성 후 필요시 재승인 심사위원회 개최까지 보완
※ 시정명령(불이행), 심의제재, 행정처분 등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상세내용을 적시할 것

1 시정명령(불이행) 현황

□ 시정명령(불이행) 현황('11.12.1～'14.4.30)

행정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비 고
시정명령				*불이행*	
과징금					*시정명령 불이행*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시정명령(불이행), 처분·위반일자('yy.mm.dd), 위반법령(조, 항),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을 작성

2 심의제재 현황

□ 심의제재 현황('11.12.1～'14.4.30)

프로그램명	제재조치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 고
	주의, 경고 등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0조제0항*		

※ 처분일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위반일자는 해당 프로그램 방송일(초방)

3 기타 행정처분 현황

□ 시정명령 및 심의제재 이외 행정처분 현황('11.12.1～'14.4.30)

행정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비 고
과태료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시정명령, 심의제재 이외 행정처분명(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위반일자('yy.mm.dd), 위반법령(조, 항),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을 작성

4 공정거래법 등 타법 위반 현황

□ 공정거래법 등 타법 위반사례('11.12.1～'14.4.30)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행정처분 또는 벌칙 내역

※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및 소속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및 기타 법률 위반사례

※ (예시) 법인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소속 임직원이 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5 최대주주의 법령위반 현황

□ 신청법인 최대주주의 방송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례('11.12.1 ~'14.4.30)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행정처분 또는 벌칙 내역

※ 신청법인 최대주주 및 소속 임·직원의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법령 위반사례

※ (예시) 법인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소속 임직원이 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9. 기타 제출사항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1 시청자 의견청취 관련 공표 자료

□ 시청자 의견 청취용 요약문(양식)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 대표자 편성책임자 등 명시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제3장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 실적 및 계획	
제4장.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제5장.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제6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계획	
제7장.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	

※ 3페이지 이내로 작성

2 특수관계자 확인서[주요주주]

특수관계자 확인서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이 확인서는 주식회사 oooo가 2014년 0월로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데 따른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의 준수 확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인(법인)은 주식회사oooo 주주(첨부1)가운데 본인과 방송법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자비중		본인(법인)과의 특수관계자 여부
			주식수 (주)	지분율 (%)	
본 법인명					본 법인
총 계					

또한, 본인은 2011년 12월 1월부터 2014년 4월30일 기간 동안 주식회사oooo 주주(첨부1) 중 본인(법인)과 채무보증 관계에 있던 자의 명단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단위 : 백만원)

연월일(보증기간)	보증인	피보증인	보증내용	보증금액	비 고

2014년 5월 일

주 주 명 :

대표자명 : (인)

첨부 : 1. 주주현황(2013.12.31 기준) 1부

2. 인감증명서 1부

< 참고 > : 특수관계자 관련 법령 (방송법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함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9.17, 2006.3.10, 2010.1.26>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의 경우에 한하여 제1항제1호 나목·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3.10, 2008.2.29>

1.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2.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④ 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2008.2.29>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과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경우

⑤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제4조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53조제2항, 제58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9.17, 2006.3.10, 2008.2.22, 2010.1.26>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예외) 영 제3조제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2.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호에 따른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4.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단독으로 또는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개인
5.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및 그 대표자
6.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의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첨부1)

□ 주주현황 (2013.12.31 기준)

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자비중	
			주식수(주)	지분율(%)
총계				100%

(첨부2) 인감증명서 1부

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현황

1. 대표자 변경 현황('11.12.1～'14.4.30)

성명	재 직 기 간	주요약력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대표이사가 2인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2. 편성책임자 변경현황('11.12.1～'14.4.30)

성명	재 직 기 간	주요약력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현황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위원회 신고일자를 기재

3. 재승인 신청서 제출일 현재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자성명 및 관계	비고
성 명 (대표자)		등록기준지			
		현주소			
성 명 (편성책임자)		등록기준지			
		현주소			

※ 재승인 신청서 제출일 현재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제출

4. 편성책임자 공표 현황

편성책임자	공표방법	공표일시	횟수(회)

4 협찬 운영 현황('11.12.1～'14.4.30)

1. 협찬 운영 방향

2. 협찬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프로그램 제작 협찬	(%)	(%)	(%)	(%)
캠페인 협찬	(%)	(%)	(%)	(%)
행사 협찬	(%)	(%)	(%)	(%)
시상품 협찬	(%)	(%)	(%)	(%)
기타 협찬	(%)	(%)	(%)	(%)
협찬수입 총계	(%)	(%)	(%)	(%)
전체매출액	(100%)	(100%)	(100%)	(100%)

5 방송사업 관련 각종 소송 및 분쟁 현황('11.12.1～'14.4.30)

1. 개요

2. 주요 내용

6 관계회사 현황

□ **관계회사 현황**(2014.4.30. 기준)

(단위 : 천원)

법인명	관계[1)]	주요사업	지분율 (%)	콘텐츠 등 거래금액				비고
				'11년	'12년	'13년	'14년	

1) 신청 법인 기준으로 지배회사는 '지배', 종속회사는 '종속' 동일 지배하의 다른 종속회사는 '계열'로 표기

7 특수관계자 방송사 및 다른 방송사업자 지분 소유 현황

1. 특수관계자 방송사 현황(2014.4.30. 기준)

특수관계자명	승인·승인 또는 등록된 방송국(채널명)	유형	특수관계내용	관련 법령
		PP	*계열회사*	*방송법시행령 3조1항0목0호*
			30% 출자	
			30% 출자	
			계열회사	
			계열회사	

2. 다른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 현황(2014.4.30. 기준)

지분 소유 방송사업자명	승인·승인 또는 등록된 방송사업자명(채널명)	유형	출자금액 (단위:천원)	지분율 (%)
		지상파		

8 각종 수상 실적

순번	수상년월일	수상자(소속)	프로그램명	수상제목	수여기관	수상내용	비고

Ⅴ. 승인장 사본

Ⅵ. 주간기본편성표

o 재승인 대상이 되는 방송사업자의 주간기본편성표 제출

o 2014년 4월 30일 기준, A4 용지 규격

재승인신청서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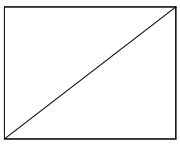

부속서류

원 본

2014. 5.

로고 ㈜○○방송

원본임이 틀림없음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목 차

1. 법인등기부 등본 ·····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3. 편성규약 전문 ·····

4. 자체심의 실적 ·····

5. 자체심의 규정 ·····

6. 재무상태표(2011,2012,2013년) ·····

7. 손익계산서(2011,2012,2013년) ·····

8. 기타 ·····

별도 제출 자료

1. 2011년, 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신청법인 및 최대주주) 각 2부

2. 재무제표 및 추정재무제표 엑셀파일
 -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내역 포함

3. 재무제표 관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엑셀파일

Ⅳ. 시청자 의견 청취

1.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문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39/42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의견 접수 대상

○ 2014년 하반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구분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유효기간 만료일
종합편성	㈜매일방송	MBN	조현재	2014년 11월 30일

2. 의견 접수 기간

○ 2014년 9월 1일(월) ~ 9월 30일(화)

3. 의견제출 내용

○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일방송(MBN)의 재승인 심사에 관한 의견(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등

※ 재승인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의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참고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 (427-700)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 '14.9.3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팩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channel@kcc.go.kr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성명·생년월일·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끝.

2. 시청자 의견청취용 사업계획서 요약문

종편PP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 (주)매일방송(MBN)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 대표자 - 성명 : 조현재(1958.1.21) - 주요경력 : 엠비엔미디어 대표이사 • 편성책임자 - 성명 : 류호길(1957.3.1) - 주요경력 : 매일방송 기획실장 • 자본금 : 2,796.5억원 • 주주 구성 -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 등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 최초 승인 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실적 - MBN포럼·세계지식포럼 등을 개최하며 국가 어젠다 제시를 통한 국가 발전에 기여 - 지역 밀착형, 시청자 참여형 프로그램 등 방송 프로그램의 절반(2013년 47.9%) 정도를 공익적 프로그램으로 편성 - 수화·자막·화면해설 방송을 통해 장애인 시청권 확대 - 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사실확인시스템· 사후심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동시에 공정방송위원회 운영으로 검증 - 선거방송 준칙 제정과 선거기획단 등의 운영을 통해 공정한 선거방송 구현 노력 -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 시 적극적인 재난방송 편성 - 정기적인 방송언어 순화 교육 실시와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책자 제작, 바른말 지킴이상 제정, 전문 교열기자 채용을 통해 방송언어 순화에 노력 - 소수 시청자그룹 지원을 위해 시청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전체 방송의 20%를 소수 시청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편성 - 시청자위원회·시청자평가원·자문위원단 운영을 통해 시청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 - 시청자 상담팀·자체심의기구·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심의 관련 임직원 교육을 강화해 시청자 불만에 적극 대응 • 향후 5년간 계획 -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 중심>, <가문의 요리> 등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끄는 프로그램 적극 발굴 - 시사·보도 프로그램 또는 특보 방송 시 출연자 사전 검증 강화 - 시청자 모니터링팀(가칭 '와칭 MBN') 신설해 MBN 프로그램에 대한 입체적인 모니터링 실시 - 방송프로그램의 60% 이상을 공익적 프로그램으로 편성

	- <소.나.무.(소중한 나눔 무한행복)> 등 소외된 이웃을 실질적으로 후원하는 프로젝트 기획·편성 - 시청자위원회를 인적·지역적으로 다양하게 구성 - 자체심의 규정 상습 위반 프로그램 퇴출제 도입 - 시청자 전화 응답 시간 확대·콜센터 상담원 교육 등을 통해 시청자 중심 불만처리 제도 확립
제3장.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 실적 및 계획	• 최초 승인 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실적 - 보도 35%/교양 30%/오락 35% 편성 원칙을 실현해 균형 잡힌 편성 달성 - Smart Joy·Vision Korea·One Asia 등 3대 편성 키워드별 맞춤형 편성 - <고수의 비법 황금알>, <동치미> 등 인포테인먼트 장르 개척과 대외적 포맷 인증 - 본방송/재방송 경계를 허문 순환 편성 정착 - 편성위원회 운영으로 사적 이익을 위한 방송편성의 공정성 훼손을 사전에 방지 -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보도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100% 자체제작 원칙 - 프로그램 선정위원회 운영·제작비 선지급 등을 통해 방송 제작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 미국 전역 등 해외 2,000만 가시청 가구 확보 • 향후 5년간 계획 - 드라마 <천국의 눈물> 등 30~40대 시청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 적극 편성 - <시청자 뉴스> 등 시청자 참여형 보도 프로그램 개발 - 유익한 재미를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 편성 확대 -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제4장.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 재정적 능력 • 최초 승인 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실적 - 차입 최소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실현 • 향후 5년간 계획 - 지속적인 시청률 상승·매출액 증가를 통해 2016년 BEP달성 목표 - 부채비율 10% 미만의 재무건전성 유지 2. 기술적 능력 • 최초 승인 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실적 - 다채널 송출시스템 등 고품질 방송시스템 구축 - 장애인용 자막송출 장비 등 공익적 프로그램 구현 능력 완비 • 향후 5년간 계획 - 경기도 고양 삼송 MBN 제작센터 설치(2016년) - 실감형 가상스튜디오 시스템 구축 - 장르별 NPS 기반의 워크플로를 통한 편집기술 확보 - 방송·신문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2015~2016년)

Ⅴ. 재승인 심사

1.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

분 야	성 명	현 직	추천인
심사위원장	오 택 섭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	-
방송(3인)	최 세 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방통위원
	이 종 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방통위원
	정 연 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방통위원
법률(3인)	이 태 원	법무법인 목성 변호사	외부기관
	임 철 승	법무법인 정상 변호사	외부기관
	오 태 원	경일대 경찰학과 교수	방통위원
경영·회계 (3인)	전 진 근	열린공인회계사 감사반	외부기관
	김 익 찬	삼정회계법인 이사	방통위원
	박 인 배	성신회계법인 이사	방통위원
기술(2인)	최 동 준	ETRI 케이블방송연구실 실장	외부기관
	한 동 석	경북대 전자공학부 교수	외부기관
시청자·소비자 (3인)	조 태 임	(사)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외부기관
	김 경 의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및 성남지부 대표	외부기관
	윤 정 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방통위원

2. 세부 심사기준

20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세부심사기준

2014. 11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1 개 요

□ 심사기준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세부심사항목(소분류)으로 분류되며,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서는 심사사항, 심사항목과 배점만 제시

o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그에 따른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

2 세부평가 방법

□ **(기본원칙)**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14인) 각각이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o 세부평가 시 시정명령, 법령위반 등 이미 방송평가에 반영된 행정처분 사항은 제외하여 계량항목과의 중복을 최소화

□ **(평가유형)**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o 계량평가 : 방송평가, 재정적 능력, 법령위반사례 및 시정명령 위반사례 등의 심사항목에 대해 정량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

o 비계량평가 : 계량평가를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판단하여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뒤 등급 구간 내에서 적절한 점수로 환산하여 평점을 부여

구 분	등 급	내 용	평점 환산비율(%)
1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80% 이상 100% 이하
2	우	우 수	해당 배점의 60% 이상 80% 미만
3	미	보 통	해당 배점의 40% 이상 60% 미만
4	양	미 흡	해당 배점의 20% 이상 40% 미만
5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0% 이상 20% 미만

□ **(점수계산)** 재승인 대상 사업자의 최종 점수는 세부심사항목별 계량평가 점수와 비계량평가 점수의 합으로 구함

o 계량평가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량적 방법으로 산출한 점수를 부여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함

o 비계량평가는 세부심사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점수의 평균으로 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함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재승인여부 결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o 다만,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일부 심사사항이 특정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본계획에서 정한 재승인 여부 결정방안 >

총점	심사사항 점수	재승인 여부
650점 이상	심사사항 중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①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②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재승인 / 조건부 재승인 / 재승인 거부
	상기 두개 심사사항을 제외한 개별 심사사항(대분류)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재승인 / 조건부 재승인
650점 미만	·	조건부 재승인 / 재승인 거부

3 세부항목별 심사

【 세부심사항목 구성 】

□ (구성) 각 심사항목을 과거실적과 미래계획 간 균형있게 심사평가하기 위해 실적과 계획으로 구분하여 세부심사항목 구성

< 세부심사항목 구성 예시 >

심사항목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세부심사항목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o 일부 심사항목*은 실적과 계획을 구분하지 않고 과거실적만 반영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신청법인의 적정성, 승인시 부여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재정적 능력

【 세부심사항목 배점 】

□ (배점비중) 방송평가, 신청법인의 적정성, 재정적 능력과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서 과거실적만 평가하므로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실적, 계획의 비중을 1 : 2로 부여

* 과거실적만 평가하는 4개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면 505점

o 합계 총점 중 실적과 계획의 배점은 각각 675점, 325점이 되도록 구성

※ 2013년도 지상파 재허가 심사의 배점도 실적 675점, 계획 325점임

< 심사항목에 따른 실적, 계획 배점(안) >

심사항목	배점	
	실적	계획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	-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45	95
시청자 권익보호	25	45
신청법인의 적정성	20	-
기획·편성의 적절성	25	45
수급의 적절성	20	30
제작·협력의 적절성	15	25
재정적 능력	65	-
기술적 능력	5	10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전략	10	20
조직·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	10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	1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10	20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	5	15
승인시 부여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70	-
합 계	**675**	**325**

4 주요 심사항목의 평가방법

【 신청법인의 적정성 】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신청법인의 적정성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 및 건전성	20	비계량

o **(대상법인)**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신청법인 및 최대주주로 결정

o **(평가방법)**

-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사업추진의지

-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 최대주주의 재정적 능력

※ 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은 심사항목 「재정적 능력」에서 평가

- 최대주주의 방송·통신, 신문·뉴스통신, 콘텐츠·저작권, 노무, 공정거래, 금융, 조세 및 중소기업 분야 등에 있어 법위반 사항

※ 신청법인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은 심사항목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에서, 기타 위반 사항은 심사항목 「관련법령 위반사례」에서 반영하여 심사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	계량

o 방송평가 점수는 승인 유효기간('11년, '12년 '13년) 중 '12년도 방송평가 점수만 있으므로 이를 반영

- MBN의 '12년도 방송평가 점수(700점 만점)는 554.21점

o 방송평가 점수 700점을 심사 시 350점으로 반영하여야 하므로 MBN의 방송평가 점수를 50%로 환산하면 277.11점(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 관련법령 위반사례 】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관련 법령 위반사례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감점	계량

o **(적용대상 및 기간)** '11.12월 ~ '14.8월까지 재승인 신청법인의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최대주주의 법위반 사항은 신청법인의 적정성 항목에서 심사

o **(관련법령 범위)**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 법무부 등 12개 기관과 관련한 방송, 상사 및 공정거래 분야 등에 대한 법 위반사항

- 다만, 동일사안이 중복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방송평가에 이미 반영된 행정처분은 제외

o **(참조기준)** 방송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방송평가를 참조하고 그 외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기준을 참조

법령위반	기준점수
방송법 위반	· **과태료** : -4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 10점, 5천만원 초과 - 15점 · **심의제재** : 주의 - 1점, 경고 - 2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1건 당 각 -4점, 병과시 - 6점
공정거래법 위반	· **시정명령** : -6점, · **과태료** : -9점, · **과징금** : -12점
그 외 법령 위반	· **과태료** : -2점, · **시정명령** : -4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 5점, 5천만원 초과 - 7.5점

o **(감점기준)** 실제평가 시에는 방송평가 점수가 반영된 비율(350/700)을 고려하여 방송평가 기준점수의 50%로 환산하여 반영

법령위반	행정처분		감점점수
방송법 위반	과태료		-2점
	과징금	5천만원 이하	-5점
		5천만원 초과	-7.5점
	심의제재	주의	-0.5점
		경고	-1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1건당 각 -2점, 병과시 -3점
공정거래법 위반	시정명령		-3점
	과태료		-4.5점
	과징금		-6점
그 외 법령 위반	과태료		-1점
	과징금	5천만원 이하	-2.5점
		5천만원 초과	-3.75점
	시정명령		-2점

o **(소송중인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여부)** 방송평가 및 지상파재허가 심사와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확정된 행정처분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안정된 심사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송중인 행정처분에 대해 감점유예

- **(법령위반 및 소송현황)** '13.1월 ~ '14.8월까지 MBN의 법령위반 건수는 26건(시정명령 등 포함)이며, 이 중 소송중인 경우는 1건임

※ '11년 법령위반 건수는 없으며 '12년 법령위반 건수는 방송평가에 이미 반영됨

※ 소송현황 : 과징금 1건

【 재정적 능력 】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	재정적 능력 (65)	부채비율	25	계량
		자기자본순이익율	20	계량
		총자산증가율	20	계량

o **(세부심사항목)** 지상파 재허가와 방송평가 등에서 심사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의 주요지표 중 대표적 지표인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과 총자산증가율을 세부심사항목으로 마련

※ '10년 및 '14년 종편·보도PP (재)승인심사 시 재정적 능력 평가지표와 동일

o **(대상기간)** 신청법인의 최근 3년간의 재무현황을 대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11년도의 경우 주로 사업 준비기간으로서 수익 관련 항목이 단기(1달 이내)인 점을 고려하여 제외함

o **(평가방법)**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여 지표별 전 산업 평균(m), 표준편차(a)와 대상회사의 지표값(A)을 비교

※ 전 산업 평균(m), 표준편차(a) 계산시 특정 업종의 과대평가 방지를 위해 업체수를 가중치로 계산(방송평가 시 적용)

o **(최저점 설정)** 신생매체로서의 특수성과 지상파재허가 심사와의 형평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최저점을 30%로 부여

※ 종편·보도PP 승인심사, IPTV 허가·재허가 심사 시에는 신생매체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저점수를 40%로 부여한 반면, 지상파 재허가 심사, 방송평가 시에는 최저점수를 20%로 부여

세부심사항목	지표값(A) 범위별 취득점수		
	A<m-2a	m-2a≤A≤m+2a	A>m+2a
부채비율(25점)	25점	[0.65 + 0.7 x (m-A)/4a] x 배점	**7.5점**
자기자본순이익율(20점)	**6점**	[0.65 + 0.7 x (A-m)/4a] x 배점	20점
총자산증가율(20점)	**6점**		20점

【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계량

o **(적용 대상 및 기간)** '11.12월 ~ '14.8월까지 재승인 신청법인의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

o **(시정명령 범위)** 방송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하되, 중복성 배제를 위해 방송평가에 이미 반영된 시정명령('12년)은 제외

o **(참조기준)** 방송평가 시 적용한 감점기준을 참조

구분	기준점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 **시정명령** : -8점 · **시정명령 불이행**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 10점 5천만원 초과 - 15점

o **(감점기준)** 관련법령 위반사례에서와 동일하게 방송평가 점수의 50%로 환산하여 반영

행정처분		감점점수
시정명령		-4점
과징금	5천만원 이하	-5점
	5천만원 초과	-7.5점

< 붙임 1 >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350점)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350점)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350점)	·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점수를 350점으로 환산하여 계산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230점)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140점)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45점)	· 방송법 제5조(공적책임) 실현실적 · 방송서비스의 보편성 구현실적 ·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실적 ·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 관련 이행실적의 적정성 · 선거관련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 재난방송 편성실적 적정성 · 방송언어 순화실적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의 적정성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95점)	· 방송법 제5조(공적책임) 실현방안의 구체성 · 방송서비스의 보편성 구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방안의 구체성 ·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 관련 실현계획의 적정성 · 선거관련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 재난방송 실현계획의 적정성 · 방송언어 순화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공익적 프로그램 실현계획의 적정성 ·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의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의지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시청자 권익보호 (70점)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25점)	· 어린이 · 청소년 보호방안 관련 이행실적 · 장애인 지원방안 관련 이행실적 · 노약자 · 다문화가정 · 외국인 등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이행실적 · 시청자 의견 반영 등 시청자 참여 보장방안의 이행실적 ·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방송법 제87조)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실적 (방송법 제89조) · 시청자 불만처리 이행실적 · 자체심의기구 설치 · 운영 실적 (방송법 제86조)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45점)	· 어린이 · 청소년 보호방안 관련 이행계획의 적정성 · 장애인 지원방안 관련 이행계획 · 노약자 · 다문화가정 · 외국인 등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계획의 적정성 · 시청자 의견 반영 등 시청자 참여 보장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시청자위원회 운영계획의 적정성 (방송법 제87조)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계획의 적정성(방송법 제89조) · 시청자 불만처리 향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자체심의기구 설치 · 운영 계획의 구체성, 적정성(방송법 제86조)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신청법인의 적정성 (20점)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 및 건전성(20점)	· 신청법인, 최대주주의 사업추진의지 · 신청법인, 최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 최대주주의 재정적 능력 · 신문·뉴스통신, 콘텐츠·저작권, 노무, 공정거래, 금융, 조세, 중소기업 분야 등에 대한 최대주주의 법위반 사항(시정명령 포함)
	관련 법령 위반 사례 (감점)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감점)	· 신청법인이 위반한 법위반 건수를 대상으로 하되, 방송평가에 반영된 법위반 건수는 제외하고 평가함 · 감점기준(방송법 위반시) - 과태료 : -2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5점 5천만원 초과 -7.5점 - 심의제재 : 주의 -0.5점, 경고 -1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1건 당 각 -2점, 병과시 -3점 ※ 기타 법령 위반 시 방송법 위반 대비 50% 반영하며 시정 명령 감점기준은 -2점임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점)	기획, 편성의 적절성(70점)	기획, 편성 이행실적의 적절성 (25점)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방송분야, 장르별 편성 포함) 이행실적의 적절성 · 편성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 관련 이행실적(방송법 제4조)
		기획, 편성 실현계획의 적절성 (45점)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방송분야, 장르별 편성 포함) 향후 계획의 적절성 · 편성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 방안의 실현가능성(방송법 제4조)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수급의 적절성 (50점)	프로그램 수급 이행실적의 적절성(20점)	· 방송프로그램 수급(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이행실적의 적절성
		프로그램 수급 실현계획의 적절성(30점)	· 방송프로그램 수급(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계획의 적절성
	제작·협력의 적절성(40점)	제작·협력 이행실적의 적절성 (15점)	·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관련 이행실적 ·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관련 이행실적 · 신규 플랫폼 진출 실적 · 국내외 콘텐츠 유통 실적 ·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 협력 관련 이행실적
		제작·협력 실현계획의 적절성 (25점)	·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관련 향후계획 ·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관련 향후계획 · 신규 플랫폼 진출 계획 · 국내외 콘텐츠 유통 계획 ·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 협력 관련 향후계획
재정 및 기술적 능력(80점)	재정적 능력(65점)	부채비율(25점)	· 부채총액/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20점)	·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총자산증가율(20점)	· (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전기총자산
	기술적 능력(15점)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 실적의 적정성(5점)	· 연도별 제작, 송출 시설 등에 대한 투자실적의 적정성 · 국산장비 도입실적의 적정성 · 콘텐츠 제작, 후반작업 등 편집기술 확보 관련 이행실적의 적정성 ·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실적의 적정성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10점)	· 연도별 제작, 송출 시설 등에 대한 투자계획의 적정성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 국산장비 도입계획의 적정성 · 콘텐츠 제작, 후반작업 등 편집기술 확보 계획의 적정성 ·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점)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30점)	사업추진계획 이행실적의 적정성(10점)	· 채널확보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 전략의 이행실적 ·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 전략적 관계 구축 관련 이행실적 ·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 발전을 위한 투자실적
		사업추진계획 향후전략의 적정성(20점)	· 채널확보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전략의 향후계획의 적정성 ·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 전략적 관계 구축 관련 향후계획의 적정성 ·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 발전을 위한 향후 투자계획의 적정성 · 프로그램 제작, 방송시설 설치 등 연도별 자금운영 계획의 적정성 · 자금조달규모의 실현가능성 · 추정재무제표의 적정성 · 추정현금흐름을 기초로 한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조직,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점)	조직, 인력운영 이행실적의 적정성(5점)	· 조직 및 인력운영 실적 · 교육훈련 실적의 우수성
		조직, 인력운영 실현계획의 적정성(10점)	· 향후 인력 수급 계획의 적정성 · 교육훈련 계획의 우수성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15점)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 실적의 적정성(5점)	· 경영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관련 이행실적의 적정성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 계획의 적정성(10점)	· 경영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관련 향후계획의 적정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 여부 (3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3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의 적정성(10점)	· 방송장비산업 및 연구개발 이행실적의 적정성 · 방송인력 양성에 대한 이행실적 · 유료방송 시장활성화 기여 관련 이행실적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실적 · 콘텐츠 산업 관련 사회환원에 대한 이행실적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정성(20점)	· 방송장비산업 및 연구개발 계획의 적정성 · 방송인력 양성계획의 적정성 · 유료방송 시장활성화 기여계획의 적정성 ·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향후 계획의 적정성 · 콘텐츠 산업 관련 사회환원에 대한 향후계획의 적정성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20점)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기여도(20점)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기여실적의 타당성(5점)	· 신청법인의 사회적 기여 관련 이행실적 · 신청법인의 문화보존 및 발전 등에 대한 이행실적 · 신청법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이행실적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발전관련 기여실적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15점)	· 신청법인의 사회적 기여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 신청법인의 문화보존 및 발전 등에 대한 이행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 신청법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이행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발전관련 이행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70점)	승인시 부여한 준수사항 이행여부(70점)	승인조건 이행실적의 적정성(70점)	· 승인 당시 부과한 조건 이행의 적정성 - 방송법 준수여부 -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 주요주주의 지분 처분 여부 - 승인장 교부 후 3개월 이내 출연금 납부 여부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평가방법
			- 승인장 교부 후 1년 이내 방송 개시 여부 - 사업계획서 성실이행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승인 취득여부 - 사업계획 주요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여부 - 경영감시기구, 경영진, 조직·인력 구성에 대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 -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에 대한 자료제출 등 필요사항 협조여부 - 국내제작 전체방송시간의 65% 이상, 외주제작 전체 방송시간의 35%,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 편성 여부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감점)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감점)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감점)	· 신청법인이 부여받은 시정명령 건수를 대상으로 하되, 방송평가에 반영된 시정명령은 제외 · 시정명령은 방송법 위반에 한정 · 감점기준 - 시정명령 : -4점 - 과징금 : 5천만원 이하 -5점 5천만원 초과 -7.5점 - 유효기간단축, 업무정지 및 광고중단 : -10점

3. 심사평가 결과

2014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세부심사항목별 심사결과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점수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	**계량**	**277.11**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30**		**141.94**
2-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실적 및 계획)	**140**	**비계량**	**95.68**
2-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45	비계량	30.55
2-1-2.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95	비계량	65.13
2-2. 시청자 권익보호(실적 및 계획)	**70**	**비계량**	**48.77**
2-2-1.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	25	비계량	16.33
2-2-2.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	45	비계량	32.44
2-3. 신청법인의 적정성	**20**	**비계량**	**15.49**
2-3-1.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 및 건정성	20	비계량	15.49
2-4. 관련법령 위반 사례	**감점**	**계량**	**-18.00**
2-4-1.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감점	계량	-18.0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	**비계량**	**110.57**
3-1. 기획·편성의 적절성(실적 및 계획)	**70**	**비계량**	**45.92**
3-1-1. 기획·편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25	비계량	14.65
3-1-2. 기획·편성 실현계획의 적절성	45	비계량	31.27
3-2. 수급의 적절성(실적 및 계획)	**50**	**비계량**	**35.19**
3-2-1. 프로그램 수급 이행실적의 적절성	20	비계량	13.47
3-2-2. 프로그램 수급 실현계획의 적절성	30	비계량	21.72
3-3. 제작·협력의 적절성(실적 및 계획)	**40**	**비계량**	**29.46**
3-3-1. 제작·협력 이행실적의 적절성	15	비계량	10.86
3-3-2. 제작·협력 실현계획의 적절성	25	비계량	18.60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		**47.43**
4-1. 재정적 능력	**65**	**계량**	**37.00**
4-1-1. 부채비율	25	계량	25.00
4-1-2. 자기자본순이익율	20	계량	6.00
4-1-3. 총자산증가율	20	계량	6.00
4-2. 기술적 능력	**15**	**비계량**	**10.43**
4-2-1.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 실적의 적정성	5	비계량	3.13
4-2-2.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 계획의 적정성	10	비계량	7.30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	**비계량**	**44.61**
5-1.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30**	**비계량**	**21.46**
5-1-1. 사업추진계획 이행실적의 적정성	10	비계량	6.90
5-1-2. 사업추진계획 향후전략의 적정성	20	비계량	14.56
5-2. 조직·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비계량**	**11.28**
5-2-1. 조직·인력운영 이행실적의 적정성	5	비계량	3.68
5-2-2. 조직·인력운영 실현계획의 적정성	10	비계량	7.60
5-3.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비계량**	**11.87**
5-3-1.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의 적정성	5	비계량	3.72
5-3-2.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10	비계량	8.15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	**비계량**	**20.66**
6-1.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30**	**비계량**	**20.66**
6-1-1.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의 적정성	10	비계량	6.60
6-1-2.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정성	20	비계량	14.06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0**	**비계량**	**14.42**
7-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	**20**	**비계량**	**14.42**
7-1-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의 타당성	5	비계량	3.38
7-1-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15	비계량	11.04
8. 승인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	**비계량**	**51.69**
9.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계량**	**-4.00**
합 계	1,000		**704.43**

■ ㈜매일방송(MBN)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평 점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	**계량**	**277.11**	**277.11**	**277.11**	**277.11**	**277.11**	**277.11**	**277.11**	**277.11**	**277.11**	**277.11**	**277.11**	**277.11**	**277.11**	**277.11**	**277.11**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30**		**128.00**	**141.00**	**144.60**	**139.00**	**154.05**	**142.00**	**157.50**	**36.00**	**149.88**	**149.50**	**169.00**	**150.70**	**139.50**	**114.00**	**141.94**
2-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실적 및 계획)	**140**	**비계량**	**86.00**	**96.00**	**98.00**	**95.00**	**100.30**	**96.00**	**107.50**	**29.00**	**103.20**	**102.00**	**105.00**	**101.60**	**92.00**	**77.00**	**95.68**
2-1-1.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	45	비계량	25.00	32.00	31.50	30.00	33.80	26.00	31.50	10.00	31.95	34.00	33.75	35.10	35.50	22.00	30.55
2-1-2.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	95	비계량	61.00	64.00	66.50	65.00	66.50	70.00	76.00	19.00	71.25	68.00	71.25	66.50	56.50	55.00	65.13
2-2. 시청자 권익보호(실적 및 계획)	**70**	**비계량**	**45.00**	**48.00**	**49.00**	**48.00**	**53.75**	**49.00**	**52.00**	**14.00**	**50.33**	**50.50**	**64.00**	**52.70**	**50.00**	**37.00**	**48.77**
2-2-1.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	25	비계량	14.00	17.00	17.50	16.00	20.00	16.00	16.00	5.00	17.25	16.50	23.50	16.25	17.50	12.00	16.33
2-2-2.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	45	비계량	31.00	31.00	31.50	32.00	33.75	33.00	36.00	9.00	33.08	34.00	40.50	36.45	32.50	25.00	32.44
2-3. 신청법인의 적정성	**20**	**비계량**	**15.00**	**15.00**	**15.60**	**14.00**	**18.00**	**15.00**	**16.00**	**11.00**	**14.35**	**15.00**	**18.00**	**14.40**	**15.50**	**18.00**	**15.49**
2-3-1.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 및 건전성	20	비계량	15.00	15.00	15.60	14.00	18.00	15.00	16.00	11.00	14.35	15.00	18.00	14.40	15.50	18.00	15.49
2-4. 관련법령 위반 사례	**감점**	**감점**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2-4-1.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	감점	계량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		**102.50**	**109.00**	**111.50**	**120.00**	**106.75**	**110.00**	**118.50**	**52.00**	**113.65**	**116.50**	**113.50**	**114.10**	**110.00**	**108.99**	**110.57**
3-1. 기획·편성의 적절성(실적 및 계획)	**25**	**비계량**	**40.50**	**43.00**	**49.00**	**50.00**	**45.25**	**49.00**	**51.50**	**17.00**	**46.60**	**46.50**	**47.75**	**50.65**	**45.00**	**40.00**	**45.92**
3-1-1. 기획·편성 이행실적의 적절성	25	비계량	12.50	13.00	17.50	16.00	13.75	14.00	16.00	7.00	13.75	14.50	16.25	18.25	14.50	14.00	14.65
3-1-2. 기획·편성 실현계획의 적절성	45	비계량	28.00	30.00	31.50	34.00	31.50	35.00	35.50	10.00	32.85	32.00	31.50	32.40	30.50	26.00	31.27
3-2. 수급의 적절성(실적 및 계획)	**50**	**비계량**	**35.00**	**36.00**	**32.50**	**37.00**	**33.50**	**31.00**	**37.00**	**18.00**	**36.60**	**37.00**	**37.00**	**34.80**	**36.00**	**38.00**	**35.19**
3-2-1. 프로그램 수급 이행실적의 적절성	20	비계량	13.00	13.00	13.00	14.00	11.00	11.00	14.00	7.00	14.10	14.00	16.00	16.20	13.50	15.00	13.47
3-2-2. 프로그램 수급 실현계획의 적절성	30	비계량	22.00	23.00	19.50	23.00	22.50	20.00	23.00	11.00	22.50	23.00	21.00	18.60	22.50	23.00	21.72
3-3. 제작·협력의 적절성(실적 및 계획)	**40**	**비계량**	**27.00**	**30.00**	**30.00**	**33.00**	**28.00**	**30.00**	**30.00**	**17.00**	**30.45**	**33.00**	**28.75**	**28.65**	**29.00**	**30.99**	**29.46**
3-3-1. 제작·협력 이행실적의 적절성	15	비계량	10.00	11.00	11.25	12.00	10.50	11.00	11.00	7.00	10.95	12.00	14.25	9.15	9.50	11.99	10.86
3-3-2. 제작·협력 실현계획의 적절성	25	비계량	17.00	19.00	18.75	21.00	17.50	19.00	19.00	10.00	19.50	21.00	14.50	19.50	19.50	19.00	18.60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		**47.00**	**48.00**	**48.25**	**48.50**	**47.00**	**46.00**	**47.50**	**42.00**	**48.65**	**48.30**	**44.50**	**48.40**	**47.00**	**51.00**	**47.43**
4-1. 재정적 능력	**65**	**계량**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4-1-1. 부채비율	25	계량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4-1-2. 자기자본순이익율	20	계량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4-1-3. 총자산증가율	20	계량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4-2. 기술적 능력	**15**	**비계량**	**10.00**	**11.00**	**11.25**	**11.50**	**10.00**	**9.00**	**10.50**	**5.00**	**11.65**	**11.30**	**7.50**	**11.40**	**10.00**	**14.00**	**10.43**
4-2-1.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 실적의 적정성	5	비계량	3.00	3.50	3.75	3.50	2.50	2.00	3.00	1.00	3.60	3.80	2.50	3.90	2.50	5.00	3.13
4-2-2.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 계획의 적정성	10	비계량	7.00	7.50	7.50	8.00	7.50	7.00	7.50	4.00	8.05	7.50	5.00	7.50	7.50	9.00	7.30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평 점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		**42.50**	**46.10**	**39.75**	**47.00**	**47.00**	**44.80**	**42.50**	**28.00**	**45.30**	**47.50**	**46.00**	**46.90**	**46.00**	**46.97**	**44.61**
5-1.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30**	**비계량**	**20.00**	**23.00**	**19.50**	**24.00**	**20.00**	**20.00**	**21.00**	**14.00**	**22.25**	**23.00**	**19.50**	**24.40**	**24.00**	**22.99**	**21.46**
5-1-1. 사업추진계획 이행실적의 적정성	10	비계량	6.00	8.00	6.50	8.00	7.00	5.00	6.00	4.00	6.50	7.50	9.50	7.80	7.50	7.00	6.90
5-1-2. 사업추진계획 향후전략의 적정성	20	비계량	14.00	15.00	13.00	16.00	13.00	15.00	15.00	10.00	15.75	15.50	10.00	16.60	16.50	15.99	14.56
5-2. 조직·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비계량**	**11.50**	**11.80**	**9.75**	**11.50**	**13.50**	**12.00**	**9.00**	**7.00**	**10.65**	**11.70**	**13.00**	**11.40**	**11.00**	**11.99**	**11.28**
5-2-1. 조직·인력운영 이행실적의 적정성	5	비계량	3.50	4.00	3.25	3.50	4.50	4.50	3.00	2.00	3.10	3.90	4.00	3.90	3.50	4.00	3.68
5-2-2. 조직·인력운영 실현계획의 적정성	10	비계량	8.00	7.80	6.50	8.00	9.00	7.50	6.00	5.00	7.55	7.80	9.00	7.50	7.50	7.99	7.60
5-3.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	**비계량**	**11.00**	**11.30**	**10.50**	**11.50**	**13.50**	**12.80**	**12.50**	**7.00**	**12.40**	**12.80**	**13.50**	**11.10**	**11.00**	**11.99**	**11.87**
5-3-1.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의 적정성	5	비계량	3.50	3.50	3.50	3.50	4.50	3.80	3.50	2.00	3.85	3.90	4.50	3.60	3.50	3.99	3.72
5-3-2.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10	비계량	7.50	7.80	7.00	8.00	9.00	9.00	9.00	5.00	8.55	8.90	9.00	7.50	7.50	8.00	8.15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		**21.00**	**22.20**	**21.00**	**22.00**	**21.00**	**16.00**	**21.00**	**14.00**	**22.80**	**22.60**	**21.50**	**22.10**	**22.00**	**15.00**	**20.66**
6-1.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30**	**비계량**	**21.00**	**22.20**	**21.00**	**22.00**	**21.00**	**16.00**	**21.00**	**14.00**	**22.80**	**22.60**	**21.50**	**22.10**	**22.00**	**15.00**	**20.66**
6-1-1.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의 적정성	10	비계량	7.00	7.20	7.00	7.00	7.00	5.00	6.00	3.00	7.00	7.40	7.50	7.10	6.50	5.00	6.60
6-1-2.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정성	20	비계량	14.00	15.00	14.00	15.00	14.00	11.00	15.00	11.00	15.80	15.20	14.00	15.00	15.50	10.00	14.06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0**		**13.50**	**14.60**	**14.00**	**15.50**	**17.50**	**13.50**	**12.00**	**4.00**	**15.35**	**18.00**	**18.00**	**15.05**	**15.50**	**8.50**	**14.42**
7-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	**20**	**비계량**	**13.50**	**14.60**	**14.00**	**15.50**	**17.50**	**13.50**	**12.00**	**4.00**	**15.35**	**18.00**	**18.00**	**15.05**	**15.50**	**8.50**	**14.42**
7-1-1.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의 타당성	5	비계량	3.00	3.60	3.50	3.50	4.50	2.50	3.00	1.00	3.65	4.50	4.50	3.80	3.50	1.50	3.38
7-1-2.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15	비계량	10.50	11.00	10.50	12.00	13.00	11.00	9.00	3.00	11.70	13.50	13.50	11.25	12.00	7.00	11.04
8. 승인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	**비계량**	**51.00**	**53.00**	**49.00**	**55.00**	**49.00**	**54.00**	**55.00**	**25.00**	**51.80**	**53.00**	**56.00**	**59.50**	**53.50**	**40.00**	**51.69**
9.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감점**	**계량**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합 계			**678.61**	**707.01**	**701.21**	**720.11**	**715.41**	**699.41**	**727.11**	**474.11**	**720.54**	**728.51**	**741.61**	**729.86**	**706.61**	**657.57**	**704.43**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14인)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심사위원은 無順임

4. 심사의견서

‘14년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 의견서

□ ㈜매일방송

< 지난 3년간 사업계획 이행실적 및 향후 5년간 계획 >

o 신청법인이 종편PP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나 향후 수익전망에서 시청률 ○%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함

o 유료방송 수신료 정상화, 플랫폼-PP 공정수입 배분 계획 등 방송발전 지원계획이 다소 추상적으로 수립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상생을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될 수 있음

o 최초 승인 시 사업계획서에 ○○○명의 고용을 제시하였으나 ○○○○년 자체 고용인원이 ○○○명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이 필요함

o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을 위해 공정방송위원회, 편성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하였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에 관한 내부규정 개정이 필요함

o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하여 지방대 채용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SO와의 교류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추후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한 노력이 필요함

o 방송시설 투자액이 계획 ○○○억원 대비 ○○○억원으로 ○○%에 그치고, 연구개발 투자실적은 ○○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행을 촉구한 방송기술연구소 설립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o 향후 5년간 방송시설 투자계획이 ○○○억원 수준이고 '○○~'○○년 투자실적과 계획 총합이 ○○○억원 수준으로, 당초 '○○~'○○년 투자계획 금액 ○○○억원에 미달하는 금액임

o 향후 투자계획인 UHD분야는 '○○년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치열한 방송시장에 소극적 대응으로 보이며, 급변하는 방송기술과 경영을 연계하기 위하여 방송기술연구소의 설립을 통한 미래 기술 확보와 적절한 방송시설 투자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o 방송산업 이행실적 면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미약하고 방송인력 양성도 ○○여명의 인턴십 진행에 불과함

o 향후 5년간 계획은 과거 실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어서 실현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고 국산 방송장비 및 솔루션 투자 ○○억원은 긍정적인 계획으로 꼭 시행하기를 권고하며, 또한 우리나라 방송산업 발전을 위하여 스마트 기술 연구와 방송인력 양성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o 방송기술과 관련하여 인력과 장비운영 면에서 비교적 체계를 잘 갖추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실제 운영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음. 그러나 계획 대비 낮은 투자비율, 연구개발 인력의 부족 및 연구부서 미설립 등 향후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은 다소 미흡한 수준임

o 국내 방송장비 도입에 대한 전체적인 실적은 사업계획서상의 비율인 ○○%를 유지하였으나 2011년에 ○○%, 2012년에 ○○%, 2013년 ○%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향후 ○○○○년까지 국산장비 도입 비율을 ○○%로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산장비 산업 활성화'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이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보도의 신뢰성 강화 >

o 저널리즘의 심층성을 강화하고 보도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시사토크 프로그램은 줄이고 심층취재와 탐사보도를 늘려서 시사현안의제를 선도하는 미디어로서 위상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통해 저널리즘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o 사실확인 시스템과 보도정보 시스템을 통해 보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한다고 하였으나 내부 인력에만 의지하는 형식적 절차로 보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제도 강화가 필요함

< 방송분야 간 균형편성 >

o 최초 승인 시 계획했던 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정도였으나 실적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드라마 등 오락 프로그램의 제작을 통해 분야별 균형을 이루며 콘텐츠 다양성에 기여하여야 함

o 타 종편PP에 비해 보도비율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 보도·교양·오락비율의 균형편성(○:○:○)을 달성하겠다는 계획과 노력이 인정됨

o ‘인포테인먼트’라는 장르를 내세워 오락과 정보를 함께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방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드라마 구매 등의 노력을 하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o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 대비 평균 ○○%정도 편성되었으나 보도·시사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스포츠 중계도 공익적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 있고 중복으로 계산된 프로그램도 있음. 향후 계획은 이를 ○○%까지 높이겠다고 제시하였으나 공익적 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공익적 프로그램으로 제시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재방비율 >

o 타 종편 PP와 마찬가지로 높은 재방비율의 문제가 있음

o ‘13년도 이행실적 점검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방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년까지 최소 ○○%의 재방률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에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재방비율 축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o 재방비율이 높다고 반드시 부적절한 것은 아니나 신규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한 다양성 제고, 시청자 선택권 증진 및 콘텐츠 산업 활성화가 종편PP 도입의 목적임을 고려할 때 콘텐츠 제작투자 확대를 통해 적정수준의 재방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재무 건전성 확보 >

o 재승인 신청서 상 향후 광고매출 전망치가 과거의 광고매출 실적

및 현재의 광고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 낙관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그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듦. 특히 광고 매출추정의 핵심적 요소인 향후 시청률 및 광고 판매율 추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고 영업이익률 등 주요 재무지표가 급격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하여 사업추진 계획의 객관성이 부족함

o 재승인 신청서 상 제시된 광고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광고 영업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효과적인 광고상품의 개발과 함께 프로그램과 광고의 분리를 통하여 프로그램 제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o 광고수입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계속적인 적자발생과 가용자금의 부족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추가 자본 확충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방안을 준비해야 함

o 최초 사업승인계획서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매출금액을 예상하여 지난 ○년간의 매출 성과가 예측금액의 약 ○/○ 수준으로, 경영진의 자기반성이 필요함

o 재승인 사업계획서 상 제시된 추정 영업현금의 기간과 금액에 대한 예상치와 실제치가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이 필요함

< 공익성 제고 >

o 신청법인은 양적 기준으로만 보면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질적 측면에서 내용적 공익성의 제고와 공익적

프로그램의 신규 추가 제작이 요구되며, 특히 일부 공익적 프로그램의 편성이 심야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등 공익적 프로그램이 편성순위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음

o 공정성 측면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적·제도적 장치(준칙 등)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나, 실효성 있는 운영 여부는 다소 불투명 함. 따라서 향후 공정성 제고를 위한 내부적·제도적 장치들의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함

o 국가 아젠다 제시를 통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현안 및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장애인·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개선 및 대안 모색을 위한 공론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는 못함

o 소수 시청자 프로그램 편성의 경우 어린이·청소년·장애인·다문화 가정 등 통상 사회적 약자를 '소수 시청자'라는 용어로 분류하였으나 용어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프로그램 또한 음악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등 단편적이고 사회적 약자와는 관계없는 프로그램을 편성한 것으로 보임

o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성인 콘텐츠 편성비율을 최소화했으나 정작 방송 상으로는 선정적·폭력적 내용이 많아 아동·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임

< 기타 사항 >

o 신청법인 및 최대 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이 양호한 편이나 최대 주주의 추가 출자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o 대표이사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은 경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o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의 다양성에 기여했다고 하나 조사와 보도가 하루에 이루어지는 등 조사방법의 정확성 및 결과의 타당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음. 또한 사회적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주제까지 조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o 방송사업 관련 각종 소송 및 분쟁과 관련하여,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내부 준칙을 마련하여 소송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5. 심사위원회 회의 및 사업자 의견청취 속기록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 속기록

■ 일 시 : 2014. 11. 10. (월) 11:0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107 강의실

방송통신위원회

회 의 록

□ 회 의 명 : 종합편성(MBN)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차

□ 일 시 : 2014. 11. 10.(월) 11:0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107 강의실

□ 출석위원 : 오택섭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이태원 (법무법인 목성 변호사)
임철승 (법무법인 정상 변호사)
오태원 (경일대 경찰학과 교수)
전진근 (열린공인회계사 감사반)
김익찬 (삼정회계법인 이사)
박인배 (성인회계법인 이사)
최동준 (ETRI 케이블방송연구실 실장)
한동석 (경북대 전자공학부 교수)
조태임 ((사)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김경의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및 성남지부 대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15인)

종합편성(MBN)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 속기록

【11시 00분 개회】

1. 성원보고

○ **심사위원장**
- 성원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지원정책과장**
- 15인의 위원님 중 15인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심사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보고사항

1.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

○ **심사위원장**
- 상정 안건은 <보고사항> 1건, <의결사항> 2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심사에 기초가 되는 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1>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2014년도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이유입니다. 「2014년도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기본계획은 2013년 9월 5일에 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흔히 PP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입니다. 4개 사업자와 보도전문PP 1개 사업자,

총 5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종편PP 3개사와 보도PP 1개사는 이미 지난 3월에 재승인 의결한바 있습니다. 경과 사항입니다. 2011년 3월~5월 사이에 「종편·보도PP 승인」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 2013년도 7월에 재승인 심사기준 연구반을 구성했습니다. 2014년 8월 5일에 심사기준 초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연구반이 주재한 것입니다. 2013년 8월 9일에 종편·보도PP 사업자 의견 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8월 23일에 연구반의 최종 심사기준안을 위원회가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2일에 연구반의 최종 심사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는 방통위가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재승인 심사의 기본방향입니다.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편·보도PP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심사입니다. 여론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 등을 중점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기준의 구체화로 공정성 제고입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에 상세한 심사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본계획에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그 배점까지 포함시키고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 위임했습니다. 여기에서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세부심사 항목 때 설명을 드릴 텐데 심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심사사항이고 가장 큰 대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대분류에 대해 중분류로 심사항목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것을 세분화시킨 것이 세부심사항목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지상파 재허가 또는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에는 심사사항과 그 배점까지만 포함시키고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과 그 배점·평가방법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2010년 종편·보도PP 최초 신정시에는 세부심사항목과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심사기준을 위원회에서 모두 의결하여 제시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상파방송 재허가 등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방송법상 지위 또는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을 준용하고 종편·보도PP의 채널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 원칙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재승인 심사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들로 구성했습니다. 구성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인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원장님 포함해서 총 15인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구성안은 밑에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분야 3명, 법률분야 3명, 경영·회계 분야 3명, 기술분야 2명, 시청자·소비자 단체 분야 3명이 되겠습니다. 열네 분은 심사평가를 하시고, 심사위원장님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위촉기준입니다. 대학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박사학위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해당 분야 직종에 5년 이상 종사하면서 상기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결격 사유입니다. 결격 사유는 이미 저희가 심사위원님들께 여러 번 공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구성 절차입니다.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했습니다. 전문분야별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첫 번째 기본 방향입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 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재승인 여

부 및 조건 부과 등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종 재승인 여부를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업무입니다.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 논의·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평가를 하고,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내일 있을 사업자 의견청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내용은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중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청취대상자는 신첩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및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참석대상이 불가피한 경우 방통위의 양해를 얻어서 대리인 출석이 가능합니다. 청취일시는 내일입니다. 결과처리는 의견청취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심사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원칙은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14인) 각각이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항목별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입니다. 크게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되는데 계량평가는 방송평가, 재정적 능력 및 시정명령 횟수 등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객관적·정량적인 기준에 대해 평점을 부여합니다. 즉, 심사위원님들께서 계량평가에 대해서는 같은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비계량평가는 계량평가가 아닌 다른 평가항목에 대해 정성적으로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뒤 각 등급별로 평점을 환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밑에 <표>에 우, 수, 미, 양, 가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매우우수'부터 '매우미흡'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수로 판단하시면 해당 배점의 80% 이상 100% 이하 점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2단계로 심사가 이어지는데 처음에 수, 우, 미, 양, 가를 결정하시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배점 구간에서 배점을 하게 됩니다.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는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하게 됩니다. 심사기준입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법정 심사사항과 재허가·재승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외부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된 연구반 제시안을 반영하겠습니다. 9페이지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9개 심사사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기준은 심사사항, 심사항목 그리고 세부심사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대·중·소분류로 보시면 됩니다. 이 <표>에 나오는 9개가 심사사항인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두 번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세 번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네 번째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다섯 번째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여섯 번째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여행여부, 일곱 번째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여덟 번째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아홉 번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입니다. 이 9개는 방송법에 명시된 심사사항입니다.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을 이렇게 했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입니다.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방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를 재승인 심사사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제31조에 따라 방송평가위원회가 매년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편성,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평가점수를 재승인 심사

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이 되겠습니다.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제17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등을 합쳐서 심사사항으로 구성했습니다. 하위 심사항목으로는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시청자 권익보호, 신청법인의 적정성 그리고 관련 법령 위반 사례를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위반 사례' 심사항목은 연구반에서 '방송법 및 관련 법령 미준수 사례'를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심사항목에서 감점하고 별도 심사사항을 구성하여 중복 감점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관련 법령 위반을 중복 감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심사사항의 심사항목인 '관련 법령 위반 사례'에서만 한 번 감점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신청법인의 적정성' 심사항목은 연구반에서 신청법인과 주요주주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신청법인이 이미 초기 구성주주로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방송사업자인 점, 방송법 제15조의2에서도 최다액출자자만 규제하고 있는 점, 그리고 신청법인의 적정성을 평가한 과거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법인의 적정성 심사항목을 두되,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입니다.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을 심사항목으로 구성했습니다. 하위 심사항목으로 기획·편성의 적절성, 수급의 적절성, 그리고 제작·협력의 적절성을 두었습니다. 네 번째로 재정 및 기술적 능력입니다. 방송법 제10제1항제5호에 규정된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을 심사사항으로 구성했고, 하위 심사항목으로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입니다. 방송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을 심사사항으로 구성했습니다. 하위 심사항목으로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전략, 조직 인력운영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을 두었습니다. 연구반에서는 별도 심사항목으로 '자금 조달 및 운영'과 '사업성 분석'을 제안하였지만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그리고 '재정적 능력' 심사항목에 포함된다고 봐서 별도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입니다. 방송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과 제17조제3항제5호에 규정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합쳐서 하나의 심사사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 및 타당성입니다. 방송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과 제17조제3항4호에 규정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를 합쳐서 심사사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여덟 번째,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방송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17조제3항제6호에 규정된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합쳐서 심사사항으로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입니다. 방송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를' 하나의 심사사항으로 구성했습니다. 배점입니다. 재승인 총점 1,000점 중 350점을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방송평가'의 배점으로 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점수로 배점을 합니다. 350점은 기존에 있던 점수를 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점수에 대해 배점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650점에 대해 심사위원

님들이 배점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관련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의 배점은 연구반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하되, 종편의 공적책임 강화 차원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그리고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배점을 강화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심사사항별 배점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으로 보도PP 재승인까지 같이 나와 있는데 왼쪽의 칼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 종편PP 재승인해서 350점 그다음에 쭉 밑에서 합이 1,000점인 그 점수가 심사사항별 배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심사사항과 심사항목까지 배점을 한 <표>가 있습니다. 심사항목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세부심사항목은 조금 후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세부심사항목과 배점, 평가방법 등은 조금 있다 의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재승인 여부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사항 9개에 대해 당초에는 배점의 40%에 미달하면 조건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심사사항 두 번째, 세 번째인 이 심사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의결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총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승인의 유효기간을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미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승인 심사기본 계획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세부내용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들어오실 것입니다.

4. 의결사항

가. 2014년도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

○ **심사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4년도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2014년도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14년도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고, 주요 내용은 <붙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지, 목차를 지나서 1페이지 개요입니다. 심사위원회 주요일정입니다. 1일차 월요일 오늘은 심사위원회 운영계획, 세부 심사기준을 의결하고, 조금 전에 기본계획을 보고 받으셨습니다. 2일차 화요일에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사업자 의견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수요일에는 계량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평가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4일차 목요일에 심사의견서를 의결한 후 방통위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해산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방안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사업자별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검토해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 회의는 심사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 안건은 심사위원장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별 평가결과와 심사의견은 개별 심사위원의 실명을 밝히지 않으나, 익명으로 추후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백서를 통상 발행하기 때문에 백서에 익명으로 해서 어느 분이 어떤 말씀하셨다는 부분은 공개될 수 있겠습니다. 재승인 여부 및 조건 부과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청취 계획입니다. 청취할 내용은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과 사업계획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고, 청취대상자는 재승인 대상 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이 되겠습니다. 청취일시는 내일이고, 결과처리는 의견청취 결과는 별도의 배점이나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별로 관련된 심사항목 평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회의 운영계획입니다. 제1차 회의가 오늘 진행되고 있는데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보고받았고,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과 재승인 세부 심사기준을 조금 있다가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오후에 식사하시고 진행이 되겠고,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를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배포해 드릴 예정인 각종 심사 참고자료들을 저희가 책자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설명드리는 시간은 회의 끝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준비는 내일 의견청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석식 이후에 2시간 정도 진행하고 내일 오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 진행계획을 보고 받고, 추가 요청자료 리스트를 만들어서 질의서까지 오늘 저녁에 제출해 주시면 그 질의서 내용을 취합해서 어떤 내용을 질의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실 것인지 이런 역할분담 등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의견청취가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해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각자 어떻게 반영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심사 3일차 수요일에 진행되고 계량평가 결과를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마지막 날 오전에 진행되고,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점수표 작성하신 것 말고 별도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그 부분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붙임>으로는 심사장 배치도가 나와 있는데 그림이 보시기 어려운데 회의는 여기에서 진행하고, 실제로 서류검토는 건너편 1층에 서류를 심사위원님별로 놓아두었는데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일정은 마지막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서류는 추후 퇴소하실 때 전부 반납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가> ‘2014년도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나. 2014년도 종편PP 재승인 심사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건

○ 심사위원장

- <의결사항 나> ‘2014년도 종편PP 재승인 심사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2014년도 종편PP 재승인 심사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요 및 세부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본계획을 보고드릴 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설명은 지난 3월에 있었던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 때 세부심사 계획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계획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관련 내용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부항목별 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심사항목의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항목을 과거실적과 미래계획 간 균형 있게 심사평가하기 위해 실적과 계획으로 구분하여 세부심사항목을 구성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심사항목이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이라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부심사항목을 그 항목에 대한 이행실적의 적정성과 실현계획의 적정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항목은 이처럼 실적과 계획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심사항목의 경우에는 과거 실적만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항목에 대해서는 계획상 없기 때문입니다. 방송평가나 신청법인의 적정성, 승인 시 부여한 준수사항, 재정적 능력이 과거 실적만 반영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세부심사항목별 배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점은 과거 실적만 평가하는 방송평가, 신청법인의 적정성 등 이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실적과 계획의 비중을 약 1:2로 부여합니다. 과거 실적만 평가하는 항목의 배점이 전체 1,000점 중에 505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95점이 남는데 이 중에 실적 부분이 170점, 계획 부분이 325점해서 총점으로 하면 실적이 675점, 계획이 325점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4페이지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항목들이 과거 실적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심사항목들이고, 나머지 항목들은 실적과 계획을 약 1:2의 비율로 구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러 세부심사 항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혼란의 소지가 있는 항목 한 가지와 그리고 4가지의 계량평가 항목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심사위원님들께서 정성적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법인의 적정성입니다. 대상법인은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신청법인 및 최대주주로 결정하였습니다. 평가방법은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사업추진 의지,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최대주주의 재정적 능력, 그리고 최대주주의 방송·통신, 신문·뉴스통신 등에 있어서의 법 위반사항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최대주주의 재정적 능력은 이 항목에서 평가를 하면 되지만 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 즉 MBN의 재정적 능력에 대해서는 심사항목 중에 「재정적 능력」이라는 별도 항목이 있는데 그쪽에서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대주주의 법 위반사항은 신청법인의 적정성 항목에서 평가를 하면 되지만 신청법인, 즉 MBN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심사항목 중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그리고 「관련법령 위반사례」에서 반영하여 심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아까 기본계획에서 설명드린 것도 있고, 또 방송평가 등에 있어서 중복된 항목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에 관한 평가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방송평가 점수는 승인 유효기간('11년, '12년, '13년) 중 '12년도 방송평가 점수만 있으므로 이를 반영합니다. '13년도 방송평가 점수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MBN의 '12년도 방송평가 점수는 700점 만점에서 554.21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평가 점수 700점을 저희 종편 재승인 심사 350점으로 반영해야 하므로 MBN의 방송평가 점수를 50%로 환산하여 277.11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 위반사례입니다. '11년 12월부터 MBN이 최초 승인 받은 시기입니다. '11년 12월~'14년 8월까지 재승인 신청법인의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관련법령의 범위는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 법무부 등 12개 기관과 관련한 방송, 상사 및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법 위반사항입니다. 다만, 동일한 사안이 중복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에 이미 반영된 행정처분은 제외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조기준은 방송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방송평가를 참조하고, 그 외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기준을 참조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저희가 참조한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의 법 위반에 따른 감점 그리고 그 외 법령위반에 따른 감점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 참조기준을 고려하여 본 심사 때 실제 적용할 감점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송평가 점수가 700점 중에 350점이 반영된 점을 고려하여 이 감점기준도 방송평가 기준의 50%로 환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방송법 위반의 경우 과태료 -2점, 과징금은 금액에 따라 -5점, -7.5점 그리고 종편사업자들이 심의제재가 조금 많은 편인데 주의는 -0.5점, 경고는 -1점이 반영됩니다. <표> 아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 중인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여부입니다. 방송평가 및 지상파 재허가 심사와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 확정된 행정처분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안정된 심사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송 중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감점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3년 1월~'14년 8월까지 MBN의 법령위반 건수는 총 ○○건인데 이 중에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건은 ○건 있습니다. 이는 '13년도에 저희가 시정명령한 것이 있는데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라 과징금을 '14년 1월에 부과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징금은 납부했지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을 유예하였습니다. 그리고 '11년에는 사업을 시작한지 1개월밖에 안 돼서 법령 위반 건수가 따로 없고, '12년 법령 위반 건수는 이미 '12년 방송평가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정적 능력에 대한 세부심사 방법입니다. 세부심사항목은 지상파 재허가와 방송평가 등에서 심사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의 주요지표 중 대표적 지표인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과 총자산증가율로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는 '10년도, '14년도 종편·보도PP의 승인 심사시와 동일한 지표입니다. 대상기간은 신청법인의 최근 3년간 재무현황을 대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

년도의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짧았다는 점에서 평가대상 기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평가방법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 분석을 이용하여 전 산업 평균(m), 표준편차(a)를 구한 다음에 이를 MBN의 해당 지표값(a)과 비교하여 평가를 합니다. 최저점 설정입니다. 보통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에 있어서는 최저점을 만점의 20%를 부여했고, 이에 비해 종편·보도PP 승인심사 그리고 IPTV 허가·재허가 심사 시에는 때는 40%를 부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에 있던 재승인 심사 때에는 이 둘을 조화롭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간인 30%를 최저점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각 심사항목별 최저점과 최대점 그리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사례입니다. 적용 대상 및 기간은 '11년 12월～'14년 8월까지 재승인 신청법인의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입니다. 시정명령의 범위는 방송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하되, 중복성 배제를 위해 방송평가에 이미 반영된 시정명령 '12년분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참조기준은 방송평가 시 감점기준을 참조하여 앞서 보신 관련 법령위반사례와 마찬가지로 점수의 50%로 환산하여 시정명령의 경우 -4점, 과징금은 금액에 따라 -5점, -7.5점을 감점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가 계량평가를 하게 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지난 3월에 하였는지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다른 항목들에 대한 평가방법은 11～17페이지까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모두 심사위원님들이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실 부분입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그리고 의견청취 사항들을 반영하여 정성적인 평가를 하시면 되고, 그 뒤에 제가 1장짜리 심사평가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작성하시는 것은 아니고 의결해 주시면 그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수정할 텐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중분류에 해당하는 심사사항이고, 흰색 부분이 소분류에 해당하는 세부심사사항입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평가배점, 평가방법,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보다는 지금 막 받은 자료라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간도 우리가 1시까지 잡혀 있는데 아주 무능한 사회자가 아니면 1시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한 30분 동안 여러분들께서 11～17페이지까지 실제로 이것 가지고 씨름 하실 것입니다. 굵직굵직한 이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잘 들으셨는데, 과연 앞으로 저기에 쌓여 있는 산적한 계획서, 또 내일 청취할 종편사의 대표자로부터의 의견청취에 기초해서 어떤 항목에 얼마의 점수를 줄 것인지를 미리 공부하시는 의미에서 한 30분 동안 11～17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기본적인 질문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심사위원이 이 심사사항을 업무분장합니까, 아니면 모든 심사항목에 대해 모든 심사위원이 다 같이 합니까?

○ **심사위원장**

- 모든 사람이 모든 항목에 대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서 의견 개진해 주어야지요. 내일 의견청취가 있는데 오후와 저녁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모레 이틀에 걸쳐 이것을 평가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각 분과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 이렇다고 말씀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겠지요.

○ **심사위원**

- 질문 있습니다. 세부심사항목과 평가방법 <붙임 1> 11페이지 이하 부분은 지난 3월에 했던 종편3사와 보도와 동일하게 되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예,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우리가 형평성상 쉽게 바꾸기는 어렵겠네요?

○ **심사위원장**

- 그렇습니다. 일관성 내지는….

○ **심사지원반**

- 참고로 주요 심사항목의 평가방법 부분, 제가 아까 5가지 항목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도 기존에는 논의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때 당시 논의를 통해 결론이 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심사위원장**

-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350점 만점에 대한 평가점수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277.11점은 이미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중에서도 계량적으로 해서 과징금을 얼마 냈는지, 시정명령을 몇 건 받아서 몇 천을 받았는지 그것은 여러 심사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전달해 주시면 그 점수를 각자의 채점표에 기재만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옮겨만 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평가지표를 보시면 계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 **심사위원**

- 거의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심사지원반**

- 별도로 3일차에 계량평가 결과에 대해 의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량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안을 전문가 분들과 협의해서 올리면 그것을 의결해 주시면 그 점수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계량은 그렇게 하면 되고, 반드시 심사위원 개별적으로 전부 다 모든 항목을 다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회계사인데 기술은 잘 모릅니다. 그다음에 정성적인 점수를 봤을 때 방송의 공공성이나 정책적인 부분은 정성적인 평가하려면 그 분야에 전문성도 있고 또 비교해서 뭔가를 고려해서 점수를 줄 텐데, 저희들은 재정이나 아니면 사업계획 이행할 때 투자나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방 보면 답을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다른 분야에 대해 정성적으로 점수를 줘서 합산을 하면 오히려 이것이 평가의 객관성이라고 해야 합니까? 전문성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런 것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여기에 하루 이틀 앉아서 들으니까 공부가 많이 됩니다. 조금 주관적인 것은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만 채점을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모든 분들이 전 항목에 대해 평가하시는 것으로 제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많은 참조가 되겠지요. 이 자금 가지고는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상당히 참고가 되겠지요.

○ **심사위원**

- 제가 알기로는 그 분야별 평가를 하려면 규정에 그렇게 분야별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위원이 평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라도 다 똑같이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예,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

- 참고적으로 이 직전 3개 종편사와 보도채널은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 **심사위원장**

-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위원님 궁금하신 것이 총점 기준으로 궁금하신 것입니까?

○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들이 채점했던 백서를 다 제공할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저 방에 다 있지요?

○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백서를 보시면 점수도 다 나와 있고,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을 불러주시면 어떤 부분이라도 찾아서 도와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평가결과를 점수로 환산해서 측정하는 것은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3일차 오후가 되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과 관련된 공정성·공익성에 대한 실적의 적정성 45점으로 되어 있고 평가방법의 실적이나 적정성 평가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각각에 따른 평가기준들이 다 있다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평가방법에 있는 사항은 다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 **심사지원반**

- 사업자들이 비교적 저희 평가방법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조금 괜찮으실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위원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미 앞전에도 평가를 하셨는데 왜 그 당시에 이행실적은 평가점수를 낮게 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항목이 더 높게 책정이 되었는지….

○ **심사위원장**

- 그것은 아주 상당히 뜨거운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이러한 방대한 방송사업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주 짧은 기간이다, 그래서 그 기간의 성적표를 가지고 낙제점수를 준다든가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퇴출을 시키는 것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체로 지배적으로 나와서 앞으로 평가를 좀 더 가중치를 많이 주자, 3년 후에는 미래형으로 나와 있는 그 계획서가 실적으로 들어갑니다. 다음번에는 상당히 긴장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방통위 쪽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 3월에 종편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투표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오늘 오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 **방송지원정책과장**

- 제2차 회의로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를 의결하고 난 이후에 심사 참고자료에 대해 저희들이 설명할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렇지요. 저희가 옆방으로 옮겨가지요?

○ **방송지원정책과장**

- 설명을 들으시고 저쪽으로 옮겨가실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궁금하신 사항은 다른 회의실에 있는 자료를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난번 종편3사와 뉴스Y, 또 뉴스전문채널 4개 사업자들을 평가했는데 그 평가표를 한 번 보시면 비록 익명이지만 어떤 위원들이 어떻게 점수를 주었는지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세부항목 중 하나와 관련해서 이를 테면 '선거방송의 적절성'이라는 항목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비교대상으로 MBN 이외에 다른 방송사들이나 지상파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대조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MBN 쪽에서 낸 자료가 우리는 이런 것을 10번을 했다는 것만 있다면 이것이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유사항목에 대해 지상파나 아니면 다른 종편3사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저희가 크로스체크할 수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그것은 항목이 어떠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심사기준 관련된 것이 지난번 심사했던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난 3월에 했던 심사와는 비교가 가능할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매체와의 비교가 필요하다면 그 자료는 저희가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꼭 그 항목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사업계획서나 지금까지 실적보고, MBN에서 제출한 문건을 보면 굉장히 두꺼운 책에 하나하나에 대해 자기 PR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주지요. 타사에 비해 우리가 이것을 잘했고, 거기다 소금을 잔뜩 치면서 그것을 읽어보시면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장으로 항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두꺼운 분량으로 자료와 자체적으로 낸 그 판단을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평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일 인터뷰도 할 것이고, 참고로 내일은 여기에 스크린으로 다 가려서 어느 분이 하는지도 모르고, 위원장이 그래도 여기까지 멀리오신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을 프로토콜상 영접해야 않느냐 했는데 그럴 것 없다고 해서 안에서 닫아걸고 했습니다.

○ **심사위원**

- 2013년 방송평가기술은 언제쯤 나옵니까?

○ **심사지원반**

-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빠르면 11월 말이고, 늦으면 12월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이렇게 되면 2013년, 2014년도 방송평가는 다음번 재승인 때도 포함이 안 되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방송평가 중에 어떤 것과 관련된 질문입니까? 관련 법령위반 사항 부분입니까?

○ **심사위원**

- 방송평가위원회에서 하는 35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 방송평가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13년과 2014년은 나중에 다음번 재승인에도 포함이 안 되는 것이지요?

○ **심사지원반**

- 2014년 방송평가는 12월 말까지가 재승인 유효기간입니다. 12월 1일부터는 차년도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될 수 있고, 얼마나 반영할지는 다시 세부심사기준에서 마련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2013년 것은 빠질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지금 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계획을 평가하는데 그 계획이 다음번 평가에 반영되는 것입니까? 계획은 잘 써 왔는데 그 계획이….

○ **심사지원반**

-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아직 안 보셨는데 사업계획서 구성이 실적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계획이 다음번 사업계획서에는 실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반영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심사위원**

-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에 대해 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에 대한 비율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 **심사지원반**

- 실적 부분은 최초 선정 시 사업계획서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적을 내는 것이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방송정책들과 연계해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만 100% 하겠다, 이것이 잘 됐는지 그 기준이 아주 모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 **심사지원반**

- 방송법의 기준은 항상 최소한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사업자들이 신규사업자 선정을 받을 당시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잘 쓰고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계획을 방송법보다 높여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높여서 제시한 부분을 기준으로 지난번에 평가했었고,

방송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없었고 그것보다는 높았지만 자기들이 제시한 기준보다 낮았을 경우에는 평가에 반영하든지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님들이 그렇게 진행하셨습니다.

○ **심사위원**
-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까?

○ **심사지원반**
- 예,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처음에 승인 심사할 때 그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텐데 그때 계획서와 실적을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일단 저희가 최초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점검을 본 심사 전에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도 되고 더 자세한 정말 최초 사업계획서까지 보고 싶으면….

○ **심사지원반**
-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최초 신청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의 계획에 대한 실적이 이번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당시 최초 승인 시 어떤 사업계획을 했고 그것에 대해 이행실적이 어떤지 볼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30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 나>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폐　　회

○ **심사위원장**
- 이상으로 2014년도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폐회】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 속기록

■ 일 시 : 2014. 11. 10. (월) 14:0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107 강의실

방송통신위원회

회 의 록

□ 회 의 명 : 종합편성(MBN)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차

□ 일 시 : 2014. 11. 10.(월) 14:0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107 강의실

□ 출석위원 : 오택섭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이태원 (법무법인 목성 변호사)
임철승 (법무법인 정상 변호사)
오태원 (경일대 경찰학과 교수)
전진근 (열린공인회계사 감사반)
김익찬 (삼정회계법인 이사)
박인배 (성인회계법인 이사)
최동준 (ETRI 케이블방송연구실 실장)
한동석 (경북대 전자공학부 교수)
조태임 ((사)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8
김경의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및 성남지부 대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15인)

종합편성(MBN)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 속기록

【14시 00분 개회】

1. 성원보고

○ **심사위원장**
- 성원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지원정책과장**
- 15인의 위원님 중 15인 위원님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심사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의결사항

가. 2014년도 종편PP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 청취 결과 접수에 관한 건

○ **심사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4년도 종편PP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 청취 결과 접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2014년도 종편PP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 청취 결과 접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2014년도 종편PP(MBN) 재승인 심사 관련 <붙임>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에 대한 접수를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종편PP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 접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종편PP(MBN)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제10조제2항에는 승인이나 재승인, 허가나 재허가 시에는 시청자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저희도 9월 1일~30일까지 한 달 동안 의견청취를 진행했고, 의견청취 방법은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의견은 총 13건이고 다 이메일로만 받았습니다. 13건 중 2건은 저희에게 접수된 것이 아니라 MBN에게 접수가 돼서 MBN이 저희 쪽으로 이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결과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그간 소외되었던 중·장년층 시청자를 소구하는 프로그램을 지속 편성하고 보도·교양·락 프로그램 간 균형 편성을 유지했다. 특히 <황금알>, <엄지의 제왕> 등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제공하는 교양 프로그램, 소위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다만, 보도 프로그램에서 MBN만의 색채가 잘 드러나지 않고 일부 교양·예능 프로그램이 타 방송사 또는 기존 MBN 프로그램과 유사해서 독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시청자 의견을 요약한 사항이 있고, 저희가 별도로 나누어드린 노란색 책자에 보면 원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 **심사위원**

- 시청자는 어떻게 구성된 것이지요? 샘플이 자발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특정 샘플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중에게 고지해서 그것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이메일 주소를 하나 올렸고, 그다음에 저희 주소와 연락처를 다 알려드려서 방송을 보시고 저희에게 의견을 주신 분에 대해 저희가 다 접수해서 전수조사한 것이 ~~13건~~이 접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이분들이 MBN과 관련된 분들은 아닙니까?

○ **심사지원반**

- 그런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저희가 MBN에게 요청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방송 하단 자막으로 시청자 의견접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 달라고 요청드렸고, 그에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원문을 저희가 그대로 노란색 책자에 비치했고 그것을 요약한 내용이 이 사항입니다.

○ **심사위원**

- MBN으로 접수된 것은 다 이쪽으로 이관되어 옵니까?

○ **심사지원반**

- 원래는 저희가 접수하는 것이 맞는데 시청자 분들께서 일부는 MBN에 접수해서 MBN에서 이첩을 해 왔습니다.

○ **심사위원**

- 원래 안내도 그렇게 했습니까? 안내도 MBN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까?

○ **심사지원반**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MBN은 이해 관련 당사자인데 그쪽으로 받는 것은 괜찮습니까?

○ **심사지원반**

- 저희가 시청자 의견을 접수할 때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신원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크게…, 어차피 똑같은 개인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심사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시청자 의견청취 결과 접수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4. 폐　　회

○ **심사위원장**

- 이상으로 2014년도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15분 폐회】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 속기록

■ 일 시 : 2014. 11. 12. (수) 13:3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107 강의실

방송통신위원회

회 의 록

□ 회 의 명 : 종합편성(MBN)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3차

□ 일 시 : 2014. 11. 12.(수) 13:3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107 강의실

□ 심사위원 : 오택섭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이태원 (법무법인 목성 변호사)
임철승 (법무법인 정상 변호사)
오태원 (경일대 경찰학과 교수)
전진근 (열린공인회계사 감사반)
김익찬 (삼정회계법인 이사)
박인배 (성인회계법인 이사)
최동준 (ETRI 케이블방송연구실 실장)
한동석 (경북대 전자공학부 교수)
조태임 ((사)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김경의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및 성남지부 대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15인)

종합편성(MBN)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 속기록

【13시 30분 개회】

1. 성원보고

○ **위원장**
- 성원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지원정책과장**
- 15인의 위원님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심사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의결사항

1. '14년도 종편PP 재승인 계량평가 결과

○ **심사위원장**
- <의결사항 가> ''14년도 종편PP 재승인 계량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2014년도 종편PP 재승인 계량평가 결과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2014년도 종편PP 재승인 계량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종편PP 재승인 계량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계량평가 결과는 <붙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계량평가 결과 종합입니다. MBN에 대해서는 방송평가 277.11점,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 사례에 따른 감점 -18점, 재정적 능력 37점, 시정명령 및 불이행에 따른 감점 4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하나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평가 점수입니다. 평가방법은 첫째 날 세부 평가기준 의결할 때 설명했던 사항들입니다. 먼저 2013년도 방송평가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2012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대해서만 0.5를 곱하여 점수를 산출하였습니다. MBN은 방송평가에서 554.21점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

제 종편 재승인 때 반영되는 점수는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77.11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사례에 따른 감점입니다. 세부평가기준에서 신청법인이 위반한 법 위반건수를 대상으로 하되, 방송평가에 반영된 2012년도 법 위반건수를 제외하고 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법 위반에 따른 '주의' ○건, 방송법 위반에 따른 '경고' ○건, 방송법 위반에 따른 '관계자 징계 및 경고' ○건 해서 총 감점은 18점입니다. 5페이지 재정적 능력입니다. 재정적 능력의 세부 평가방법은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증가율에 따라 평가하게 됩니다. 먼저 MBN의 평가를 위하여 기준이 되는 값을 산출하기 위해 2012년, 2013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중 총 18개 업종의 평균값과 개별업종의 평균값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비정상적인 업종인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업종을 기준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16개 업종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최저점 설정입니다. 최저점 설정은 심사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30%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MBN의 부채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증가율에 따른 평가점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도별 가중치 및 계산식입니다. 최근 연도순으로 하여 2:1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를 계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MBN의 재정적 능력 평가점수입니다. 먼저 2012년도입니다. 부채비율은 2012년 ○○%로 전체 산업 평균에서 2곱하기 표준편차를 뺀 값과 비교했을 때 그것보다 작은 값이므로 최대 배점인 25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자기자본순이익률과 총자산증가율은 전체 업종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평균 마이너스 2 곱하기 표준편차보다 모두 작은 값이므로 최소 배점인 6점을 각각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평가점수는 37점이 됩니다. 2013년도 평가점수입니다. 2013년도 평가점수도 값은 2012년도와 차이가 있지만 부채비율의 경우에는 최대 배점을 획득하였고, 자기자본순이익률과 총자산증가율은 최소 배점을 획득하여 점수는 2012년과 같은 37점입니다. 이에 따라 앞서 설명드린 산식대로 계산했을 때 MBN의 재정적 능력 점수는 37점이 됩니다. 7페이지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감점입니다. 평가방법은 신청법인이 부여받은 시정명령 건수를 대상으로 하되 방송평가에 반영된 시정명령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MBN의 경우 시정명령 1건에 대한 감점 4점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 행정처분에 대해서….

○ 심사위원

- 연도별 가중치는 2013년도에 가중 평가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중치를 더 주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재정적 능력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예.

○ **심사지원반**

- 아닙니다. 이것은 방송평가와는 관계없이 최근 재정적 능력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높은 비중을 둬서 가중을 둘 필요가 있어서 최근 것을 2로 하고, 먼 2012년도 것은 1로 하였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14년도 종편PP 재승인 계량평가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폐　　회

○ **심사위원장**

- 이상으로 2014년도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45분 폐회】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 속기록

■ 일 시 : 2014. 11. 13. (목) 09:3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107 강의실

방송통신위원회

회 의 록

□ 회 의 명 : 종합편성(MBN)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4차

□ 일 시 : 2014. 11. 13.(목) 09:3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107 강의실

□ 심사위원 : 오택섭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이태원 (법무법인 목성 변호사)
임철승 (법무법인 정상 변호사)
오태원 (경일대 경찰학과 교수)
전진근 (열린공인회계사 감사반)
김익찬 (삼정회계법인 이사)
박인배 (성인회계법인 이사)
최동준 (ETRI 케이블방송연구실 실장)
한동석 (경북대 전자공학부 교수)
조태임 ((사)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김경의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및 성남지부 대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15인)

종합편성(MBN)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 속기록

【09시 30분 개회】

1. 성원보고

○ **심사위원장**
- 성원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지원정책과장**
- 15인의 위원님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심사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의결사항

가. 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 **심사위원장**
- <의결사항 가> '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지원반**
-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입니다. '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심사의견서가 있습니다. 심사의견서는 방통위 안건에 첨부되어서 심사위원회 의견으로 공식적으로 보고될 문건입니다. '14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14년 11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매일방송의 재승인 심사를 위해 재승인 신청서 검토, 의견청취, 심사평가 등을 하고, 다음과 같이 심사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목요일

입니다. 심사위원회 의견입니다. 사업계획 이행 실적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공익적 방송프로그램 편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제작계획 및 방송기술에 대한 투자, 소수자 보호 등과 관련한 사업계획 이행실적이 미흡함.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공익적 프로그램이 단순한 양적 확대에 그치고 있어 내용적 측면에서 진정한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방송사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야 함. 보도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높아 장르간 편성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으며, 콘텐츠 제작투자 확대를 통해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적정 수준의 재방비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방송기술과 관련한 인력, 장비 등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투자저조, 연구개발 인력부족, 연구소 미설립, 국내 방송장비 도입 실적 저조 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승인 신청서에 제시된 경영전략 등 향후 사업계획은 최초 사업계획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과거의 광고매출 실적에 비해 광고수입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현재 국내의 경제상황과 광고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음. 재승인 유효기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송법상 재승인 유효기간은 5년까지 부여를 할 수 있고, 2년의 기간에 한해서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재승인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승인 유효기간을 최소화하고, 매년 사업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다음은 심사위원회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이 되겠습니다. 재승인 조건은 종편PP의 위상을 확보하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재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콘텐츠 투자계획과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 재방비율을 성실히 이행할 것. 그리고 재승인 조건 다음에 권고사항입니다.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확보와 시청자 참여의 실질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제도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공익적 프로그램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진정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향후 수익성이 예측한 결과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자금 조달 계획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음은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심사위원회가 방통위에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과 관련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인 재승인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계획 이행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함. 다음 방송광고 판매시장 정상 유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국내의 경제 상황과 광고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재승인 신청서에 제시한 광고매출의 증가를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광고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독과 관련 사안 발생 시 제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아울러 방송프로그램과 광고의 명확한 분리,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정책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붙임> 내용은 위원님들이 작성해 주신 내용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다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통위 회의에는 앞부분까지 보고가 될 것이고 기존 3월에 저희가 재승인 심사 때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 부분은 방통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위원장님, 하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의결할 이 내용에 대해 자구수정은 가능합니까?

○ **심사위원장**

- 당연히 가능합니다.

○ **심사위원**

- 5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광고매출의 증가를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광고영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렇게 표현하시고 뒤에 '감독과 제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광고영업 그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감독과 관련 제재라는 것은 위법행위가 발생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광고영업'이라는 문구를 '위법성이 있는 광고영업 행위'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불공정하고 위법적인 성격이 있는 광고영업 행위를 할 때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 **심사위원**

- 의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문구로 고치고 고친 문구로 우리가 의결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렇지요.

○ **심사위원**

-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제안드리는 사항은 '광고매출의 증가를 위해 불공정하거나 위법적인 광고영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장**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방통위 측….

○ **심사위원**

- 위법이라는 말은 조금 그렇고 오히려 탈법으로 쓰시면….

○ **심사위원**

- ‘부당한’, ‘부당한’도 같은 의미입니까?

○ **심사위원**

- 현재 미디어렙법 금지행위에 보면 광고영업 시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나와 있고, 어차피 MBN이나 MBN 계열의 미디어렙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어떤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들에 대한 제재를 저는 의미한다고 봅니다.

○ **심사위원**

- 위법하면 당연히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 아니라 위법 개념과 조금 다른 중간에 있는 그런 것을 규제하라는 뜻으로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

- 흔한 표현으로 담벼락을 타고 다니는 선 위에서 이렇게 넘어가 있다가 단속이 들어오면 몸을 빼고, 넘어가 있다가 단속이 들어오면 몸을 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는 쪼개져 있지만 비율을 넘기지 않지만 나중에 정산해 보면 한 사람 것에 대한 비율을 넘겼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묘한 방법으로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부분까지도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위법적인’이라는 표현보다는 ‘탈법적인’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기는 합니다.

○ **심사위원장**

-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추가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광고영업’이라는 문구를 지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꼭 광고매출 증가를 위해 바로 불공정하거나 일단 위법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다가 그런 불법으로 넘어가는, 논리의 단계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구를 집어넣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광고매출의 증가를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광고영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불공정하거나 위법적인 행위에 대한’ 이런 식으로 구체적 논리의 단계를 그대로 서술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적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광고’가 어떻게 보면 전투적 용어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 업계에서는 이런 용어가 아주 상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려면 공격적으로 좀 더 해야 돼, 더 적극적으로 해’ 이 말 자체가 탈법·위법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친 나머지 탈법·위법으로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짓지 않고 살리되 위법·탈법이라는 말을 꼬리에 붙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심사위원**

- 지금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의 배치를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세 분 의견을 종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그러면 종합했을 때 그렇게 되면 '광고매출의 증가를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광고영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불공정하고 탈법적인 행위에 대한 감독과 관련 사항 발생시' 이런 식으로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

-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 **심사위원**

-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광고영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불공정하고 탈법적인 행위에 대한 감독과 관련 사항 발생 시 제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심사위원**

- 불공정과 탈법은 아까처럼 '거나'가 나을 것 같습니다. or로, 불공정하고는 and니까….

○ **심사위원**

- '불공정하거나 탈법적인'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러면 문구수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조금 애매합니다.

○ **심사위원장**

-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그러면 사회·경제적 약자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저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 **심사위원**

- 사회적 약자가 조금 포괄적이지요.

○ **심사위원**

-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 약자이기도 할 수 있으니까….

○ **심사위원**

-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사업계획서나 이런 모든 것에서 봤을 때 소수자라는 것이 그 카테고리로 묶었을 때 숫자가 많지 않은, 그래서 그들을 배제하면 시청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숫자가 아주 많은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이것이 공익적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 **심사위원**

- 보통은 '사회적 약자'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 와서 '소수자'라는 표현을 봤습니다. 보통 다른 방송에서도 배려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말을 대부분 씁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은 소비자단체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사실은 아까 변호사님도 제기했지만 우리가 심사의 처음 계획서에서부터 모든 부분에서 소수자라는 용어를 써 왔기 때문에 좀 전에 회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가지를 하나의 괄호로 해서 병기를 하는 것이 법 논리상은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 썼던 용어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용어를 그렇게 바꾸기로 정의하고 하면 괜찮은데 결과에 와서, 앞부분에는 전부 우리가 심사 제목에 다 소수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약자' 하고 괄호 치고 '소수자'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병기의 필요성은 논리상 있기는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이 의견에 100% 동감하는데 형식적인 논리상….

○ **심사위원**

-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안 들어갔지만 제 심사의견서에는 '소수자'라는 이상한 용어를 썼다는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공익적 프로그램의 '시청 소수자'라는 이상한 말이 들어가서 너희들이 공익적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공익을 실현하겠다는 것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이야기를 여기에 썼습니다. 모르니까, 그것이 뭔지 모르고 혼용해서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쓰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제가 볼 때에도 '소수자' 하면 질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양적으로 접근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심사위원**
- 의미상으로는 저도 100% 동감합니다.

○ **심사위원**
- 제 생각은 그래서 소수자는 양적인 카테고리이고 사회적 약자는 질적이니까 둘 다 쓰면 되지 않습니까?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이렇게….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
- 괄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괄호는 왜냐하면 동일한 카테고리에 부연하는 것이니까 그냥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로 하면….

○ **심사위원**
- 그것이 제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와 다른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봅니다. 하나는 양적인 표현이고, 하나는 질적인 표현이니까….

○ **심사위원**
- 극단적인 예를 들면 소수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강자일 수 있다는 것, 그런 케이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사회적 약자가 차라리 좋은 언어니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로….

○ **심사위원**
- 귀국한 해외동포, 그런 사람들은 소수자지만 상당히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고….

○ **심사위원**
- 그렇습니다.

○ **심사위원장**
- ‘또는’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예.

○ **심사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 **심사위원**

- 방송기술과 관련해서 3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국내장비 도입 실적 저조’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원래 계획서상 ○○%는 맞춰왔는데 제가 지적한 것은 연차별로 점차 퍼센티지가 ○○%, ○○%, ○%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왜 그런지 질문을 했고 해명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대답을 명쾌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맞춰온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어서 지적했던 것인데 사실상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어떻게 고치면 좋겠습니까?

○ **심사위원**

- 감소로 하면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연차별로 감소했다’ 그 부분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이것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가….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말씀하신 대로 저조를 ‘도입 실적의 연차적 감소’….

○ **심사위원**

- 예, 그것이 정확합니다.

○ **심사위원**

- 연차적으로 감소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보입니다. 내가 처음에 다 국산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 **심사위원**

- 제가 듣기 원했던 정답은 제가 볼 때는 장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국산화해서 살 수 있는 장비는 ○차 년도에 다 투자했고, ○·○차 년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런 정도의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기술국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은 안 했고 약간 회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의견서는 이런 부분이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취지에 맞게 지켜져야 한다고 그렇게 의견은 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명확

하게 저희가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것을 결론적으로 짓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수정사항 문구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 심사위원

- ‘국내 방송장비 도입 실적의 저조’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확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안 된 상황에서 표현하니까….

○ 심사위원장

- 이 분야의 전문가가 그렇게 보시는 것이니까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저조하지 않은 것입니까?

○ 심사위원

- 원래 계획서상의 비율은 그대로 맞췄으니까 저조하다, 안 하다는 다른 사업자들을 봤으면 얼마나 비율이 되는지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현재 다른 사업자 내용은 알 수 없으니까요.

○ 심사위원장

- 삭제하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심사위원

-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전부 부정적인 내용들만 되어 있는데 긍정적으로 잘한 부분도 반드시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부분들은 간과해도 될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형식상 우리가 여기에서 칭찬은 안 하지요.

○ 심사지원반

- 칭찬이 지난번 3월에 두 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신 의견들 중에 칭찬에 가까운 내용이 시청률 부분을 조금 언급하신 분이 한두 분 정도 계시고, 칭찬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없어서 안 적었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주로 심사소견서를 쓸 때에는 대개 트집 잡을 것으로 이렇게 꼬집는 내용만 담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칭찬하자고 하면 하루 더 연장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긍정적인 내용만 있는데 탈락했다, 아니면 부정적인 내용만 있는데 점수는 좋았다, 혹시 이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2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 방송의 공적책임과 위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 정비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는 잘 되어 있으나 이런 위원들을 일부러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양한 구성원이라는 이야기들까지…, 외부인사를 많이 영입하는 그런 구성원이라는 뜻의 '제도정비 및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런 식으로 문구를 더 넣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심사위원**

- 그 의미가 규정을 개정해서 그렇게 변화로 주라, 그러니까 아예 강제적으로 하게끔 규정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라는 뜻을 담은….

○ **심사위원**

- 담고 있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시청자위원회의 경우에는 이미 규정은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제 의견입니다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자체에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보면 외부인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자기 이해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문제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의 실효성 이런 부분으로 포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심사위원**

- 그것만 할 수 있으니까 이 안에 다 포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조금 명확하게 집어넣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제도의 정비와 실질화 정도로 넣으면 원하시는 목적은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

-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관련 규정의 개정(특히 구성원의 다양화)' 이렇게 명시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 **심사위원**
- 그렇게 하면 그것만 딱 부각될 수 있어서….

○ **심사위원**
- 그렇지요. 제도정비는 꼭 다양화뿐만 아니라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 **심사위원**
- 때로는 넓게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뭐가 잘못됐지?’ 하고 다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장**
- 이렇게 되면 뭔가 창의적으로 자기들이 알아듣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심사위원**
-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를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다 명시를 해 주면….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것으로써 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 **심사위원**
- 만약에 앞뒤를 대구(對句)로 하시려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및 운영의 실효성 담보 등 제도정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 **심사위원**
- 운영의 실효성이 아니라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 예를 들어 공정성위원회는 내부 사람들만 가지고 하는데 외부에서도 사람이 오는 것들….

○ **심사위원**
- 그런데 그것은 꼭 구성의 다양화만 아니고 회의 내용이나 혹은 그때 우리가 질문했던 것처럼 공익성 문제에 대해 규정상 이런 문제가 확 터지면 임시회의를 빨리 소집해서 사실확인을 규명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제도상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구체적인 무언가를 던지면 오히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 내면 고칠 수 있으니까 굳이 원하신다면 ‘제도정비 및 실질화’ 아니면 ‘운영의 실질화’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언어를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장**
- ○ 위원님!

○ **심사위원**

- 운영의 실질화, 실질적인 운영 이런 것….

○ **심사위원**

-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정비 및 운영의 실질화’ 이렇게….

○ **심사위원장**

- ‘실질화’라는 말을 씁니까?

○ **심사위원**

- ‘실효’라든지, ‘실효성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심사위원**

- 실효성 있는 운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지요.

○ **심사위원**

- 실질적, 실효적 운영….

○ **심사위원**

- 실효성 있는 실효적 운영….

○ **심사위원**

- 실효성 정도로 표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장**

-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한….

○ **심사위원**

- 제 생각은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편협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폐쇄적….

○ **심사위원**

- ‘폐쇄적이나 편협적인’ 이런 말로….

○ **심사위원**

- ‘내부 인사들만 폐쇄적으로’ 그 이야기가 맞네요. 폐쇄적….

○ **심사위원**
- ‘형식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 **심사위원장**
-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사항이 더 확실해집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 **심사지원반**
- 그러면 뒤의 운영의 실질화 부분은 빼는 것입니까?

○ **심사위원장**
- 예.

○ **심사위원**
- 그것은 빼고….

○ **심사위원**
- ○ 위원님이 수정된 내용을 한 번 읽어 주시지요.

○ **심사위원**
-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실현,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심사위원장**
- 확실하네요. 아주 공격적이네요.

○ **심사위원**
- 제도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시면 이 제도정비 자체는 어떤 정비적인 측면이지, 운영의 측면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앞뒤 단락의 뜻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실질적인 운영의 문제인데, 결론을 제도정비 쪽으로 가면 앞에 말했던 것과 뒤에 결론이 달라지니까….

○ **심사위원**
- 이 뜻은 그거거든요.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자기들이 구체적인 문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항의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내부 규정을 ‘외부인사를 참여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것이지요.

○ **심사위원**

- 그러면 실질적 운영을 강제하는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선을 저희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병적 생각이기는 한데 잘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한 답에 대해 잘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그것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좋은 답이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누가 감시하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은 2~3년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그것을 할 수밖에 없게 해 놓는다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결론을 보통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맺게 됩니다.

○ **심사위원**

- 그래도 앞 문구는 제도가 있으나 운영을 안 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결이 다시 제도를 바꾸면 그것도 운영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심사위원**

- 뒤에 운영을 한 번 더 넣어주면 어떨까요?

○ **심사위원**

- 그래서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정비와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

- 아니면 운영이라는 말만 써도 되고….

○ **심사위원**

- 그것이 단순히 권고적인 의미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 자체도 제도정비를 해야 이것도 권고적인 의미인데….

○ **심사위원**

- 그리고 운영도 실효성 있게 하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 **심사위원**

- 제도정비도 하고 운영도 그렇게 하라는 의미로 운영을 한 번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앞에 문제제기와 그것에 대한 해결….

○ **심사위원**

- 제도정비를 비롯한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심사위원**
-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실효성 있는….

○ **심사위원**
- 예, 실효성 있는….

○ **심사위원장**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제도정비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심사위원장**
- 괜찮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심사위원**
- 그리고 ‘보도프로그램 관련해서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으며’까지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으며 무엇을 개선하자는 이야기가 안 들어가 있어서 뒤에는 ‘재방비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하는 부분이 있어서 뒷말은 재방비율에 대한 권고인 것 같고, 앞에는 ‘보도프로그램 편성인데 불균형을 가지고 있으며’까지 해서 개선하라는 말을 한 번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저도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뒤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어떻게 고치면 좋겠습니까?

○ **심사위원**
- 편성 불균형에 대한 개선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방비율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이야기해 주어야지요. 예를 들면 앞에서 문제점을 한꺼번에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아서 편성 불균형이 있고, 재방비율이 최초 사업계획서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에 그 이후에 콘텐츠 투자 부분을 보강해서 재방비율은 낮추고, 편성 불균형을 해소하라 이런 식으로 문장이 들어가야지요.

○ **심사위원장**
- 이 항목은 보도프로그램의 과다한 비율, 그다음에 재방의 과다한 비율에 대한 것으로, 그러니까 보도, 재방 타깃은 2개가 별개지만 둘이 다 높다는 지적입니다. 한데 넣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가 많고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다….

○ **심사위원**

- 2개를 같이 넣는 것은 동의하는데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에 문제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 개선하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를 연결만 시켜 놓은 상태라서 사실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재방비율의 문제와 편성 불균형의 문제를 앞에 같이 제시하고 그다음 개선책에 대해 뒤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가장 쉽게 고치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아 장르간 편성 불균형 해소의 노력과' 이렇게 하면 문장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를 앞으로 부르지 않고 뒤쪽에 해법을 하려면 굉장히 문장이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심사위원**

- 저도 그것에 동의해서 사실은 지금 2개의 지적을 지면상 한 문장에 넣다 보니까 생긴 것이라서 감정적으로는 이렇게 놓아둬도 사실상 '아, 이 2가지를 지적한 것이구나' 취지가 이해되는데, 어법상으로 보면 하나의 문장으로 묶였으니까 2개의 문제가 생기는데 혹시 그것이 영 마음에 안 들면 앞부분은 편성비율이 높아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아 장르간 편성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으니….

○ **심사위원**

- 그냥 불균형 해소의 노력과….

○ **심사위원**

- 제가 볼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처음에 편성에 있어서는 '보도프로그램의 높은 비율 그다음에 재방의 높은 비율 문제가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지나치게 많은 2가지를 지적하고 이것 개선해라, 그것으로 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 **심사위원**

- 그런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전체 큰 제목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인데 이것은 향후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기재돼서 전체 맥락에서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행실적 항목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 **심사위원장**

- 과다한 보도프로그램이 끼치는 나쁜 효과가 편성 불균형입니다. 그러면 높은 재방비율이 초래할 나쁜 효과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 **심사위원**

- 편성비율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편성비율, 재방비율, 투자금은 3개가 묶여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도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높다는 것은 제작투자비가 적은 보도프로그램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편성비율을 조작하려면 오락프로그램을 재방송을 많이 돌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방비율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방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제작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 카테고리에 이 3가지가 나온 것은 논리상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는 것이 오히려 잘 묶어놓은 것이지요.

○ **심사위원**

- 묶어놓은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장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심사지원반**

-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드리면 처음에 사업계획 이행실적만 여기에 언급해야 하느냐 것이냐 하는 물음에 관해서는 사업계획상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이 되고 그것을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까지 들어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이 문장은 수정을 다시 해서 지금 쭉 다 말씀해 주시면 아까 수정하신 것까지 해서 정회를 잠깐 하시면 10분 정도 다시 정리해서 나눠드리면 다시 보시고 확정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제 생각에는 보도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높아 장르간 편성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고, 재방비율이 높아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 **심사위원**

- 실현되지 않고 있으므로….

○ **심사위원장**

-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콘텐츠 제작투자 확대를 통해 과다한 두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 **심사위원**

-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 **심사위원장**

- 콘텐츠 제작투자 확대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적정 수준이 해소책이 됩니다. 과다한 보도프로그램, 과다한 재방을 해소하는 방법이 콘텐츠 제작투자 확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문구를 조정하면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재방비율이 높아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다양성을 해친다?

○ **심사위원**
- 다양성을 저해할….

○ **심사위원장**
- 저해할 수 있으므로 콘텐츠 제작투자 확대를 통해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적정 수준을….

○ **심사위원**
- ‘편성비율·재방비율’ 이렇게 해야 앞에 대구가 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렇지요.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심사위원**
- 길게 안 하고 제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아 장르간 편성 불균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노력이 필요하며,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적정 수준의 재방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투자 확대가 필요함’ 이것은 조금 다릅니까?

○ **심사위원장**
- 콘텐츠 제작투자 확대하라는 것은 두 문제, 과다한 보도프로그램, 과다한 재방비율을 해결하기 위해 2개 다 걸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시한 것은 뒤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 **심사위원**
- 재방비율 앞에 아까 말씀하신 편성비율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정 수준으로 편성비율 및 재방비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이렇게….

○ **심사위원**
- 편성비율, 재방비율이 같이 붙어야 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이 위원님이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 **심사위원**
- 뒷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 수준의 편성비율·재방비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이렇게 뒤에는 2개가 같이 묶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 **심사위원**
- 앞쪽에서 ‘보도프로그램의 편성비율과 재방비율이 높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묶으면….

○ **심사위원장**
- 그래도 좋지요.

○ **심사위원**
- 그래서 그것이 ‘장르간 편성 불균형을 가져오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저해하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심사위원장**
- 그것 좋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데 그것이 보도프로그램의 재방비율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 **심사위원**
- 문장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보도프로그램의 편성비율과….

○ **심사위원**
- 그래서 앞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이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보도프로그램으로 오해할 수 있으면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과 전체적인 재방비율’ 이렇게만 고치면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 **심사위원**
- 차라리 그것을 넣으면….

○ **심사위원**
- ‘보도프로그램의 편성비율과 재방비율’이라고만 하면 보도프로그램이 재방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 **심사위원**
- 전체적인 것을 앞에다 넣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어느 분이 대표로 수정된 문구를 읽어주십시오.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 **심사위원**

- 제가 메모한 것은 아니어서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과 전체적인 재방비율이 높아 장르간 편성 불균형과 콘텐츠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맞습니까?

○ 심사위원

- 그렇게 하면 균형을 저해하는 것으로 되지요.

○ 심사위원

- ‘편성 불균형을 가져오고 콘텐츠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콘텐츠 제작투자 확대를 통해’

○ 심사위원

-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심사위원

- 그렇게 끊어도 되고,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적정 수준의 편성비율·재방비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심사위원장

- 좋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이것은 제가 해결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 건의사항에 아까 언급됐던 방송광고 판매시장 정상 유지 대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답변이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렙사를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답을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 심사위원

-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렙이라는 것은 일종의 버퍼를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고주와 매체사와 직접 만나지 말라는 버퍼를 두는 것이고….

○ 심사위원

- 그래서 이 명분을 가지고 렙사를 만든 것 아닙니까?

○ 심사위원

- 렙의 문제와 거래상의 문제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통위원회에서는 방송광고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방송법에서 규정한, 렙법이나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것까지만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종편의 광고 영업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넓게 감시하라는 권고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렙의 문제와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의 문제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광고주와 매체사와 이면에서

골프 치면서 또는 술 마시면서 구두 계약해 놓고 그것을 렙을 통해 사인만 해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심사위원**

- 그리고 종편 렙은 자기네들이 직접 출자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영렙이라 코바코를 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심사위원**

- 물론 그런 것을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명분에 대한 답으로 미디어렙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광고가 가능할까….

○ **심사위원**

- 말씀드린 대로 종편 미디어렙의 도입 취지는 거래를 공정하게 만든다기보다도 방송의 독립성이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 **심사위원**

- 방송프로그램과 광고의 분리, 이것이 사실 명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울러 이런 문구가 있으니까 가령 방송프로그램과 광고의 명확한 분리, 우리 렙사 한다 이렇게 되면….

○ **심사위원**

- 이 분리의 개념은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PPL 간접광고 규정이나 협찬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25% 금지하고 25% 이상 넘는 등등 있는데, 이것을 편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 내 광고인 간접광고나 협찬규정을 위반해서 과도하게 편법적으로 운영하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토막광고나 자막광고 쪽에서 일부 약간 그런 편법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을 분리하자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MBN뿐만 아니라 전 방송사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 **심사위원**

- 아까 '불공정하거나 탈법적인 행위에 대한 감독과 관련 사안 발생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탈법보다 오히려 편법,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

-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꼭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비정상적인 편법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

- 편법이 좋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은 탈법 and 편법입니까? 아니면….

○ **심사위원**
- 그냥 편법으로 하시지요.

○ **심사위원장**
- 편법,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의견서는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의결토록….

○ **방송지원정책과장**
-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하셨다가 저희들이 고쳐서 안건을 다 보시고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 **심사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심사지원반**
- 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이행실적이라는 동그라미 세 번째 줄에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보호 등’ 이렇게 표현이 들어갔고, 그 밑에 두 번째 줄 ‘형식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 등 제도정비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심사위원장**
- 거기에 ‘등’이라는 것이 있는데 ‘관련 규정의 개정 등 제도정비를 비롯한’ 이것을 읽으려니까 숨이 가쁜데 어디에서 끊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개정과, 개정 등, ‘관련 규정의 개정과 제도정비를 비롯한’, 거기에 ‘등’이라는 것이 딱 들어가니까….

○ **심사위원**
- 그러면 ‘이의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운영 관련 규정 개정’을 빼고 ‘제도정비만’…, 그러니까 제도정비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심사위원**

- 조금 의미가 다른 것이 규정을 직접적으로 개정해서 나중에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규정개정 쪽이 보다 더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입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을 다 집어넣으려면 '등'이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 **심사위원**

- 보통 읽을 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 등 제도정비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 **심사위원**

- 요약문이니까 아무래도 약간 어색함이 있더라도….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 **심사지원반**

-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과 전체적인 재방비율이 높아 장르간 편성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어 콘텐츠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콘텐츠 제작투자 확대를 통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적정 수준의 편성비율·재방비율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심사위원**

- 그런데 우리 의도와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도프로그램의 재방비율·재방비율 때문에 편성 불균형이라는 것과는 조금 맞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재방비율이 높아서 편성 불균형이 왔느냐, 그 문제와 다르게 느껴집니다.

○ **심사지원반**

- 아까 2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아 장르간 편성 불균형을 가져 오고 있고, 재방비율이 높아 콘텐츠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하시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 **심사위원**

- 그 원인과 결과가 그것이 맞는 말씀인데 지금은 달라 보입니다.

○ **심사지원반**

- 그러면 후자로 수정을 할까요?

○ **심사위원장**
- 후자로 하는 것이 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런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보도프로그램이 많아서 장르간 편성 불균형이 오고, 재방비율이 높아….

○ **심사위원**
-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은 것이 콘텐츠의 다양성 저해에도 연결은 됩니다. 보도프로그램이 많으면 다양성이 줄어드니까요.

○ **심사위원**
- 장르간 편성 불균형이라는 것이 재방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그것은 그렇기는 한데….

○ **심사위원장**
- 무리가 없으면….

○ **심사위원**
- 크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문장은 마음에 들지 않은데 요약문이라서 이것 저것 들어오니까….

○ **심사위원장**
- 그러면 가져오고 있고….

○ **심사위원**
- '있어'를 없애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장**
- 가져오고, 그렇지요. '있어'가 빠지거나….

○ **심사지원반**
- 읽어보겠습니다.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아 장르간 편성 불균형을 가져오고, 재방비율이 높아 콘텐츠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하는 똑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 **심사위원**

- 그렇게 하시지요.

○ **심사위원장**

-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심사지원반**

-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소 미설립 이후에 국내 방송장비 도입 실적 저조를 뺐습니다. 4페이지 맨 위입니다. 연구소 미설립 다음에 원래 국내 방송장비 도입 실적 저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예”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다음 재승인 조건 <2>번 동그라미 재승인 조건 박스 안에 두 줄이 있는데 거기에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에서 ‘보도’를 뺐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종편PP의 위상을 확보하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재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콘텐츠 투자계획과 프로그램 편성비율·재방비율을 성실히 이해할 것’

○ **심사위원**

- 재승인 조건은 아직 우리가 이야기 안 한 것 아닙니까?

○ **심사위원**

- 이야기 안 했는데 바꾸는 김에 오·탈자와 몇 개만 일단 우선적으로….

○ **심사지원반**

- 5페이지입니다. 방송광고 판매시장 정상 유지 대책 필요 부분에 ‘국내외 경제 상황과 광고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재승인 신청서에 제시한 광고매출의 증가를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광고영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불공정하고 편법적인 행위에 대한 감독과 관련 사항 발생 시 제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그다음에 <붙임>자료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임>자료 2페이지입니다. 맨 위 동그라미에 ‘억원’ 떨어져 있던 부분을 붙였고, 원래 있던 부분에 문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구개발 투자실적은 ○○억원에 그치고 있으며’로 ‘그치고 있으며’를 추가했습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에 원래 ‘극히 미약하고’라고 되어 있었는데 ‘극히’ 부분을 삭제했고, 그 밑에 동그라미에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우리나라 방송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부탁드림’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에 있는 내용을 약간 수정했는데 향후 ○○○○년까지 국산장비 도입 비율을 ○○%로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산장비 산업 활성화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이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므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오·탈자 몇 개를 수정했고, 나머지 사항은 전과 동일합니다.

○ **심사위원**

- <붙임> 2페이지를 보시면 ‘향후 5년간 계획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어서 실현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나’로 되어 있는데 ‘보이고’로 바꾸는 것이….

○ **심사위원**

- ’나’, ’나’가 두 번 되어 있습니다.

○ **심사지원반**

- 2페이지 다섯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두 번째 줄에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어서 실현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나’를 ‘보이고’로 수정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같은 페이지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가 그 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예.

○ **심사위원**

- 그러면 붙이는 것이 낫지요. 동그라미를 없애는 것이 낫지요.

○ **심사위원장**

- 그렇지요.

○ **심사위원**

- 이것이 불분명하고 그 밑에도 ‘또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는 동그라미들이 개별적으로 각각 독립적이라고 느꼈는데 그 표현이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심사지원반**

- 문장을 세 번째 동그라미는 ‘또한’을 없애고 ‘향후 투자계획인 UHD 분야는’으로 수정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문장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만 그렇습니까?

○ **심사위원**

- ○○○억원 수준으로 다음에 쉼표를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도록’를 삭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내용을 윗줄에 붙이는 것입니까?

○ **심사지원반**

- 앞에 동그라미 부분은 한 줄 집어서 ‘-’로 처리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이것도 억원으로 수정해야 하지요? ○○○억원….

○ **심사위원**

- ‘○○○억원 수준으로’라고….

○ **심사위원**

- ‘수준이고’가 맞는 것 아닙니까?

○ **심사위원**

- 이것은 제가 썼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는 앞에 문장은 없어져서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그것은 지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발표할 때 말씀하셨던 이유를 제가 들었던 것이고 ‘이러한’에서 ‘하더라도’를 지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그러면 향후 5년간 투자계획 앞에 주체되는 투자계획이 들어가야지요.

○ **심사위원**

- 무엇에 대한 투자계획인지….

○ **심사위원**

- 방송시설 투자계획이지요.

○ **심사위원**

- 향후 ○년간 방송시설 투자계획이 ○○○억원 수준이고….

○ **심사위원**

- 원을 넣고….

○ **심사위원**

- ○○○억원 수준이고, 이렇게 ‘이고’를 넣으면 됩니다.

○ **심사위원장**
- 또 없으십니까?

○ **심사위원**
- 향후 5년간 계획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겠습니다’ 해서 상대적인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심사위원**
- 상대적인 것은 그 직전의 계획에 대한….

○ **심사위원**
- 승인계획에….

○ **심사위원**
- 그러면 ‘승인계획 대비’ 이렇게 써야겠네요.

○ **심사위원**
- 승인계획에 비하여….

○ **심사위원**
- ‘승인계획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 **심사위원**
- 백서를 읽어보니까 전부 ‘향후’ 이렇게 쓰여 있던데요.

○ **심사위원**
- ‘승인계획에 대하여’입니까, 아니면 ‘실적에 대하여’입니까?

○ **심사위원**
- 실적이지요.

○ **심사위원**
-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 **심사위원**
- ‘과거 실적에 비하여’라고 해야겠네요.

○ **심사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심사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보고의 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심사위원**
- 재승인 조건 권고사항은 논의 안 합니까?

○ **심사위원장**
- 아까 다 했지 않습니까?

○ **심사위원**
- 조건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 **심사위원장**
- 우리가 아까 다 오픈해서 했습니다.

○ **심사위원**
- 저는 의견을 이야기 안 했는데, 저는 심사위원회 의견서만 하는 줄 알고 의견만 이야기했습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재승인 조건에서 종편PP 위상 관련해서 성실히 이행할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종편의 가장 문제점은 공정성과 공익성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걸지 않고 그냥 권고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전의 재승인 조건에서도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 확보 마련을 위해 재승인 의결일부터 2개월 이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운영실적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편성비율·재방비율을 성실히 이행할 것'은 조건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권고사항일 뿐이지, 조건을 걸기 위해서는 성실히 이행해서 어떻게 보고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권고사항에 있는 공정성·공익성 부분은 재승인 조건으로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지원반**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심사했던 종편3개사와 보도1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백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사항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간 형평성들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같이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재승인 조건에 부여된 콘텐츠 투자계획 부분도 기존 조건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렇게 조건이 부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MBN에 대해 동일한 조건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재방비율 역시 동일하게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3개 사

업자에 대해서 공히 부과했던 재승인 조건은 MBN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같이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로 더 조건을 부과하실 수 있는 내용은 의견서 주신 부분에서는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재승인 조건이 6가지가 더 추가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방송지원정책과장

- 공적책임과 공정성 확보 부분은 저희들이 종편 3개사 했던 부분과 똑같이 부과할 것입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4. 폐　　회

○ 심사위원장

- 그러면 ○○○ ○○○ 이하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속기사도 매일 출퇴근하시면서 애를 많이 써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료 심사위원님 열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신이 조금 피로했었는데 여러분들과 3박 4일을 하면서 아주 모든 것이 맑아지고 저로서는 더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동감이기를 바라고, 앞으로 건강하시고 언젠가 또 우리가 지나치다가 또는 의도적으로 한 번 만날 날이 있으리라고 보고 여러분들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폐회】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 의견청취 속기록

■ 일 시 : 2014. 11. 11. (화) 13:5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1층

방송통신위원회

회 의 록

□ 회 의 명 : 종합편성(MBN)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 의견청취

□ 일 시 : 2014. 11. 11.(화) 13:50

□ 장 소 : 코바코연수원 화합관 1층

□ 심사위원 : 오택섭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이태원 (법무법인 목성 변호사)
임철승 (법무법인 정상 변호사)
오태원 (경일대 경찰학과 교수)
전진근 (열린공인회계사 감사반)
김익찬 (삼정회계법인 이사)
박인배 (성인회계법인 이사)
최동준 (ETRI 케이블방송연구실 실장)
한동석 (경북대 전자공학부 교수)
조태임 ((사)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김경의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및 성남지부 대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15인)

종합편성(MBN)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 의견청취 속기록

【13시 50분 개회】

○ **심사위원장**

- 바쁘신 일정 중에도 멀리 이곳까지 와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직접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본 의견청취의 비공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일방송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에 앞서서 오늘 발언한 전 과정은 속기와 녹음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매일방송 대표자이신 ○○○ 님 맞습니까?

○ **㈜매일방송 대표자**

- 예, ○○○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편성책임자이신 ○○○ 님 맞습니까?

○ **㈜매일방송 편성책임자**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최대주주를 대표해서 오신 ○○○ 님 맞습니까?

○ **㈜매일방송 최대주주**

- 예, 맞습니다.

○ **심사위원장**

- 고맙습니다. 오늘의 의견청취는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 신청법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서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 심사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의견청취에 앞서서 참석자는 이미 배포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셨습니다. ○○○ 대표님, 맞습니까?

○ **㈜매일방송 대표자**

- 예, 작성했습니다.

○ **심사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가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신청법인의 대표자께서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3분 정도의 모두발언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방송 대표자**

-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일방송 MBN의 ○○○ 대표입니다. 이렇게 여러 일정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MBN의 재허가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편 출범 이후 MBN를 꾸준히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재허가 절차를 진행해 주신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MBN은 잘 아시다시피 종편 출범에 앞서 17년간 보도채널 경험이 있는 전속 채널입니다. 그만큼 종편이기에 앞서 선도채널로서 모범이 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언론에서 품격과 기업인에서의 지속가능성도 조화시켜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MBN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28개월 연속 월간 신청률 종편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방송 최초로 월 시청률 1%를 지난 6월에 돌파했습니다. 이는 케이블TV 20년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국 초기에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무슨 애국가 시청률이라는 그런 소리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영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아서 콘텐츠 투자가 당초 계획보다 부진했고, 보도비율이 높다든지 재방비율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종편의 초기 경영 여건을 감안할 때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이는 MBN의 책임자로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 MBN은 나름대로 시청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방송계 발전을 위해서도 조금이라도 기여할까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황금알>, <동치미>로 대표되는 인포테인먼트 장르를 개척했고, <나는 자연인이다>, <사노라면>과 같은 힐링 교양을 저희가 개척해서 이것들이 지금 4~6%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성에 있어서도 낮에는 뉴스, 밤에는 제작이라는 하나의 틀을 마련해서 이는 다른 종편에도 기본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낮 시간대 방송은 50~60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고령층에게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종편의 편향성에 대해 저희들은 나름대로 반성할 부분이 무엇인가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조사에서 나름대로 가장 공정한 방송이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심의 제재건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편의 출범 목표 중 하나인 외주제작사의 발전에도 기여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주제작사의 상생 노력을 위해 저희들이 외주제작 비율을 상당히 높이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0회가 넘는 프로그램이 8개가 됩니다. <황금알>, <동치미>, <천기누설> 등입니다만 이런 것은 그만큼 외주제작사와의 상생 협력관계가 오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개선과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투자나 방송장비 투자를 더욱 늘려야 한다, 특히 보도비율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이런 것은 저희의 숙제라고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치열한 경쟁과 힘겨운 방송시장 여건 속에서 MBN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위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특히 지적과 조언에 대해서는 저희 MBN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또한 질문 하나하나에 성심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거듭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사위원장**

- ○○○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심사위원 여러분께서 ㈜매일방송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과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매일경제와 MBN은 <지식포럼>, 즉 국제암엑스포 등을 개최해서 국가 미래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성이 다소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전문가 집단이나 특정 집단이 아닌 소수 계층, 경제적인 약자 등 많은 일반 국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범국민운동으로 이러한 이슈들을 이끌어나갈 계획은 없으신지요?

○ **㈜매일방송 대표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식포럼이나 암엑스포를 높이 평가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종합편성채널을 시작한 이래로 시청자의 반응을 보면서 시장대응형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가 넘는 높은 시청률을 보였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특정 계층, 예를 들어 시청 연령층이 50~60대에 집중된다는 약간 편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이 시청 연령층을 20~40대까지 늘린다는 노력을 기울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했다시피 소수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올 4월에 일어나서 국가적 참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로 가야겠다, 그런 것을 저희 MBN이 어떻게 만들면 좋을 것인가? 매일경제신문이 어떻게 공헌할까 고민한 결과, 지난달부터 '안전 대한민국 고고(GoGo)'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현재도 인천에서 그 캠페인 발대식을 합니다만 안전은 지키고, 사고는 줄이고라는 고고(GoGo)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안전 분야에 대해,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저희들이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젊은이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야지만 콘텐츠 투자에 앞서서 여러 가지 기여할 것이 무엇인가, 공헌할 것이 무엇인가 검토한 결과, 예를 들어 골프 꿈나무 육성이나 야구 꿈나무 육성 등 그런 청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스포츠 대상도 저희들이 최초로 제정해서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공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에서도 <사노라면>, <숨>'은 지역 특산물을 소개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고 있고, 지역에 무슨 볼거리가 있는가, 놀거리가 있는

가를 간접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계지식포럼과 더불어서 MBN 자체적으로는 2월에 MBN 포럼, MBN 뉴스포럼이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올 2월에도 했고, 내년에도 2월에 MBN 뉴스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만 여기에서 내년의 구상을 하나 설명드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Teen Choice Award' 10대나 20대가 볼 때 분야별로 우리 시대의 영웅이 누구인가? 예를 들어 기업가, 과학자 등 그런 분야의 상도 제정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소수자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프로그램 반영에도 계속 할 것이며, 그리고 다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저희들이 보도채널 때부터 <소나무> '소중한 나눔 무한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미 7년째 하고 있고, 수억원의 모금을 해서 약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심사위원장**

-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드릴 말씀은 오늘 저희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모두 한 14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드리는 답변에 대해 그 핵심을 찔러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매일방송 대표자**

-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MBN은 2013년도 이행실적 점검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방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년까지의 향후 계획에서도 ○○%를 상회하는 높은 재방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방비율이 높다는 것은 신규 콘텐츠 제작투자가 낮다는 것인데 종편 도입 목표인 방송의 다양성과 시청권 확대,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재방비율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있으신지, 그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방송 대표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방비율이 높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콘텐츠 투자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경영성과에 따라 그런 계획은 나름대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뉴스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일반제작 예능이나 교양은 14개 정도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개 정도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히 본방비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방비율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밤 10시와 11시대에는 각각 다른 프로그램의 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대에는 힐링 교양프로그램에 띠 편성이 되어 있고, 밤 11시대에는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이 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띠 편성을 앞으로는 저녁 8시 반대 띠 편성으로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프로그램 투자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말 토요일·일

요일 저녁 6시 20분에 드라마 띠 편성을 이미 시험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이미 <천국의 눈물>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해서 그 시간대에 띠 편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면 주말드라마 띠 편성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재방율이 낮아질 것입니다.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계획서상 재방송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반드시 실현 가능한 목표, 이것은 저희들이 최초 종편 사업계획서에 지나치게 높은 포부로 한 데 따라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반성에 따른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다소 수치가 높게 나타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이해말씀을 드릴 것은 종편을 하다 보니까 재방이라는 것이 과거의 콘셉트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시청자의 반영도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른바 본방을 하고 난 뒤에 재방을 할 때 그 재방의 프로그램 시청률이 다소 본방보다 높게 나오거나 결코 낮지 않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채널 시대, N스크린 시대의 하나의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포맷과 단말기를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재방이라기보다는 순환편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편성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편성에 있어서 여러 분야가 균형을 이루지 않고 보도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습니다. 최초 승인 시 계획했던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약 ○○~○○%였으나 실적을 보았을 때 2012년 ○○%, 2013년 ○○% 등 훨씬 높습니다. 앞으로 다른 분야의 편성비율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특히 예를 들어 ○○○○년부터 오락프로그램의 하나인 드라마의 경우 본방비율을 ○○%로 계획했는데 ○○○○년 현재 전무한 상태에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방송 대표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비율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초기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노력을 해 오고 있는 분야입니다.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2012년, 2013년에 보도비율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도 2012년 보도비율이 높았던 것은 저희들이 보도채널의 경험에 비추어서 잘한 것보다 해 보자고 해서 보도를 늘렸던 것도 있고, 그리고 당시의 정치적 상황, 이른바 2012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보도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보도비율을 낮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 1월~8월까지 보도 편성비율은 ○○%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까지 낮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도비율을 낮출 계획이며, 저희들이 ○○% 내외의 보도비율을 가져갈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보도와 예능, 교양의 3각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3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교양이 그중에 낮습니다만 3분의 1씩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3각

축을 보도, 예능, 교양, 드라마 4각축으로 발전시켜서 보도비율을 ○○% 내외, 그리고 예능·드라마를 ○○%까지 가져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드라마 부분에서 지적하셨다시피 2014년 저희들이 보고서를 낸 시점에 8월 현재까지는 하나도 편성이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10월에 이미 <천국의 눈물>이라는 드라마를 시작해서 지난주에 10회까지 했습니다. 지난주에 2%가 넘는 시청률을 높여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이런 드라마의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 드라마 편성을 계속할 구상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업계의 현실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초기에 드라마 편성을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청자의 반응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고, 또 종편 4개사가 한꺼번에 생기다 보니까 이것은 여담이지만 출연자들의 출연자 요구가 2배로 높아진다든지 그런 현실적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상황이 조금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네 번째 질문입니다. MBN의 주요 프로그램 출연자가 지나치게 중복되거나 겹치기 출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MBN의 차별화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출연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겹치기 출연을 억제할 수 있는 MBN의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매일방송 대표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겹치기 출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가지 분야에서 다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도와 제작은 현실적으로 마찬가지이지만 먼저 보도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질문에 나왔다시피 보도비율을 낮춤으로써 이런 외부 출연자의 중복출연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기존 방송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노하우를 가진 경험자들을 출연 교섭하고 있어서 DB 구축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나름대로 출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의 반응, 시청률이 높고 낮음을 봐서 출연을 계속한다든지, 중도에 하차시킨다든지 그런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로입니다만 시청자의 반응이 어떤 출연자는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출연자는 시청률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청률로 먹고 사는 방송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청률이 높은 사람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제작 부문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보자고 해서 인포테인먼트나 힐링 교양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에서 그다지 출연하지 않고 있는 출연자를 교섭해서 출연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높은 시청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출연자들에 대해 역시 타 종편에서 출연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뜻만이 아니고 다른 종편의 경쟁적인 출연 교섭에 의해 출연자가 중복되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방금 지적했다시피 따라서 출연자에 대한 DB, 그리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끊임없이 각 업계, 학계뿐만 아니라 의학계, 과학계 그리고 기존에 있는 방송계, 특히 신문기자 출신까지 포함해서 이런 DB를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출연자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했다시피 출연자 중복이 안 되고 시청자들로부터도 그에 대한 약간 질책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보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으로 비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부에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해서 공정방송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금번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전문가 섭외 때 사실확인 시스템과 보도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나 출연자 섭외 및 검증시스템의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 **㈜매일방송 대표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 제작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보도에 있어서 프로그램 내용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방송의 중대한 책임이라고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편이 한꺼번에 경쟁하다 보니까 과다경쟁으로 인해,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 부족이나 체크시스템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든지, 이것에 따라 심의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재난보도 등 이런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공정보도를 하고, 올바른 방송보도를 할 것인가, 저희 시스템을 새롭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공정보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보도위원회는 대표인 저와 주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공정보도위원회 위원뿐만 아니고 기자 3단체라고 합니다만 공정보도위원회, 노조, 기자협회 3단체장을 항상 제가 정기적으로 각각도 만나지만 분기에 한 번씩은 식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보도위원회의 건의사항은 제 책상에 메모를 해서 놓고, 이 사람들이 단순히 보도뿐만 아니고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 제가 책상에 놓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월호 참사 보도 때 나타났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재난방송보도 매뉴얼 준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모셔서 이미 3차례 교육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새로운 사건·사고가 날 때 교훈이 돼서 잘 반영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의 긴급한 상황이 났을 때 현장에 있는 사람을 인터뷰할 때에는 사전녹화를 해서 체크하고, 그리고 사전 인물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공익적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 대비 평균 ○○%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 음악프로그램, 스포츠 중계도 공익적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 있고, 심지어 <추적 사각지대>는 중복으로 카운팅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익적 프로그램과 소수자 프로그램에 대한 실적 부풀리기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일방송 대표자

- 먼저 아까 <추적 사각지대>는 중복 게재됐다는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체크해서 그런 중복 부분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했다시피 공익적 프로그램이 ○○% 이상 된 것이 숫자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적 프로그램은 이른바 보도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보도, 음악, 스포츠중계까지 되어 있다는 점보다는 방금 지적했다시피 진짜 공익적 프로그램이냐 그 여부에 따라 앞으로는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적 프로그램에 대해 키워드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 힐링에 대해 제작을 예능이나 교양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관해서는 <엄지의 제왕>, <천기누설>을 하고 있습니다. 힐링은 <나는 자연인이다>, <사노라면>, <숨> 같은 이런 생활 속의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 장인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지'자입니다만 지역의 활동을 소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인가? 저희들이 <사노라면>, <숨> 같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역발전 포럼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도채널 할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은 부산의 「오션 이니셔티브」라는 발전보고서를 만들어서 포럼을 부산시와 공동으로 했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려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스포츠 대상은 다른 언론사에서도 하지 않고 있는 저희 MBN만의 특화된 것이고, MBN 여자골프도 하고 있고 여성에 대해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수치를 높여서 공익적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기여하고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사회안전에 기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 심사위원

- 2011년~2014년까지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보면 경제단체 추천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 여성단체, 언론단체,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시청들과 소통하기 위해 시청자자문단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전문가 자문단 역할, 구성, 명단만 있습니다. 시청자 자문단이 어떤 기준에서 구성되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매일방송 대표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자위원회가 경제단체 위주로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편성채널을 하기 전부터 시청자위원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전속채널이다 보니까 일부 위원들께서는 기존에 했던 분들이 그대로 위원으로 활동을 계속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경제단체의 구성원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했다시피 환경단체, 시민단체, 언론단체가 적다고 하는데 언론단체에서는 나름대로 몇 분이 와 계시고 환경단체나 소비자모임에 계신 분도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사회 각계계층에 계신 분들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좀 더 분

야와 범위를 확대해서 다양한 계층의 그리고 시청자위원 수를 다소 늘리더라도 그런 위원을 확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자문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자문단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과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와의 눈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높이를 어떻게 하면 시청자에 맞출 것인가 그런 취지에서 시청자 자문단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예능프로그램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든 PD들은 젊은 PD이고 남녀가 섞여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여성 위주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50~60대의 시청자가 많다면 그 눈높이에 맞는 시청자 자문단을 구성해서 활약해 보자는 생각에서 시청자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시청자자문단과 별도로 시청자 의견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한 방송을 위해 앞으로는 'Watching MBN'이라는 모니터링단 한 30명을 연령별로 구성해서 균등 배분해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도와 제작 각각 하나씩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요원이 담당을 해서 저희에게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 심사위원

-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년간의 공익프로그램 중 국가 어젠다와 관련해서 창조경제, 고졸취업, 한류문화 확산, 저출산 해소, 지역균형발전을 기초로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했다고 사업계획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급변하는 현재의 트렌드를 잘 반영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특별히 내세울만한 대표적인 프로그램도 찾기 어렵습니다. 향후 5년간의 계획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또 현재 ○○%대의 공익프로그램을 향후에는 ○○% 이상 제작·편성할 것이라고 제안했는데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익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새로운 전략과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방송 대표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MBN과 MBN의 모회사인 매경미디어그룹은 국가 어젠다를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제시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3월에 국민보호대회라는 형식을 빌려서 국가 어젠다를 발표합니다. 올해 3월에는 이른바 IOT(사물인터넷)에 대해 저희들이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고, 한류에 대해 한 적이 있었습니다. 농협에 대해 요즘은 일반명사가 됐습니다만 농업혁명을 위한 아그리젠토(Agrigento) '농업은 6차 산업이다' 그런 발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출산 역시, 저희들이 앰커브(M-curve)라는 '우먼코리아 혁명보고서'도 낸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활동은 꾸준히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방송프로그램에서 구현하는 데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시청률에 기반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아직 시청률이 그다지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민간 상업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시청률에 기반한 것이 광고수입으로 이어지고 광고수입이 곧 투자비로 연결되

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적자인 형편에서 공익적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내보내지 못하다고 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로 높인다는 것들은 저희들이 단순히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일반론적인 사회 공익적인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계상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세 시대에 맞는 인포테인먼트, 헬스테인먼트 건강 관련 등도 나름대로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수치에 집어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과 해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청자와 여기에 계신 심사위원님들이 인정해 주는 공익적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지 않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프로그램상으로 만든 것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경미디어그룹 내에서 국가 어젠다에 대한 이슈나 개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진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심사위원장

- ○○○ 대표님, 아주 혼자서 고군분투하시는데 목이나 축이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매일방송 대표자

- 감사합니다.

○ 심사위원장

- 그러면 아홉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방통위의 정책과제에 따르면 지상파의 광고총량제 및 중간광고가 검토됨에 따라 광고시장은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광고단가의 하락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법인은 시청률 증가를 낙관적으로 예상하면서 ○○○○년 이후 연평균 ○○% 이상의 광고매출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 ㈜매일방송 대표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광고시장 여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론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방송광고시장이 인터넷 광고에 추월을 당했든지 방송광고시장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에서 다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새로 지금 시작한 신생 종편에게는 굉장히 경영적 압박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여러 가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 달성 가능성한 수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세로 볼 때 약간은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 현재 광고주 숫자가 정확히 ○○○개였습니다. 몇몇 지상파의 경우도 광고주 숫자가 ○○○여개 내외입니다. ○○○여개 내외는 과거에는 더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방송광고시장이 적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수치이기는 합니다만 이는 방송 광고주 수에 있어서, 저희

들이 유치 광고 수에서는 지상파의 ○○% 이상에 육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광고단가는 매우 낮습니다. 시청률은 민영방송 2분의 1까지 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광고단가는 10분의 1, 5분의 1도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 숫자는 늘지만 광고단가에서 조금 약하기 때문에 지금 애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주 숫자가 늘고, 시청률 2%로 높아감에 따라 광고단가가 조금씩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아주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광고주의 업종입니다. 이른바 지상파가 독식해 오고 있던 여성이나 화장품, 외국계 광고, 음료, 스포츠 의류 등 이런 광고업종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 주느냐? 종합편성채널, 특히 MBN이 시청률이 높아감에 따라 마케팅 채널로서 MBN이 광고주로부터 인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상파에 대항할 수 있는 마케팅 채널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시장의 반응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미 광고의 수입은 ○○% 이상 충분히 증가했고, 이 추세는 내년에 가면 어쩌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는 가장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수입이 늘어야만 콘텐츠 투자비가 늘어납니다. 콘텐츠 투자비가 늘어나야만 이른바 재방송 비율도 줄고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의 수입을 늘리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인식하고 마케팅 채널로서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열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심사위원**

- 열 번째 질문입니다. 자료에 제시된 사업성 평가결과, 향후 ○○년 동안의 내부수익률이 ○○%로 주주 및 채권자의 요구수익률인 ○○%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관적인 추정손익에도 불구하고 재무적인 관점에서 종편사업은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경영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 **㈜매일방송 대표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기업의 가치, 이익률에 많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적자를 벗어나서 수지균형을 이루고 흑자를 달성해서 이른바 저희들에게 이런 투자해 주신 주주님들께 이것을 갚아드릴 것일까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올해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내년, 내후년이면 반드시 흑자를 이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흑자를 이룬 다음에 저희들이 수익의 범위는 시청률과 이른바 수입의 증대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를 것입니다. 지금 제시해 주신 수치 ○%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저희들의 기대는 지금 ○○%를 넘어서 광고라는 것이 시청률의 후행성이 있기 때문에 그 후행성의 추격속도가 빨라져서 이른바 수익의 증가폭이 더 늘었으면 하는 나름대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장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낙관적 근거만을 가지고 수치를 만들지 못해서 시장기대수익률이 일반적인 것보다 낮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 MBN은 1995년부터 보도채널을 시작했지만

당시 출범했던 PP 유료방송 중에 오너십이 바뀌지 않은 유일한 채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DCN이 OCN으로 바뀌었다든지 주인이 또 CJ로 넘어갔다든지, 어떤 채널의 경우 자본금이 잠식돼서 국가가 거기에 출자를 계속했다든지, 39쇼핑이 무슨 쇼핑으로 바뀌었다든지 하는 오너십이 초기의 PP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오너십이 바뀌지 않고 주인이 바뀌지 않은 유일한 채널이었습니다. 이런 점은 바로 저희들이 경영의 안정성이나 경영의 성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시장에서 기대한 만큼의 수익과 안정성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것을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열한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심의 규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확하게 질문의 취지에 맞는 답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저작물, 대본 심의에 대해서는 절차만 규정하고 심의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가요, 뮤직비디오 심의기준에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것'이라는 조항은 자의적인 해석이 있는 불명확한 조항인데 이에 대한 회사의 생각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셋째, 출연제한 심의에서 위법, 비도덕성의 판단기준으로 되어 있는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행위'라는 부분 역시 자의적 적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회사의 생각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매일방송 대표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규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편성채널을 시작하면서 단순히 보도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장르를 했기 때문에 경험 부족에 따라 여러 규정들이 애매모호하게 됐다는 지적을 받은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3가지 중에 마지막 출연제한 부분에서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부분을 악용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능이나 교양 부분에서 일부 그런 발언이 나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종편 출범 이후에 ○○명 정도의 출연자에 대해서는 출연을 중지시키거나 경고를 한 실제 사례가 있지만 지금 경험을 쌓아가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이 나왔을 때 그때 사례를 다 적시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청소년에게 나쁜 유해물에 대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19금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가장 적습니다. 19금 프로그램이 거의 ○%도 안 됩니다만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청률을 높이고 시청자층을 넓혀 가기에 따라서는 다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지적하신 대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 대본 절차 규정, 심의규정을 말씀하셨는데 대본은 물론 다른 일반 예능도 있습니다만 드라마가 있는데 저희들이 드라마 투자가 아직 실제 많지 않아서 이에 대해 부족한 점은 인정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런 제작 프로그램에 있어서 자체적인 저작물을 가지거나 자체적으로 실제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제작사

와의 공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본은 외부제작사에서 만들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자체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도 약간 시스템이 미흡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계속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열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열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편성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편성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하면 '회사가 위촉하는 각계의 시청자 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법인은 그동안 편성위원회에 시청자 참여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시청자 참여를 필수적인 것으로 보장할 생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매일방송 대표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편성위원회는 현재는 내부 위원들만 참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만 편법적으로 하기보다는 방송 초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청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편성전략이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자주 바뀐 적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시로 시장 대응력을 하다 보니까 외부인사와 함께 항상 논의할 수 없는 시장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금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해서 아까 시청자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편성위원회와 별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청자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하고, Watching MBN 등 그런 모니터링단도 구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적하신 편성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률이 높아가고 시청자의 관심사가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필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시청률이 2%를 6월부터 7월, 8월 3개월 넘었지만 2%가 안정적으로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열세 번째 질문입니다.

○ 심사위원

- 다음은 기술 분야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송시설 투자액이 계획 ○○○○억원 대비 약 ○○○억원으로 ○○%에 그치고 있고, 더욱이 연구개발 투자실적은 ○○억원, 연구직 인력은 ○명입니다. 또한 방송시장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미래 방송기술에 대한 준비가 조금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방송시설 및 R&D 투자실적이 매우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기술연구소 설립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이행촉구와 연계하여 미래 방송기술에 대한 투자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방송 대표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예, 하십시오.

○ ㈜매일방송 대표자

- 그러면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 분야에 대한 시설투자가 숫자상으로 계획보다 적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MBN이 신설방송사가 아닌 기존 방송사의 전속 채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타 종편보다 먼저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2011년 12월에 종편을 시작했지만 2008년, 2009년에 이미 HD 제작방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억원 규모의 제작 및 송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억원 정도 규모의 HD 제작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연구개발과 R&D 투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종편 초기에는 일산에 제작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삼송에 한 5,000여평의 부지를 마련해서 그곳에 제작센터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투자해서 2017년에 완공이 됩니다만 이런 투자계획의 변경에 따라 다소 투자액수가 적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종편 초기에 3D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방송 트렌드가 3D 분야가 시장에서 그다지 평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이 줄고 있고, 그리고 현재의 기술 트렌드인 UHD, 이른바 4K나 8K에 대해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연구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소 설립은 안 됐지만 나름대로 TF팀을 가지고 UHD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투자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투자계획 그리고 지금 연구인력의 운영과 연구소에 준하는 활동은 되어 있는지 기술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매일방송 경영지원국장

- MBN 기술 담당 ○○○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저희가 종편이 되면 최소한 SBS의 ○분의○ 수준의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 가장 이슈가 됐던 3D 부분에 많은 투자비용을 책정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보류가 되었고, 그다음에 중계차 부분은 각 지역별로 중계차를 배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무선 모바일 시스템 제품들이 나오면서 중계차 대신해서 저희가 중계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중계차 구축이 뒤로 미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일산에 2013년도에 제작센터를 짓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접근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삼송으로 이전하면서 2013년도 예산이 2017년도로 넘어간 그런 부분에서 투자가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R&D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작성 시 연구 R&D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방송기술연구소 운영비용과 신설 운영비용 부분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R&D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행

실적을 내면서 R&D 부분이 새롭게 품목이 생기면서 신사업 부분에 있는 앱 개발, 모바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그쪽에 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R&D 부분이 상당히 적게 표현이 된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술연구소 부분입니다. 저희 MBN 기술국은 2002년도부터 선거방송과 또한 기상시스템 등을 직접 개발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접 기술개발을 해서 그런 상품들을 판매해 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기술연구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UHD 부분이 더욱 더 발전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좀 더 미루어서 UHD 부분이 더욱더 기술 관련된 부분이 생길 때까지 약간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년 이후부터 기술연구소 부분을 설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열네 번째 질문입니다.

○ 심사위원

- 열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술 분야 중 국내 방송산업발전 기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재승인 신청서상에는 국산장비 도입액이 계획 대비 ○○% 정도로 현저히 낮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연도별로 볼 때도 2011년에 ○○%, 2012년에 ○○%, 2013년에 ○%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산장비 도입률을 ○○○○년까지 ○○%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국산장비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장비에 대한 구매 조건부 개발 등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방송 대표자

- 제가 먼저 간단히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국산 장비율에 대해서는 기술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산장비 비율이 계획보다 낮게 수치가 나타난 것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국산장비뿐만 아니라 저희 경영실적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장비투자가 같이 낮아진 데서 기인한 일반적인 공통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현재 제작에 있어서 장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보도 부문은 필동에 있는 자체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지만 예능 제작 부문에서는 외부 제작스튜디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이미 시설을 협업을 통해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투자가 적어진 부분도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삼송에 앞으로 ○○○○년까지 하는 그 계획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와 장비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기술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매일방송 경영지원국장

- MBN 기술 담당 장용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산장비 도입실적이 적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비용이 계획보다 줄어들면서 실적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산장비 투자비율은 계획한 ○○%와 비슷한 ○○%로 국산장비 도입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퍼센티지가 낮은 이유는 방송에 필요한 스윗저, 서버, 카메라는 국산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산장비로 나와 있는 조명이나 그래픽시스템은 100% 국산장비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국 이후로 VTR도 소니VTR을 저희가 대우에서 구입한 예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개국 초기부터 MBN은 국산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방송시설 구축 시에도 2VTR이라는 국산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업체와 R&D를 통해 만든 제품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TTA에서 2013년도에 최우수상을 탔던 그러한 장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년과 ○○○○년에 제작시스템과 또한 삼송 시스템 구축 시에는 더욱 더 국산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준비한 질문은 14꼭지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70~80분을 소화하기에는 14개 질문도 혹시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늘 시간이 남았습니다. 대체로 이런 설명회에서는 워낙 뜨거운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서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야 성공적인 회의가 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질문을 몇 개 더 던지겠습니다. 추가질문을 하실 분들은 마이크를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제가 보기에는 MBN 측에서 워낙 충실하게 준비하셨고 편성, 기술, 경영 모든 쪽에서 시시콜콜히 다 파악하고 계신 ○○○ 대표님의 탁월하신 답변 때문에 오늘 시간을 이렇게 많이 남겨 주셔서 우리가 추가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매일방송 대표자

- 더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제작투자비 관련 수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년 보도부문 제작투자비가 약 ○○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년에 ○○○억원으로 대략 ○○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년 전체 제작투자비가 전년 대비 ○○% 정도 증가한 ○○○억원 정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년에는 보도부문은 ○○○○년 상반기 기준으로 ○○억원 그다음에 전체 제작비는 ○○○억원 정도로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도부문은 그렇게 많은 제작비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 연도의 보도부문에 또는 전체 제작투자비가 급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매일방송 대표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질문이 나올 것이다, 저희들이 워낙 잘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과거 보도채널을 했던 방식에 의해 계상을 그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 상무로부터 구체적인 수치와 그 경위에 대해 보고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매일방송 편성책임자

- 편성책임자 ○○○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콘텐츠 투자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저희 수치상 보고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저희는 콘텐츠 투자비가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방송제작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보고서를 내고 나서 2014년 3월에 방통위에서 콘텐츠 투자비의 기준에 대해 인건비만 뿐만 아니라 간접제작비, 또 이연제작비 등을 제외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접제작비 ○○○억원, 이연제작비 ○○억원 이 금액이 약 ○○○억원 정도입니다. 보도채널의 연속성을 감안해서 이 금액을 모두 보도부문에 합산시켰고, 결과적으로는 보도부문의 콘텐츠 투자비가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 시정을 요청한 대로 정확히 적용한다면 약 ○○○억원의 실제 콘텐츠 투자비였습니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부풀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방통위와 MBN 간 기준에 대한 해석이 일시적으로 잘못돼서 그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매일방송 대표자

- 경위야 어쨌든 간에 이런 수치로 부풀기로 계상된 것이 보고서에 나타났다는 데 대해 대표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문 더 하실 분 계십니까?

○ 심사위원

- 대표적 소수자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신 <소나무>를 보면 토요일 새벽 1시 시청 사각지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금액도 2012년 8월에는 1인당 ○○만원이 지원됐을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 소수자 프로그램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소수자 배려 프로그램 또한 경제적인 도움만 줄 뿐 사회적 차별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론장의 역할은 미흡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매일방송 대표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는 '소중한 나눔 무한행복'이라는 제목의 약자입니다. 저희들이 종편 채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보도채널부터 이런 공익적 프로그램, 소수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역할과 또 사회적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종합편성채널을 하면서 이른바 기존 보도채널에서 하던 프로그램 중에 유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름대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했다시피 프로그램 편성시간이 새벽대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종합편성채널 초기에 기존의 보도채널식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프로그램 시청률이 높지 않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시청률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시간대를 옮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벽 1시대로 옮겨졌습니다. 새벽 1시대로 옮겼지만 지금 시청률은 과거 보도채널 때만큼 시청률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이 과거에 비해 낮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모금액에 있어서 적게 나타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나름대로 모금액이 많아지도록 한다고

합니다만 저희들 노력의 부족이라고 하지만 적게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소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들이 소수자의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사노라면>에서도 약간 그런 성격의 화제를 가진 분들 노인들 대상의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종세상>을 하고 있는데 <특종세상>도 어떤 사건성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특이한 사람이나 그런 대상의 인물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금액은 어떻게 넣을 것인가, 시간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적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한 번 새롭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소나무>뿐만 아니고 이른바 '초록우산' 등의 재단과 유니세프, 유네스코와 합쳐서 약간의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설명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또 추가하실 분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작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기준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MBN이 제출한 '제작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에 의하면, 제작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기준으로 '시청률'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우수 공익프로그램에 대한 보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수 공익프로그램에 대한 보상 등 인센티브 제공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까?

○ ㈜매일방송 대표자

-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센티브의 제도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시청률을 28개월째 1등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숨은 공신의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센티브는 ○○~○○%까지 나갑니다. 최고 ○○%까지 나가고 있습니다만 인센티브뿐만 아니고 영세제작사의 도움을 위해 선지급금을 지급해서 지금까지 누계해 보니까 약 ○○억원 정도 나갔습니다만 이런 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개월 내에 지급한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협업관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저희들이 100회 이상 프로그램도 8개 이상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시청률만이 기준인가 하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맷 개발과 관련해서 제작사가 보통 포맷시스템 개발에 대한 신청을 해서 그런 상을 받고, 또 하나 이른바 아름다운 프로그램이나 우수프로그램상 신청을 해서 같이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돈으로 나타나지 않은 사회적 평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희들이 포맷상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매년 연말에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사와 간담회를 갖습니다. 저희 대표회장이신 장대환 회장님이 직접 이것을 진행합니다만 간담회에서 우리가 우수프로그램이나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에 대해 감사패도 전달하고, 또 아울러서 나름 소정의 격려금도 시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질문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데 몇 분만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위원**

-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편 출범 시 종편 전체 기준으로 18,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었습니다. 신청법인의 경우 종편사업자 신청 시 ○○○명 고용계획이 있었으나 재승인 사업계획에 따르면 ○○○○년도에도 자체 고용인원이 ○○○명에 미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종편 출범 시에 약속한 일자리 창출효과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 더 확대된 고용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매일방송 대표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분야의 지적이 나왔다시피 경영성과가 미진해서 당초 계획보다 인력채용이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다른 종편과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보도채널 때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미 사업계획서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2011년도에 이미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인터넷사업부가 MBN 소속으로 있다가 매경닷컴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명이 빠졌습니다만 다른 인력으로 해서 지난해와 똑같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종편 출범이 약 ○○○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약 ○○○명, 정확히는 ○○○명 정도 됩니다만 내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 정규직입니다. 그만큼 정규직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간 방송 생태계에 있어서 고려사항의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주제작사 협력을 강화하다 보니까 내부인력의 채용이 조금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외부제작사의 경우 저희들이 14개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1개 프로그램당 대체적으로 최소 ○○~○○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제작인력이 최소한 ○○명까지 가는데, 그래서 ○○○~○○○○명 정도가 외부고용에 창출이 되어 있다는 점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내부의 보도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부에 있어서 정식 직원으로 등재는 되지 않았지만 이른바 아나운서도 프리랜서로 등재되어 있고, AD, 작가, 그리고 외부 영입 앵커들도 정식 직원이 아니지만 거의 전업을 하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업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출연자의 경우에도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저도 신문기자 출신입니다만 신문기자를 그만두고 난 뒤 대학에 있다든지, 아니면 일반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회현상에 대해 비평이나 평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청자의 사랑을 받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저희들이 시간별로 초빙해서 프로그램에 진행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도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 창출에 대한 18,000명을 종편4사가 같이 했습니다만 그만큼의 기여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시청률이 높아지고 지금 지상파의 절반 정도의 시청률을 보여줌에 따라 점점 프로그램 숫자도 30개 정도로 늘어나면 이런 고용창출 효과는 직·간접 효과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은 이미 기자와 PD를 정기 채용했습니다만 이렇게 작년과 올해 이렇게 정기 채용한 회사는 다른 언론사를 통틀어서도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심사위원장**

-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광고수입이 경영의 안정성과 제작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광고매출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혹은 공격적인 광고마케팅과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이 협찬 및 광고판매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련하여 미디어렙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방송 대표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렙은 아시다시피 종편 출범과 함께 설립되도록 되어 있어서 3년간 유예를 받아서 출자금 포함해서 이미 ○○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해서 심사절차가 끝났습니다. 지금 출자가 ○○개사 주주입니다만 오늘 현재 아까 제가 회사 나오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개사가 이미 출자를 완료했고,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다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렙의 출범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협찬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100%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고시장은 그다지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협찬이나 어떤 압력성에 의해 광고가 들어오는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주요 광고주들의 경우 삼성전자의 경우입니다만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국내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히 광고시장이 줄고 있는 원인도 되고 있지만 이런 점을 저희들은 타개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영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 이른바 마케팅 채널로서 인식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예를 들어 여성이나 또는 젊은 층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으면 광고주가 오지 않습니다. 이 점은 지금 시장환경이 굉장히 변했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2% 시청률을 하고 있지만 3%로 올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투자를 해야 하고, 또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기 위해 수익이 늘어야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야지, 그것이 삐걱해서 수익이 안 나면 프로그램 투자가 줄고, 투자가 줄면 당연히 시청자가 떨어져 나가고 광고주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선순환 구조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른바 저희 매경미디어그룹의 모토입니다만 국가 경쟁력이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런 사회적 캠페인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마케팅 채널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질문해 주십시오.

○ **심사위원**

- 아까 열 번째 질문에서 향후 10년 동안 내부 수익률이 ○○%인데 근거자료가 조금 보수적인

추정으로 전망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보면 일단 이 수익률을 산정하는 기준인 추정재무제표를 볼 때 과거 영업이익률이 2012년도에 ○○%대였고, 2013년도에는 ○○%대, 그리고 2014년 상반기까지 ○○%였는데 계획상 2014년도 올해 기준으로 ○%대로 굉장히 실적이 6개월 만에 개선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년에 ○%에서 ○○○○년도에 흑자 전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장 2014년도 계획만으로 볼 때도 6개월간 많은 반전이 이루어지는 계획이 작성되어 있어서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낙관적인 전망의 기조에는 광고매출의 추정액 주요 요인인 시청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깔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청률 ○% 달성이 구체적인 근거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목표치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매일방송 대표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근거의 계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계자로부터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재허가 심사를 받기 전에 내부적으로 기왕이면 좋은 평가를 받고 심사를 받자고 노력해 왔습니다. 시청률 1등을 유지하려는 것도 그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수지에 있어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밖에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미 지난달에 월별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수지를 달성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급격히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올 봄과 연말에 차이가 있느냐는 광고시장이 좋아졌다기보다도 저희 시청률이 높은데 후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 봄에는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라는 국가적 재난 때문에 기업들의 활동이 굉장히 움츠러들어서 광고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있어서 다시 그런 활동이 약간 재개되고 있다는 측면, 그다음에 시청률에 따른 광고주들의 반응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략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종편을 시작할 때 시청률 1%면 ○○○○억원의 매출, ○○○○억원의 광고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전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청률 ○%만 돌파하자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1%를 돌파했어도 저희 예상보다 2%를 돌파한 시점에서도 매출액은 절반도 안 됩니다. 3분의 1 정도 예상치가 되기 때문에 광고라는 것이 반드시 예상만큼 지상파의 꼭 패턴만큼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청률이 ○%대로 높아짐에 따라 광고주의 반응도가 급속히 좋아지고 있다, 광고주 숫자 비율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 8월의 경우에는 광고주 숫자가 ○○○개 정도 됐는데 지난 10월에 ○○○개로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비율이 급속히 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꼭 낙관적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전망하려고 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수익률 산정 부분은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매일방송 편성책임자

- 편성책임자 ○○○입니다. 수치만으로 보면 어떻게 그렇게 급반전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당연히 그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대체로 답변을 드렸지만 도움이 될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률과 광고시장이 비탄력적이고 후행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종편 출범부터 이것이 더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시청률 ○%가 보통 지상파에서 ○○○○~○○○○억원,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한 ○○○~○○○○억원은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에 절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처음에 광

고시장에서 종편이 4개 채널이 나왔을 때 철저하게 외면하다가 종편 시청률이 올라가면서 종편에 광고를 해도 되나 이렇게 관찰하기 시작할 때부터 조금의 변화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리포터들이 나왔을 때 'MBN에 광고를 하면 지상파 효율에 같은 비용을 가지고도 10배의 효율을 낼 수 있다'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그 후에 좀 지나서도 '한 5배 이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서 조금씩 광고주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청률을 올리고도 지나치게 많은 디스카운트가 되었으면 최근에는 디스카운트 비율이 점점 축소되면서 광고에 대한 시청률과 광고의 연관관계에 대해 종편 광고주들이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디스카운트율이 내년에 가면 조금 더 개선되고, 후년에 가면 제대로 인정받지 않을까 해서 광고시장이 한 20%씩 2~3년 동안은 성장할 것이라고 했고, 그런 조짐이 광고정책이 변하지 않은 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 프로그램 구매와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편의 국가 사회적 역할의 하나는 콘텐츠 시장의 건전화일 것입니다. MBN의 외주제작에 대한 개선노력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구매에 있어서는 승인계획의 달성률이 좋게 봐도 ○○% 정도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도 외주제작과의 협력은 자세히 나와 있지만 구매에 관련해서는 특별한 전략이나 설명 없이 금액적 계획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매일방송 대표자**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편을 출범하고 초기에 실패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시장 대응력 전략을 항상 짜야겠구나' 그런 전략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하고 싶다는 제작사가 있으면 항상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목표시청률과 제작비를 봐서 평가해서 아주 안 되겠다는 경우를 빼고는 최소 2회 정도의 기회는 거의 대부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를 준 다음에 그것을 이른바 파일럿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는 항상 기준이 맞으면 연속제작을 합니다. 지금 100회가 넘는 프로그램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 왔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상의 파일럿 프로그램이 나왔다가 도중에 떨어진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 과정에 뼈아픈 과정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외주제작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구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 구매에 대해서는 드라마나 또 애니메이션에 많이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약간 애로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구매에 대해서는 '국산 신규제작물을 구매하라'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제작물의 제작이 실제로 시장에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지상파의 수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의 수요를 빼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몫이 들어온 것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래서 약간 시장의 활동상 그런 애로를 솔직히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토토비>라는 만화를 했고, 현재는 <먹티와 잼잼>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틀고 있습니다만 신규 제작물을

구매하는 데는 조금 애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구매에 대해서는 일반 예능, 인포테인먼트 같은 외주제작사를 통해 할 것이고, 앞으로 드라마 같은 것,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천국의 눈물> 드라마도 구매를 한 것입니다. 이런 구매에 대해서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국산뿐만 아니라 방송 종편 초기에 외국제작물 <아시아 특급비밀>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외부로부터 구매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시청자의 반응을 봐서 앞으로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위원장**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미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순서에 3분의 마지막 맺는 말 기회가 있습니다. ○○○ 대표께서 그 3분 동안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방송 대표자**

- 감사드립니다. 재허가 과정과 방금 심사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볼 때 정말 MBN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정말 꼼꼼하게 많은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좋은 조언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받은 내용, 방금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공익 프로그램이 적지 않느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적지 않느냐 어떤 수치상에 있어서 많이 부풀린 것 아니냐, 콘텐츠 투자계획이 제대로 될 것인가, 경영성과가 과연 수치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의 지적을 깊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반드시 사랑받는 채널을 넘어서서 약속을 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28개월 연속 월간 시청률 1위를 달성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시청률 2%를 넘어서 3%를 향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편성 채널의 설립 목적인 방송 생태계 발전,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육성 그런 취지에 맞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은 가급적이면 하루빨리 고칠 것은 고치고 개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유익하고 공정한 방송, 시청자 사랑의 방송, 나아가서 지상파와 경쟁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여러 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MBN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심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년간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MBN의 발전을 계속 성원해 주시고 이 재허가 절차를 진행해 주신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사위원장**

- 저도 이러한 모임에 발제자나 토론자 또는 사회자로 수없이 많이 참여를 해 봤는데 오늘 저희 심사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질문이나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정보의 물량 면에서만 볼 때에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 3시간은 필요한데 오늘 그 절반이 채 안 되는 80분에 이 모든 것을 다 소화해 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MBN 측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고, 또 이것을 요령하게 답변해 주신 ○○○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재승인 사업자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5분 폐회】

Ⅵ. 재승인 의결

1. 종합편성PP 재승인 의결(안건)
   - 위원회 의결 (2014. 11. 18.)

제54차 방송통신위원회

의안번호	제2014 - 54 - 194호	심의의결사항
의결일자	2014. 11. 18.	
공개여부	공 개	

2014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매일방송 -

제 출 자	위원장
제출일자	2014. 11. .

2014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매일방송 -

< 2014. 11. 18. (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

1. 의결주문

○ 2014년 11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매일방송에 대해 '붙임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3년으로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2014년 11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3. 경과사항

○ '11.12. 1. ㈜매일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 승인

○ '13. 9. 5 '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 의결

○ '14. 5.30 재승인 신청서 접수

○ '14. 9월 시청자 의견청취('14.9.1~9.30까지 총 13건 접수)

* 관보 및 방통위 홈페이지 게재, 대상 방송사업자 방송자막으로 공지

○ '14.11월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14.11.10~13일, 총 4일 간)

* 심사기간 중 ㈜매일방송에 대한 의견청취 실시('14.11.11일)

4.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가. 구 성

○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분야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 구성(총 15인)

<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

분 야	성 명	현 직	추천인
심사위원장	오 택 섭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	-
방송(3인)	최 세 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방통위원
	이 종 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방통위원
	정 연 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방통위원
법률(3인)	이 태 원	법무법인 목성 변호사	외부기관
	임 철 승	법무법인 정상 변호사	외부기관
	오 태 원	경일대 경찰학과 교수	방통위원
경영·회계 (3인)	전 진 근	열린공인회계사 감사반	외부기관
	김 익 찬	삼정회계법인 이사	방통위원
	박 인 배	성신회계법인 이사	방통위원
기술(2인)	최 동 준	ETRI 케이블방송연구실 실장	외부기관
	한 동 석	경북대 전자공학부 교수	외부기관
시청자·소비자 (3인)	조 태 임	사단법인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외부기관
	김 경 의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및 성남지부 대표	외부기관
	윤 정 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방통위원

※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나. 운 영

○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 : ‘14. 11. 10. ~ 11. 13. (총 4일)

<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

구 분	주요내용
11. 10일 (월)	재승인 세부심사기준 의결,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 등
11. 11일 (화)	재승인 신청서류 검토, 사업자 의견청취 등
11. 12일 (수)	계량평가결과 의결, 심사평가표 및 심사의견서 작성 등
11. 13일 (목)	심사의견서 의결

5. 심사평가 결과

○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704.43점을 획득하여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상회하였으며 심사사항별 과락은 없었음

< 심사평가 결과 >

심사사항 (배점)	㈜매일방송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	277.11(79%)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230)	141.94(62%)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60)	110.57(69%)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	47.43(59%)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	44.61(74%)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	20.66(69%)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0)	14.42(72%)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0)	51.69(74%)
9.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감점)	- 4.00
합 계	**704.43**

※ 재승인기준 :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1,000점 만점 중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며, 650점 이상이라도 공적책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항목이 50% 미달 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가능(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도 조건부 재승인 가능)

6.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

가. 심사위원회 의견

○ **(사업계획 이행실적)**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계획 및 방송기술에 대한 투자,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보호 등과 관련한 사업계획 이행실적이 미흡함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 등 제도 정비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익적 프로그램이 단순한 양적 확대에 그치고 있어 내용적 측면에서 진정한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방송사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함

- 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아 장르 간 편성 불균형을 가져오고 재방비율이 높아 콘텐츠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를 통해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적정 수준의 편성비율·재방비율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방송기술과 관련한 인력·장비 등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투자 저조, 연구개발 인력 부족, 연구소 미설립 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계획의 실현가능성)** 재승인 신청서에 제시된 경영 전략 등 향후 사업계획은 최초 사업계획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임

- 다만, 과거의 광고매출 실적에 비해 광고수입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현재의 국내외 경제 상황과 광고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음

○ **(재승인 유효기간 단축)** 재승인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승인 유효기간을 최소화하고 매년 사업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방송법 상 재승인 유효기간은 3~5년)

나. 정책 건의사항

○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 국민과의 약속인 재승인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계획 이행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함

○ **(방송광고 판매시장 정상유지 대책 필요)** 국내외 경제 상황과 광고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재승인 신청서에 제시한 광고매출의 증가를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광고영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불공정하거나 편법적인 행위에 대한 감독과 관련 사안 발생 시 제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방송프로그램과 광고의 명확한 분리,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7. 검토의견

○ 방송법령 및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한 재승인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므로 재승인을 의결하되 시청자 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승인유효기간을 최소한인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재승인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반영하고 지난 3월의 재승인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붙임1'과 같이 재승인 조건을 부과함

-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부분과 관련하여 이행계획과 반기별 이행실적을 제출토록 하며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 등의 이행실적을 제출토록 함

- 이행실적 점검결과 불이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재승인 제도 개선사항 등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함

8. 향후계획

○ '14.11월 중　　승인장 교부
○ '14.11월 말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
○ '15. 3월 말　　재승인 백서 발행
○ '15년 상반기　재승인 조건 및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연중)

붙임　1.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2.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서
　　3. 심사평가항목 및 배점. 끝.

(붙임1)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 재승인 조건

-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등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운영실적을 매반기(6.30일, 12.31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이상 편성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

□ 권고사항

-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확보와 시청자 참여의 실질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제도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할 것
- 공익적 프로그램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진정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
- 향후 수익성이 예측한 결과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자금 조달계획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

(붙임2)

'14년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14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14년 11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매일방송의 재승인 심사를 위해 재승인 신청서 검토, 의견청취, 심사평가 등을 하고 다음과 같이 심사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 11. 13. (목)

1. 심사위원회 의견

o **(사업계획 이행실적)**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계획 및 방송기술에 대한 투자,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보호 등과 관련한 사업계획 이행실적이 미흡함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 등 제도 정비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익적 프로그램이 단순한 양적 확대에 그치고 있어 내용적 측면에서 진정한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방송사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함

- 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아 장르 간 편성 불균형을 가져오고 재방비율이 높아 콘텐츠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를 통해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적정 수준의 편성비율·재방비율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방송기술과 관련한 인력·장비 등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투자 저조, 연구개발 인력 부족, 연구소 미설립 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o **(계획의 실현가능성)** 재승인 신청서에 제시된 경영 전략 등 향후 사업계획은 최초 사업계획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임

- 다만, 과거의 광고매출 실적에 비해 광고수입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현재의 국내외 경제 상황과 광고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음

o **(재승인 유효기간 단축)** 재승인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승인 유효기간을 최소화하고 매년 사업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방송법 상 재승인 유효기간은 3~5년)

2.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안)

o 재승인 조건

- 종편PP의 위상을 확보하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재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콘텐츠 투자계획과 프로그램 편성비율, 재방비율을 성실히 이행할 것

o 권고사항

-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확보와 시청자 참여의 실질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제도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공익적 프로그램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진정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수익성이 예측한 결과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자금 조달계획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정책 건의사항

□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

o 국민과의 약속인 재승인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계획 이행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함

□ 방송광고 판매시장 정상유지 대책 필요

o 국내외 경제 상황과 광고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재승인 신청서에 제시한 광고매출의 증가를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광고영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불공정하거나 편법적인 행위에 대한 감독과 관련 사안 발생 시 제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방송프로그램과 광고의 명확한 분리,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붙임3)

심사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사항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350)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350점)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350점)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230)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140점)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의 적정성(45점)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95점)
	시청자 권익보호(70점)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실적의 적정성(25점)
		시청자 권익보호 실현계획의 적정성(45점)
	신청법인의 적정성(20점)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적정성 및 건전성(20점)
	관련 법령 위반 사례(감점)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감점)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160)	기획·편성의 적절성(70점)	기획·편성 이행실적의 적절성(25점)
		기획·편성 실현계획의 적절성(45점)
	수급의 적절성(50점)	프로그램 수급 이행실적의 적절성(20점)
		프로그램 수급 실현계획의 적절성(30점)
	제작·협력의 적절성(40점)	제작·협력 이행실적의 적절성(15점)
		제작·협력 실현계획의 적절성(25점)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80)	재정적 능력(65점)	부채비율(25점)
		자기자본순이익율(20점)
		총자산증가율(20점)

	기술적 능력(15점)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 실적의 적정성(5점)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10점)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전략(30점)	사업추진계획 이행실적의 적정성 (10점)
		사업추진계획 향후전략의 적정성 (20점)
	조직,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5점)	조직, 인력운영 이행실적의 적정성(5점)
		조직, 인력운영 실현계획의 적정성(10점)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15점)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실적의 적정성(5점)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계획의 적정성(10점)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3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3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의 적정성(1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정성(20점)
7.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0)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20점)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의 타당성(5점)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15점)
8. 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70)	승인시 부여한 준수사항 이행여부(70점)	승인조건 이행실적의 적정성 (70점)
9.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감점)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감점)

2. 종편PP 재승인 의결(속기록)
- 위원회 의결 (2014. 11. 18.)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5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4. 11. 18.(화) 14: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5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23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5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5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4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 ㈜매일방송 (2014-54-194)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4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4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4년 11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매일방송에 대해 <붙임 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승인하고, 승인유효기간은 3년으로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입니다.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분야 전문가 총 15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입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11월 13월까지 총 4일간 운영하였으며, 일별 구체적인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704.43점을 획득하여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상회하였으며 심사사항별 과락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심사평가 결과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심사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 의견 중에 사업계획서의 이행실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계획 및 방송기술에 대한 투자,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보호 등과 관련한 사업계획 이행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도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높아 장르간 편성 불균형을 가져오고 재방비율이 높아 콘텐츠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를 통해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바와 같은 적정 수준의 편성비율, 재방비율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기술과 관련된 인력장비 등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투자 저조, 연구개발 인력 부족, 연구소 미설립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의

실현가능성 측면입니다. 재승인 신청서에서 제시한 경영전략 등 향후 사업계획은 최초 사업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과거 광고매출 실적에 비해 방송수입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현재의 국내외 경제상황과 광고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승인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재승인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승인유효기간을 최소화하고 매년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관련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인 재승인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방송광고 판매시장과 관련해서는 광고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재승인 신청서에 제시한 광고매출 증가를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광고영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불공정하거나 편법적인 행위에 대한 감독과 관련하여 사안 발생 시에 제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방송프로그램과 광고의 명확한 분리,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의 검토의견입니다. 방송법령 및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므로 재승인을 의결하되 시청자 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승인유효기간을 최소한인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재승인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반영하고 지난 3월의 재승인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붙임 1>과 같이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고 권고함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재승인 제도 개선사항 등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승인장을 곧바로 교부하고, 내년 3월 말까지 재승인 백서를 발행하는 한편 상반기 이후에 재승인 조건 및 사업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2>와 <붙임 3>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붙임 1>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붙임 1>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재승인 조건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등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운영실적을 매 반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사업계획서에서 제출한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편성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권고사항입니다.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확보와 시청자 참여의 실질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제도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할 것, 공익적 프로그램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진정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 향후 수익성이 예측한 결과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자금 조달계획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심사위원 정책 건의사항을 보면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점검에서 국민과의 약속인 재승인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계획 이행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과장님, 국장님께서 심사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실적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붙임 1>에 있는 재승인 조건 두 번째를 보면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등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재승인 의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운영실적을 매반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번에 의결하면 상반기에 했던 3개 종편을 비롯해서 4개의 종편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모두 완료됩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한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재승인 받은 종편3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이들 종편 3사 재승인 조건에 대한 점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이 조건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나 방송전문가들로 해서 외부 점검자문반을 만들어서 회의를 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여기와 마찬가지로 매반기, 그러니까 6월 30일이지요. 지금 상반기에 재승인한 종편 3사 것은 받으신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받았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 30일까지 받으신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벌써 8, 9, 10월 그리고 11월이지 않습니까? 거의 4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언제 실적을 점검·평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실 생각입니까? 혹시라도 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들이 9월 말에 회의를 한 번 했고, 그다음에 국감 때문에 조금 지체되어서 10월 말에 현장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제1차 회의 때 외부전문가 자문반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10월 말경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최종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회에 언제쯤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12월 초쯤에 보고가 가능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냐하면 투자계획이나 방송 편성비율은 연단위로 실적을 보고하고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공정성 확보의 경우에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매반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으나 점검하는 것이 자칫 늦어지면,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이행실적을 점검하라는 것이 정책건의까지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일이 많으시겠지만 가급적 빨리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보고 판단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여기에도 지적이 있습니다만 보도프로그램이 많다, 다시 이야기하면 보도·시사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MBN에 대해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여타 종편들에 대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종편이 지금 방송법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말 그대로 다양한 장르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방송법 제2조 제18호를 보면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MBN 심사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상반기에 있었던 3개 종편에 대한 심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편 1개사를 제외하면 2개사에 대해서는 보도·시사 프로그램의 비중이 아주 높다는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종편들을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종편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혹시 국장님, 종편을 보십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종편답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도나 시사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1년 지나서 이것을 평가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 측면은 일단 사업계획서에 방송사가 제시한 자기들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본적으로 지키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번 회의 때 한 번 논의가 됐습니다만 종편이 제기한 2012년 사업계획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가 패소했지 않습니까? 지금 항소가 진행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항소를 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을 보면, 저희가 종편사업자들의 사업계획서 이행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희들의 관리감독 권한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편에 대한 감독 및 사업계획서 이행점검의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년이 지나 실적을 점검하고 제재한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국민들 그리고 시청자들의 시청권 침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편 역시 방송사업자이고 언론이기에 사업계획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종편 4사의 재승인 여부가 결정되면 저는 종편PP의 방송실태, 그리고 종합편성PP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위원회에서 한 번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 나온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도·시사 포함해서 보도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계획서에 그 비율을 어떻게 하겠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MBN의 경우에는 '○○년도에 ○○%를 하고, '○○년도에 ○○%, '○○년도에 ○○%, '○○년도에 ○○%, '○○년도에 ○○%, 이 정도를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부분은 재승인 조건이나 권고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특별한 이행강제수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의견을 말씀 드릴 때 말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여기 <붙임 1>의 재승인 조건을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그 이후에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준수하고 그다음에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고, 외주제작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사업계획서 전반에 걸쳐 제너럴(general)하게 이행을 잘하고 준수해라, 그리고 점검을 하고 변경할 때는 승인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그 밑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행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부분에 대해 뭔가 조건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졌는데, 다시 말씀 드려서 승인조건 <1>번과 그 밑에 각론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또 다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조건을 붙이고 아닌 것은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첫 번째 것은 총괄적으로, 또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측면으로 이야

기를 드렸고, 지금 그중에서 우리가 재승인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이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콘텐츠 투자계획이나 재방비율, 또 외주제작 편성비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성 부분에 대한 자율성이나 독립성 보장 측면에서 과연 심사하는 과정상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지만 그 부분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적절치 않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 방송사가 제시한 장르별 비율을 넘겼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분명히 어느 정도 제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재승인하는 상황에서 조건으로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아니면 명시적으로 '그것을 더 내려라'라고까지 조건 부과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내려라'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이기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각론으로 몇 개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을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재방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그 의미 속에는 사업계획서에 당연히 보도·시사의 비율이 나와 있을 텐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를 여쭤 본 것이었습니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번에 저희들이 재승인 조건이 아닌 권고사항에 대해 조선방송에 대해서는 2개를 붙였습니다. 하나는 위원회의 운영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라는 조건과 조선방송은 그때 제출한 보도비율 편성 범위가 ○○%에서 ○○%까지 계속 낮춰 간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편PP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으로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낮출 것'이라는 권고사항을 낸 적은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보다 좀 더 낮췄으면 좋겠다고 권고한 것이고, 지금 이 경우는

그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년에 ○○% 등등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다음 해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것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생각은 첫 번째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위반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심사위원 의견에 보면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아서 이러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어떤 경우에는 조건으로 넣고, 어떤 경우에는 권고사항으로 넣고, 어떤 경우에는 방통위가 앞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대략 이렇게 세 그룹으로 정리하신 것 아닙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승인조건 <1>번이 효력상 다 망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강조를 더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인조건의 개별 항목으로 이렇게 넣지 않아도 저는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상 포함된 내용은 당연히 조건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사위원들 의견 중에 주요한 의견으로 그 부분이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조건이나 권고사항에는 별도 아이템으로 안 나왔기에 물어봤었던 것입니다. 제 의견을 몇 가지 더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여기에 시청자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청자 의견청취를 해서 13건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주요한 내용이 있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지난번 3개 종편사 경우의 시청자 의견과 비교해서 특이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MBN 프로그램 중에서 ‘천기누설’,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힐링 프로그램 자체가 구성이 잘

되어 있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시청층이 다양하지 못한 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보도 부분에서는 균형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였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심사위원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청자 의견을 우리가 널리 청취해야 하는 마당에, 그 중에서 약간 선의가 아니게 의견을 내는 것은 그렇지만 저희가 귀담아야 할 의견들은 우리가 유념도 하고 꼭 필요한 것은 조건으로 넣기 위해, 앞으로 시청자 의견은 주요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이 정리가 돼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4페이지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심사평가 결과 과락된 것이 없기는 한데, 이 중에서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이 59%, 심사사항별로는 그것이 제일 낮은데,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이 같이 콤바인(combine)이 되어 있는데 재정적인 능력은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낮게 나왔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전망치 자체에 대해서, MBN이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시청률이나 광고판매율에 대한 추정치 근거 자체가 여러 경영이나 회계를 하신 분 입장에서는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영업이익률에 따른 재무제표 자체가 급격하게 좋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만일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차원이 고려되지 않았나 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에 먼저 재승인 받은 종편 3사의 심사결과 점수와 이번에 매일방송의 점수 간에 연관성, 연계성 내지는 비교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똑같이 종편 4사를 우리가 재승인 심사했는데 3개사는 먼저 했고 매일방송은 이번에 하게 됐는데 우리가 흔히들 심사결과 점수가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이번에 받은 점수가 앞에 받은 3개사 점수와 비교해서 높다, 낮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제가 봤을 경우에는 결국 과거의 실적치와 계획에 대한 평가 부분인데 물론 평가의 기준 부분은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평가를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 다 바뀌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서는 일관성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난 3월에 700점을 월등히 넘은 사업자가 하나 있었고, 700점 바로 밑에 있는 범주에 2개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00점을 조금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점수 분포도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거기에서 큰 상대적인 평가는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어디가 낫다, 못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끝으로 5페이지에 보면 정책 건의사항 중에 ‘방송광고 판매시장 정상유지 대책 필요’라고 해서 앞으로 이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광고영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불공정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제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의사항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미디어렙법에 보면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 위반여부를 조사해서 제재할 수 있게 이미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무엇을 또 마련한다는 것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설명 드린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심사위원들이 설명하면서 일단 지금 광고시장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서 공격적인 광고를 유치하려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 그런 불공정하거나 편법적인 행위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정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제도의 개선 보완, 새로운 정책 수립 이렇게 하는 부분과 현 제도 내에서 저희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치해야 할 것과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정책 방안 마련, 제가 보기에는 그 앞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저희가 현재 제도를 활용해서 필요하면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건의사항이니까 저희 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 하고 하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심사의 기본계획과 배점표 시스템은 똑같지만 심사위원들은 다 다른 분들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심사위원장은 같은 분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심사위원들은 전체 교체, 다른 분들이고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심사위원에 따라 점수가 짤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 3개 종편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송 규제 정책을 펴는데 제일 중요한 정책수단이 재허가, 재승인 심사와 그다음에 제3기 방통위 출범할 때 강조한 것처럼 이제는 사업계획서와 재허가, 재승인 때 조건부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일 많이 거론된 것이 종편의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지요. 3월에 심사받은 종편 3사의 보도·시사 편성비율과 오늘 MBN의 보도·시사 편성비율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번에 몇 퍼센트지요? ○○%, ○○%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MBN은 향후 ○년간 ○○%에서 ○○% 정도의 보도비율을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은 ○○%에서 ○○%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JTBC는 ○○%에서 ○○%, 그리고 채널A는 ○○%에서 ○○%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JTBC가 월등히 편성비율이 낮은데 그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러면 종편 1개사만 빼고 나머지 3개사 전부 다 보도·시사 편성비율이 아주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종편 전반에 대해 우리가 중간점검할 때 시정명령도 내리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보도·시사의 편성비율이 어느 정도 선이어야 합리적이고 방송법상 또는 우리 정책상 괜찮다고 보는 것입니까? 우리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잘 아시다시피 장르별 편성의 비율에 대한 기준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오락 부문 5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규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도의 변화 추이를 봤을 경우에 정부가 보도·교양·오락을 3분의 1씩 하라고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재허가, 재승인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정부 의견도 중요하지만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열다섯 분의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적절히 반영해서 평가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매번 지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고시로 규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방송법상은 프로그램의 범주를 보도·교양·오락 크게 3개로 나누고 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런데 지금 정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락을 50% 못 넘게 하는 것을 보면 보통 오락의 비중이 보도·교양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제는 오락프로 중에서 매일 주요뉴스 뒤에 따라 붙이는 스포츠를 따로 분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4대 범주로 나누어서 봤을 때 보도·교양·스포츠, 나머지 오락 이렇게 나누면 상식적으로 4분의 1을 보도프로그램이 넘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에서 방통위가 고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매번 심사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보도비율이 아주 높다, 말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라도…, 지금 중간점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간점검할 때 정책수단, 고시를 확실하게 거기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편이든 간에 종합편성에 맞게 하는데 기준은 객관적으로 4분의 1, 25%를 넘어서면 이것은 과다한 것이라고 우리가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 ○○% 간다면 이것은 종편이 아니지요. 돈을 적게 들이고 콘텐츠 개발 투자 안 하고 매우 싼 가격으로 보도·시사 언론 기능만 하면서 더군다나 공정성 시비를 많이 받는다면 이것은 종편이 아닙니다. 종편 정책에 대해 전면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허가 또는 재허가에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할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강조하고, 이다음 우리 티타임에 반드시 규제정책을 펼 수 있도록 보편적인 아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심사평가 결과를 보니까 MBN <1>, <2>, <3>, <4>부터 <9>까지 항목 중 아까 재정 및 기술능력이 백분율로 봤을 때 59% 59점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그다음에 하위점수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재정능력은 경영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방송의 공적책무·공정성·공익성은 우리의 정책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의 점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의견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중요하게 지적하고 중간점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유념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지적을 하신 부분 중에 보도비율을 얼마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형식으로 고시 등으로 정하는 방안,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고시로 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상위법으로 해서 시행령 정도로 정해야 할 것인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게 되면 보도만 정할 것인지 다른 부분도 정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과연 그와 같이 종합편성의 경우에 비율을 정하는 것이 방송제작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에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 번 사무국 차원에서 검토하시고, 또 위원회에서도 한 번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앞서 종합적으로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종합편성PP 정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희 위원회가 종합편성PP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정책목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최초 사업자 선정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데….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 드린 미디어의 다양성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더 다양성을 제고해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든가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도 좀 더 키워 갈 필요가 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방송사업자의 경쟁력과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그 경쟁력도 단순히 국내에서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하겠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목표였고,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시청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책목표였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제가 봤을 경우 3년이 지나서 이번에 우리가 재승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1기 3년 동안은 준비하고 셋업(set up) 하는 기간인데 잘 아시다시피 당초 4년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는 현실과 많이 괴리되는, 상당히 높은 차원의 목표를 제시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이제 제2기 종편 재승인으로 들어간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실질적인 도입의 목표가 어느 정도 하나씩 하나씩 구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 드리는 것은 승인조건을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더라도 솔직히 위원회 종편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셨던 몇 가지 주요정책 목표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충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방송사의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편성비율이나 장르별 비율에 대해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부터 정책의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편이라고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면 그 장르별 비율들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최소한 4개사에 대해 지난 3년의 실적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앞으로 3년에 대해서 계획을 점검해서 재승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종편PP의 방송실태, 그리고 위원회 종편 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린다고 했지만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종편PP 방송실태와 종편PP 정책 전반에 대해 저희들이 점검해 보고 정책목표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설정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러한 논의구조나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없으시지요?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종편에 대해서 오늘 MBN이 종편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입한지 3년차 됐습니다. 말하자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처음에 종편 도입정책을 폈는데 그 정체성에 맞게 하고 있는지, 중간점검뿐만 아니라 3년이 지난 마당에 근본적인 정책점검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편 4사에 대한 방송평가 같은 전반적인 점검작업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중간점검도 하고 또 앞으로 2~3년 뒤에 재승인 심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방송평가는 매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래 종편이 처음 출범했을 때 내걸었던 목표들이 현재 정상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는지,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이 앞으로 어떤 방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등과 관련해서 종편이 과연 거기에 부합하게 방송하고 있는지를 한 번 논의해 보고 점검해 보자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이지요?

○ 김재홍 상임위원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법론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4개사에 대해 재승인 과정에서 과거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행실태도 들여다보고 있고, 또 앞으로 새로운 3년에 대한 사업계획도 리뷰를 심사과정을 통해 하고 있고 우리 사무처에서도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세스와 전혀 별도로 전반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느냐? 저는 앞부분 가지고 그것을 잘 정리하면 저희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고 때로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시사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게 헤비(heavy)하게 가져가기보다는 4개사에 대한 재승인 절차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나 파악한 실태를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방법론상의 대안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을 고시로 정한다고 해서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법령에서 근거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고시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은 입법기술상의 문제일 뿐이고 종편의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편성규제를 방통위가 사전적으로 그러한 제도를 통해 하느냐, 마느냐 하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재승인 과정을 거쳐 사업자들이 내가 이렇게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하겠다는 것을 인용해서 조건으로 하는 것과 사전적으로 편성비율을 어떻게 가져간다는 것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시를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논의하기 전에 종편에 대한 편성비율 규제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시지요.

○ **허원제 부위원장**
- 우리가 종합편성이라고 하면 지금 지상파도 종합편성에 들어가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금 방송법상에 종합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라고 하면 여기에는 지상파도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종편이라고 하면 지상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종합편성PP 이렇게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상의 종합편성이라고 하더라도 지상파와 PP 간에는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래서 방송법상 보면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에 프로그램 편성에 관해서 딱 하나 규정을 두

고 있는 것이 종합편성PP의 경우에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할 것', 딱 그것 한 가지 규제조항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는 부분은 과연 이것이 보도·오락·교양·스포츠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편성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기준이나 사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상파와 종편 간의 차이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방송환경 자체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규제 중심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종합편성에 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 드립니다. 지금 MBN의 정책 건의사항 5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보니까 '방송프로그램과 광고의 명확한 분리', 그리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프로그램 제작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는 어떤 의미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이 부분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정보도위원회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좀 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 인력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참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을 언급하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금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5페이지 제일 밑에 '아울러 방송프로그램과 광고의 명확한 분리', 그리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마치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런 부분의 차원은 아니고,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를 명확히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당부였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혹시 잘못 자칫하면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독립성이 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 않느냐….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런 것은 아닙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아닙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종편PP의 성격, 정체성을 규정한 근거가 무엇이지요? 방송법입니까, 시행령입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종편을 도입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일단 법으로….

○ **김재홍 상임위원**
- 법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아마도 종편 성격 규정을 종합편성답게 다양하고 균형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법에는 명시적으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하지 않았지만 다양하고 균형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따져 보고 그 종편의 법적 성격에 근거해서 시행령이나 고시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각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정하느냐 하는 것은 별도 논외로 치고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일단 기본적으로 시행령이나 고시를 만들려면 법적인 근거가 명확한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통상적으로 보면 법에서 위임을 해 주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니면 고시로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고, 그런 애매한 경우 시행령으로 시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결국 그것 자체가 논란이 되므로 사회적인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인 컨센서스는 종편 심사할 때마다 심사위원들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방송계 또는 법조인도 있지만 각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에서 매번 빠지지 않고 종편은 종편답

지 않게 보도·시사 비율이 아주 높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 저는 사회적 컨센서스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매번 회의 때마다 문제가 있다고 말만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종편의 성격, 정체성에 근거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하면 그것을 규제하는, 제한하는 고시나 시행령을 만들 수 없습니까? 그것을 아까 상식적으로 방송법에 규정된 보도·교양·오락 3개인데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MBN ○○~○○% 되는 것도 과다한 보도편성이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만으로 봐도 3개 범주로 분류했다면 33%인데 오락은 50%를 넘지 말라는 것은 오락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다, 4개의 범주로 나누면 보도는 역시 4분의 1이다, 그렇게 해서 매번 지적을 받는 보도편성 비율만이라도 고시나 시행령으로 정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방송법 제69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과연 이 규정에 근거해서 저희가 시행령으로 오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할 것과 같은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그런 규정을 둘 경우에는 그러면 그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은 이 정도 논의하시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방송법 제69조제3항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시행령에 어떤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두게 되면 어느 범주로 할 것인지는 좀 더 저희가 자료를 연구해서 한 번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정도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종편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본적인 정책, 그다음에 실제로 종편이 어떤 형식으로 방송하고 있는지 그 실태, 그것이 과연 우리 정책과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은 그것 역시 저희가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보면 사실은 저희의 정책목표와 부합되는 내용들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매년 또는 반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전반적인 것까지 다 살펴볼 것인지, 살펴보게 될 경우에는 방송편성의 독립성·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지 등에 관해서도 역시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차분하게 논의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 주신 부분들은 아마도 향후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들을 다 제시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또 더 나아가서 의결주문에 대해 혹시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정리하고 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의결주문이나 재승인 조건 권고사항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Ⅷ.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청취 반영여부 공표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62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와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

구분	법인명	심사결과	승인 유효기간
종합편성	㈜매일방송	재승인	2017년 11월 30일

2.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및 반영 여부

o **(접수기간)** 2014. 9. 1. ~ 9. 30.

o **(접수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o **(접수결과)** 총 13건

o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 접수된 시청자 의견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보고되어 심사에 반영됨